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Regulations to
Respond to the Change of Interior Space Demand in Buildings

김은희 Kim, Eunhee

(a u r i

정책연구보고서 2019-4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Regulations to Respond to the Change of Interior Space Demand in Buildings

지은이 김은희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19년 09월 11일, 발행: 2019년 09월 13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6,000원, ISBN: 979-11-5659-230-3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 연구책임 김은희 연구위원

- ▮ 외부연구진 김혜련 오드팩토리 대표

- ▮ 연구보조원 정병권
 문석용

-
- ▮ 연구심의회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조성오 동양미래과학대학교 교수
 박재성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팀장

 - ▮ 연구자문위원 이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김혜련 오드팩토리 대표

제1장 서론

저성장 경제흐름이 지속되면서 건설 산업에서도 신축보다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또는 실내건축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인구·가구·기술 등 사회 여건의 변화와 연계되면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공간 유형을 탄생시키는데, 건축산업 활성화나 민생경기 부양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기존 건축물 불법 개조의 흥행과 그에 따른 사고발생, 분쟁 등 사회적 문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실내 공간 변경 시 사용자 안전의 관점에서 현행 건축기준의 상충 지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물리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물 실내공간의 변화 양상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어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사고 현황과 원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건축물 실내공간의 안전 관련 법제도의 한계점을 살피는 한편 국내외 건축물 피난안전 규정을 비교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내 공간 수요형태에 대응하는 건축기준 개선안을 제시하고, 향후 건축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안전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와 안전 이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 반려동물 가구 등 가구 유형이 세분화 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공간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생활공간 서비스 시설이 증가하는 한편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개보수 등 유지 및 관리 사업, 실내건축 공사의 확대도 동일한 맥락에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유주택, 공동 작업 공간 등 새로운 건축 유형이 등장하였고 만화카페나 키즈카페, 애견카페 등 기존에 없었던 상업적 목적의 서비스 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키즈카페와 만화카페의 경우 전국적으로 최소 770개 이상이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신규 여가생활 서비스 제공업은 실내 공간의 형태도 변화시켰다. 주목할 점은 한 개 층 내부에 복층 바닥을 만들어 거실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층은 대체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 사용과정 중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의 위법성에 대한 지자체별 유권 해석에 따라 일부 시설에 대해 철거 조치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과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 처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건축 기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특히 수직으로 늘어난 거실 공간 즉, 바닥면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또한 면적이 증가하면 재실자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초기 계획기준 이외 추가된 안전위험을 제거할 보완장치도 부재하다.

제3장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

건축물 실내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 관계 규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물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활안전 및 화재안전 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안전사고는 PC방, 찜질방,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자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실상 실내 놀이터에 해당하는 키즈카페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 위치하여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기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안전 사고도 빈발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내부 칸막이의 구조와 재료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물 실내 공간의 안전성 확보 관련 법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실내공간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종류는 건축물의 건축과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복지 관련 법령,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등 소방 관련 법령으로 구분되며, 세부 규정의 내용에 따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 화재예방 및 피난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 계획단계, 유지관리단계 적용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하였다. 먼저 아직까지 한 개 층 내부에 거실 목적으로 추가되는 바닥 층에 대한 법적인 개념정리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법적 공간인 '다락'에 대한 불법적 사용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다음으로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적용대상이 다중이용건축물, 분양 대상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어 실내공간 변화가 많은 근린생활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용도와 규모로 규정되는 피난안전 시설 기준만으로 실내공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보다 합리적인 건축물의 피난안전 관련 법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건축물 피난안전 규정을 비교해보았다. 국내 피난안전 규정은 건축물의 용도, 층수, 규모에 따른 복도의 폭, 피난계단의 설치, 출구의 수, 보행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신재료, 신공법을 활용한 대규모 건축물의 출현에 대응하고자 일부 법령에서 재실자 밀도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초대형·초고층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법령마다 재실자 밀도 기준이 상이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주이용자의 행태 및 수용인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국외의 경우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성능 중심의 피난안전설계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재실자를 기준으로 건축물 용도를 분류한 후 용도별로 재실자 밀도와 피난용량을 산정하여 각 건축물의 특성에 대응하는 피난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용도별 실내공간의 최대수용인원을 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피난경로의 수를 결정하며 용도별 재실자 1인당 단위 폭을 반영하여 피난경로의 최소 폭을 산출해야 한다.

제4장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따른 안전기준 개선안

건축물의 실내 공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실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중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기존 건축물의 용적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면적 준과 구조보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타 건축물 사용과정의 실내 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실내건축 공간구조 및 마감재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관리 점검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내 공간 재실자 밀도를 고려한 피난안전 계획 등 근본적인 건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 단계 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도 실내 공간 변경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난·방화구조, 실내건축, 관리 및 점검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기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건축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층’에 대한 법적 개념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설치 면적과 높이 등을 규정한다.

둘째,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는 건축물은 신축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 직통계단, 옥외피난계단, 출입구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피난공간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셋째, 신축건물 뿐 아니라 기존 건물 중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중층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사용단계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안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넷째, 대피 성능이 각기 다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난취약자를 배려한 대피공간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섯째, 중층에서 피난층으로 안전한 이동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중층에 대한 실내건축 안전기준을 보완한다.

여섯째, 실내건축 정기 점검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침을 마련한다.

제5장 결론

건축물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다양한 업종의 복합과 실내 공간의 변경 방법, 변경 시 사용되는 설치물의 구조 및 재료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현황 진단과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시장의 요구로 등장하는 새로운 업종의 실내 공간 이용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안전기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변화하는 건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 전체를 관통하는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규모와 더불어 주이용자 특성 및 규모 등 다각적인 계획요소에 대한 제도적 반영이 요구된다. 해외의 건축기준 운영 사례를 참고할 때 계획의 기점이 되는 용도분류의 재편과 그에 따른 성능 설계 기준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내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기준체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제어

실내 공간, 수요변화, 안전기준, 피난, 중층, 재실자 밀도

차례 CONTENTS

| | |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1) 연구의 배경 | 1 |
| 2) 연구의 목적 | 4 |
| 2. 연구의 범위 | 5 |
| 1) 공간적 범위 | 5 |
| 2) 내용적 범위 | 5 |
|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연구의 차별성 | 6 |
| 제2장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와 안전 이슈 | 9 |
| 1. 건축 환경의 변화 | 9 |
|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 9 |
| 2) 건축물 수요 방식 변화 | 12 |
|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사업의 증가 | 13 |
| 1) 유지관리 관련 사업 증가 | 13 |
| 2) 실내건축 관련 공사 증가 | 15 |
| 3. 건축물 실내 공간 소비형태 변화와 안전 이슈 | 17 |
| 1) 건축물 소비 형태의 변화 | 17 |
| 2) 근린생활시설 내 다중이용업소의 설치 현황 | 19 |
| 3) 건축물 실내 공간 소비형태 변화와 안전 이슈 | 22 |
| 제3장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 | 25 |
| 1. 건축물 실내 공간의 안전문제 | 25 |
| 1) 생활안전사고 발생장소 및 원인 | 26 |
| 2) 화재사고 발생장소 및 원인 | 28 |

| | |
|--|-----------|
| 2.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 32 |
| 1)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 | 32 |
| 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규정 | 34 |
| 3) 화재 및 피난 안전 확보 규정 | 42 |
| 3. 국내의 건축물 피난안전 규정 | 55 |
| 1) 국내 피난안전 관련 규정 | 55 |
| 2) 국외 피난안전 관련 규정 현황 | 63 |
| 3) 국외 피난안전 규정의 시사점 | 69 |
| | |
| 제4장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따른 안전기준 개선안 | 71 |
| 1. 실내 공간 수요변화의 주안점과 안전기준 개선 방향 | 71 |
| 2. 실내 공간 안전기준 개선 방안 | 74 |
| 1) 용어정의 및 설치기준 마련, 피난기준 적용 확대 | 74 |
| 2) 실내건축 기준 개정 | 78 |
| 3) 안전관리 점검제도 확대 | 82 |
| | |
| 제5장 결론 | 83 |
| 1. 연구 성과 | 83 |
| 2. 향후 과제 | 85 |
| | |
| 참고문헌 | 87 |
| 영문요약 | 91 |
| 부록1.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령 | 97 |
| 부록2. 만화카페 및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설치 현황 | 119 |

표차례 LIST OF TABLE

| | |
|---|----|
| [표 1-1] 동대문구청에 접수된 실내공간 활용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민원 | 3 |
| [표 1-2] 선행연구 및 본 연구 | 6 |
| [표 2-1] 1980년 이후 1인가구 수 | 11 |
| [표 2-2] 건축물 면적 규모별 동수 | 13 |
| [표 2-3] 경과년수별 건축물 수 | 14 |
| [표 2-4] 실내건축공사업 도급건수 및 매출액(2007-2017) | 15 |
| [표 2-5] 만화 및 키즈카페, 찜질방, 공공도서관 사례수 | 19 |
| [표 2-6] 만화 및 키즈 카페, 찜질방, 공공도서관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 | 19 |
| [표 2-7] 만화 및 키즈 카페, 찜질방, 공공도서관 업소 위치 층 | 19 |
| [표 2-8] 만화 및 키즈 카페, 찜질방, 공공도서관 업소 바닥 면적 | 20 |
| [표 2-9] 국내 건축물 용도별 동수 비중 | 21 |
| [표 2-10] 근린생활시설 면적별 비중 | 21 |
| [표 2-11] 근린생활시설 층수별 비중 | 21 |
| [표 2-12] 실내 공간 활용에 대한 민원내용 및 답변 | 23 |
| [표 3-1] 건축물 용도별 안전사고 발생공간 | 26 |
| [표 3-2] 고령자 안전사고 접수 현황 | 27 |
| [표 3-3] 실내놀이터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 28 |
| [표 3-4] 연간 전체 화재발생 건수 및 건축물 화재 건수 | 28 |
| [표 3-5] 우리나라 연도별 화재발생 추이 | 29 |
| [표 3-6] 다중이용시설 업종 별 화재발생 원인 | 30 |
| [표 3-7]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와 주요내용 | 33 |
| [표 3-8]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 관련 규정의 유형 분류 | 34 |
| [표 3-9]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기준 | 35 |
| [표 3-10]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기준 | 35 |
| [표 3-1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생활안전 관련 사항 | 36 |
| [표 3-12]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중 '실내건축 안전기준' | 37 |
| [표 3-13] 장애인등의 사용편의를 위한 시설 기준 | 39 |
| [표 3-14]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 기준 적용대상 | 39 |

| | |
|---|----|
| [표 3-15]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 40 |
| [표 3-16] 화재 및 피난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기준 | 42 |
| [표 3-17] 화재 및 피난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기준 | 43 |
| [표 3-18] 방화구획 설치기준 | 45 |
| [표 3-19]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화재안전 관련 사항 | 46 |
| [표 3-20] 화재안전기준(NFSC) | 48 |
| [표 3-21]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 50 |
| [표 3-2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 51 |
| [표 3-23]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실내공간 화재 및 피난안전 관련 기준 | 52 |
| [표 3-24] 국내 피난안전 규정 개요 | 55 |
| [표 3-25] 건축법의 피난안전시설 설치기준 | 56 |
| [표 3-26] 건축법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용도별 재실자 밀도 기준 | 59 |
| [표 3-27] 소방시설법 설치기준: 수용인원 산정방법 | 60 |
| [표 3-28] 초고층재난안전법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용도별 거주밀도 | 60 |
| [표 3-29]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 시 수용인원 산출기준 | 62 |
| [표 3-30] IBC(Intrenational Building Code)의 '재실자부하(Occupant Load)' 기준 주요내용 | 64 |
| [표 3-31] 재실자 당 허용 최대바닥면적(미국) | 65 |
| [표 3-32] 용도별 재실자 밀도(영국) | 68 |
| [표 3-33] 용도별 재실자 밀도(일본) | 69 |
| [표 4-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안 | 74 |
| [표 4-2]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등 개정안 | 77 |
| [표 4-3] 건축법 제52조의2 등 개정안 | 79 |
| [표 4-4]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개정안 | 80 |
| [표 4-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 81 |
| [표 4-6] 건축법 제52조의2 개정안 | 82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 | |
|--|----|
| [그림 2-1] 총인구 및 출생·사망·자연증가(1965년~2065년) | 9 |
| [그림 2-2] 고령인구 비중 및 성비 추이 | 10 |
| [그림 2-3] 1980년 이후 1인 가구 수 | 11 |
| [그림 2-4] 결혼 이민자 장래인구 추계(2011년~2020년) | 12 |
| [그림 2-5] 연도별 건축구분별 건축허가 추이 | 14 |
| [그림 2-6] 실내건축공사 도급 건수 및 매출액(2007년~2017년) | 15 |
| [그림 2-7] 수요변화에 따른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규모변화 | 16 |
| [그림 2-8] 공유공간 플랫폼 | 17 |
| [그림 2-9] 공유주택 사례_커먼타운 | 17 |
| [그림 2-10] 만화카페, 키즈카페 입점 건축물 용도 | 18 |
| [그림 2-11] 신규업종 설치 건축물의 전체 면적 및 해당 면적 현황 | 20 |
| [그림 2-12] 신규 업종 위치 층 | 20 |
| [그림 2-13] 키즈카페 도면(단면) | 22 |
| [그림 2-14] 키즈카페 도면(평면) | 22 |
| [그림 3-1] 화재확대 사유 | 29 |
| [그림 4-1] 중층설치 평면1 | 76 |
| [그림 4-2] 중층설치 평면2 | 76 |
| [그림 4-3] 중층 불가 | 76 |
| [그림 4-4] 중층 가능 | 76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연구의 차별성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건축 산업 신 시장 개척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5조에 근거하여 '제 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 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9년 시행계획 세부 과제로 '공간콘텐츠 활용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 중에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해당 과제의 주안점은 공간상품화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공간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유연화 방안을 모색함¹⁾

□ 건축 환경과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공간 수요 트렌드 변화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건축 공간 소비 주체의 변화
 -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구 감소 :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총 인구규모는 감소하여 2060년 4,28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²⁾

1) 국토교통부,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 시행계획, p.13 참조

2) 통계청, <http://kosis.kr>(2019.06.20.검색)

- 노인인구 증가 :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2010년 496만명(전체 인구의 10.8%)이었으나 2019년에는 707만명(전체 인구의 14.9%)으로 증가함으로써 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³⁾
- 1인 가구 증가 : 한국의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1인가구의 비율은 계속해서 성장해 2045년 16.3%에 이를 것으로 예측⁴⁾
- 저성장 경제흐름의 지속으로 관리차원의 건축산업 증가
 - 과거 SOC중심의 대형 건설사업 투자는 '재투자자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⁵⁾
 - ※ 정부의 SOC 재정투자 비중은 2010년 8.6에서 2017년 6.5로 감소. 이에 따라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건설사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⁶⁾
 - 또한 2014년 대비 2017년 신축건축물의 허가건수는 100% 증가한 것에 비해 리모델링과 리노베이션, 용도변경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사업 건수는 약 200% 증가⁷⁾
 - 대표적인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리노베이션 사업분야인 실내건축의 경우, 최근 10년간(2007년~ 2017년) 건축공사 매출을 기준으로, 전체 전문공사 평균이 130% 증가한 반면 약 15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⁸⁾
- 건축 환경 변화는 건축물 공간 수요 트렌드 변화와 연동
 - 건축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1·2인 가구, 노인, 여성 등 사회구성원 비율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구성원의 경제여건, 기호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간 소비형태가 등장함
 - 이는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만화카페, 키즈카페, 애견카페 등 기존에 없었던 각종 생활서비스 시설 형성과 공간디자인으로 이어짐

3) 통계청, <http://kosis.kr>(2019.06.20.검색)

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2035000002>(2019.06.23.)

5) 용환진(2017), "SOC투자, 향후 5년간 최대 47조 부족", 매일경제 2월 15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07820>)(2017.10.10.)

6) 한국고용정보원(2017), 「2017 상반기 일자리 전망」, P.41 참조하여 작성

7)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육성지원 사업' 내부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8) 대한전문건설협회 2007~2017년 실내건축분야 매출액 자료 분석

※ 국내 만화시장은 2017년도 매출이 1조원을 초과하였고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특정업체의 만화카페 프랜차이즈가 190여개로 나타남)

※ 실내건축디자인을 통해 개인 및 대중적 취향과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공간이 생겨남

□ 실내건축 공사의 증가와 안전기준 준수 논란 확대

• 그러나 이러한 공간 소비 형태는 비정상적인 건축시장 양상과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및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 새로운 공간 소비 트렌드로 건축물 내부 1개 층을 수평수직으로 구획하고 복합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경우가 많으며 이때 면적증가에 관한 법적 해석논쟁과 실제 건축시장에서의 관계자 간 이해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건축물 내부 구획과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건축기준 적용방식이 달라 시설공급자의 위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건축기준 미적용(가구류 간주 - 조치없음) : 서울 마포·서대문구, 논산시, 서산시, 창원시 등 / 건축기준 적용(거실로 간주 - 위반조치) : 서울 강남·서초구, 대전 서구, 수원시 등

[표 1-1] 동대문구청에 접수된 실내공간 활용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민원

| 민원사항 | 구청답변 |
|---|--|
| 만화카페의 복층 형식의 구조물이 위반사항(무단증축)이므로 행정조치 요청 | 현재 해당 구조물이 복층 구조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상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자치구의 판단만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고 개별 구청만이 아닌 서울시 전 자치구의 민원사항으로써 통일적인 규범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내부자료>

• 건축시장 요구에 대응하되, 불특정 이용자 및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선진적인 건축기준 도입방안 모색 필요

- 1개 층을 수평수직으로 구획하고 복합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재실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사고 발생 시 기존 허가기준에 따른 피난통로·계단·출입구 등 내부시설 구조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현행 건축기준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9) 김종일, [만화산업 고속성장 빗장 풀자], 시사저널

- 특히 최근 증가하는 건축물 화재사고나 지진 등 각종 건축물 위험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예방과 피해 방지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시장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안전강화 보완책이 요구되는 상황

2) 연구의 목적

-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실내 공간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함
 -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의 주안점과 그 특성에 부합하는 현행 계획기준의 개선 방안 마련

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
 - 불특정 다수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 일반적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공간에서 다중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초점을 둬
 - 거실 등 공간 활용도가 높고 복도나 계단 등 대피와 피난을 위한 공간에 관한 안전기준 개선안을 마련
 - 특히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실로 이용하는 실내 공간과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사고 발생 시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함

2) 내용적 범위

- 생활안전, 화재 및 피난안전
 -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이나 인테리어 등의 실내 공간 변경 시 발생 가능한 생활안전사고와 화재사고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시행된 기존건축물의 내부 공간 구조·마감재 변경 등에 따른 크고 작은 생활안전사고와 잠재적인 화재사고

- 법제도의 안전기준
 - 건축물 실내 공간의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관련 법제도
 -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 관리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타 시설물 설치에 관한 각종 기준 등
 - 특히 「건축법」을 중심으로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내 공간의 구조 및 형태에 대한 기준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연구의 차별성

- 건축물 실내공간의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는 생활안전과 화재안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 생활안전사고는 낙상, 추락 등의 일상적인 건축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가이드라인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연구 비중이 높음
 - 화재안전 관련 연구는 실내 소방시설물에 관한 법령 검토와 방염성능을 높이기 위한 마감재료 규정에 관한 연구가 추진됨
- 본 연구는 건축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실내 공간 이용방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건축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둠

[표 1-2] 선행연구 및 본 연구

| 구분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연구내용 |
|----------|--|--|--|
| 주요 선행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명 : 건축물의 실내건축 재료에 관한 화재안전성 연구 •연구자(년도) : 서수은(2013) •연구목적 :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내장식물의 연소가스 유해성 평가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별 난연성능 평가 분석 •재료별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실내 마감재료 사용기준 •국가별 실내 마감재료의 난연성 기준분석 •재료별 가스유해성시험 결과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명 :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 라인 마련 연구 •연구자(년도) : 김상호 외 (2013) •연구목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내건축 설계 방향 제시 및 실내건축산업 육성 지원방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및 법·제도 조사분석 •실내공간 안전사고 발생실태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 개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건축 산업현황 및 관련 법·제도 현황 •실내건축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개선 방향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실내건축 산업 육성·지원 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명 : 실내건축 관련 소방 규정과 방염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 조성오(2010) •연구목적 : 실내건축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소방관련규정의 연구 및 실무에 활용될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건축 소방관련 법규 및 규정 조사 •재료 및 시설 용도별 기준으로 분석 •소방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규정의 적용과 시행에 관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건축 관련 소방규정 외국사례 •현행제도의 분석 |

| 있는 방안제시 | 분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명 :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구조 및 시공방법 등의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김은희 외(2014) •연구목적 : 안전한 실내건축 공간 환경을 위한 건축물 및 실내건축 마감재료, 구조 및 시공방법, 실내건축공사의 관리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건축 관련 문헌조사 •국내외 실내건축 재료 및 설치 기준 관련법제도 조사 •실내건축 관계자 설문 및 자문, 공무원 간담회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장식물에 관한 법제도적, 계획적 기준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건축물 용도 및 구조·시공 범주의 설정과 규칙 마련 •실내건축의 시공에 관한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 주기에 관한 건축조례안 근거 기준 마련 | |
| 본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명 : 건축물 실내공간 수 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연구목적 : 건축물 실내 공간 활용방식 다변화에 대응하면서 사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물 공간구조 및 시설물 설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및 통계, 법·제도 조사 •민원자료 조사 •실내공간 활용 국내외 사례 조사 •관계자 설문 및 자문, 공무원 간담회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실내공간 활용 양상과 제기되는 문제점 •건축물 실내 공간 다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제도 현황 및 한계 •건축물 실내 공간 다변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 개선방안 |

제2장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와 안전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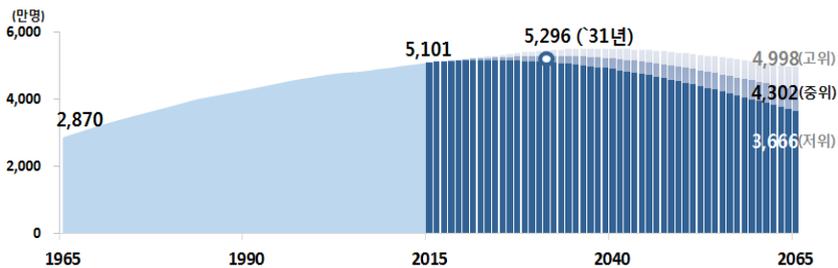
1. 건축 환경의 변화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사업의 증가
 3. 건축물 실내 공간 소비형태 변화와 안전 이슈
-

1. 건축 환경의 변화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 총인구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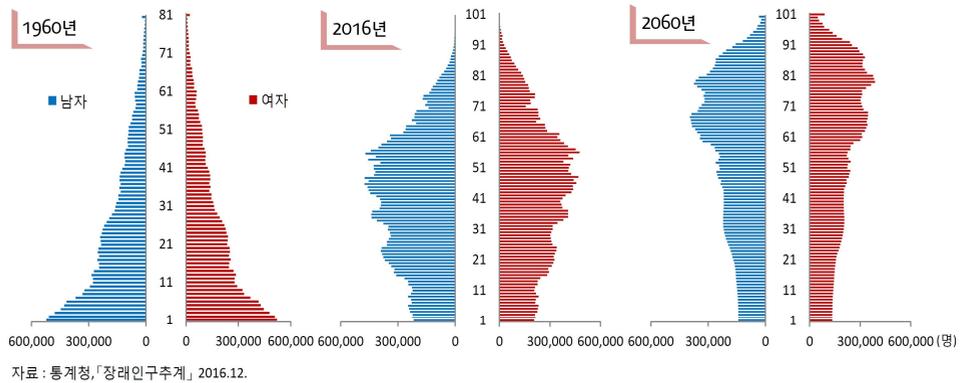
-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총 인구 규모는 감소하여 2060년 4,28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



[그림 2-1] 총인구 및 출생·사망·자연증가 1965-2065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6). "미래인구추계 2015~2065년", 12월 8일자 보도자료. P.4)

-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2010년 4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 였으나 2019년 707만명으로 약 142%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에 14.9%를 차지, 고령사회¹⁰⁾ 진입이 가시화되었고 2060년에는 17,622천명까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약 40%가 노인 인구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¹¹⁾
 - 즉 노인이 새로운 인구 구성원으로 부상하였고 결과적으로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공간 수요자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관련 각종 생활서비스시설의 양적·질적 활용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그림 2-2] 고령 인구 비중 및 성비 추이

〈출처: 통계청(2016). “2016 고령자 통계”, 9월 29일자 보도자료, p.14

□ 1인 가구의 급증

- 1980년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38만호였으나 2017년 562만호로 147%가 증가함¹²⁾
 - 이 중 미혼 및 이혼 등의 원인에 의한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2010년 66.1%에서 2014년 69%로 상승하였고 연령대별로그준으로는 20-30대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또한 현재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4%이

10)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해당 국가 전체인구의 7%를 초과한 경우 ‘고령화 사회’로, 14%에 도달하면 ‘고령사회’로 규정 ; 박정호(2015), KDI경제저널, 2015.01, KDI, p.6,

11) 통계정보도자료(2011.12.7),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p. 0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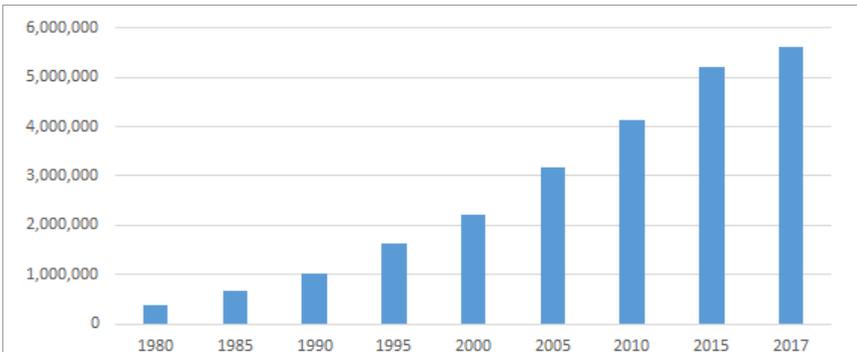
12) 통계청 홈페이지, 2019.04.05. 검색

나, 20년 후인 2035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¹³⁾

[표 2-1] 1980년 이후 1인가구 수

| 구분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2017 |
|-------|---------|---------|-----------|-----------|-----------|-----------|-----------|-----------|-----------|
| 가 구 수 | 382,743 | 660,941 | 1,021,481 | 1,642,406 | 2,224,433 | 3,170,675 | 4,142,165 | 5,203,440 | 5,618,677 |

〈출처: 통계청, 2019.04.05.검색〉



[그림 2-3] 1980년 이후 1인 가구 수

〈출처: 통계청, 2019.04.05.검색〉

□ 가구형태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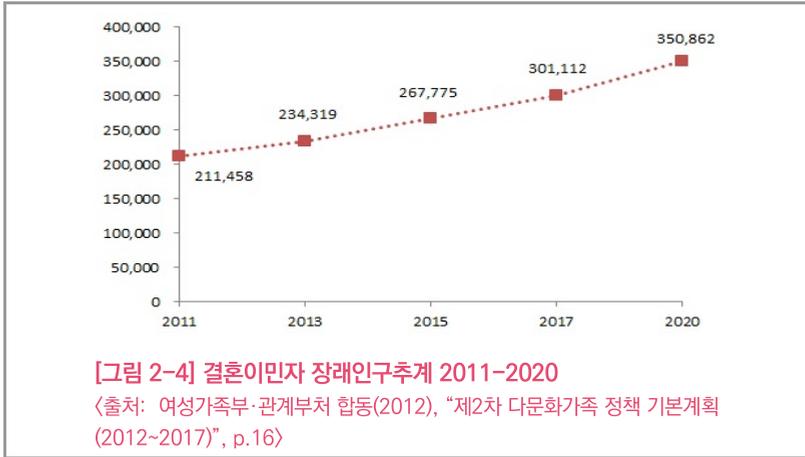
- 맞벌이 가구, 다문화가구, 반려동물 가구 등 가구 구성원이 변화하였고 가구 형태도 다양화되어가는 추세
 - (맞벌이 가구 증가) 2016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1,188만 4천 가구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는 533만 1천 가구로 전체의 44.9%를 차지, 이는 2015년 대비 12만 5천 가구 약 1%가 증가한 수치임¹⁴⁾
 - (다문화 가구의 비중 증가) 다문화가족은 2012년 기준 70만 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¹⁵⁾하여 2020년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¹⁶⁾

13) 통계청(2017), “2016 고령자 통계”, 9월 26일자 보도자료

14) 통계청(2017),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6월 20일자 보도자료

15) 반면, 통계청 ‘2015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서는 다문화 혼인, 이혼, 출생이 모두 감소하여 전체 다문화 인구가 감소한다고 발표

16)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2~2017)”, pp.15~16



- (반려동물 가구 비중 증가) 전체 가구의 18% 정도가 총 1,00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¹⁷⁾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추세¹⁸⁾

2) 건축물 수요방식 변화

□ 공간마케팅 확대

- 노인인구, 1인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 반려동물 가구 등 가구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공간 마케팅 및 상품화 확대 예측
 - 가구 유형별 소규모, 효율성, 안전성 등이 강조된 공간상품 증가
 - 무인관리 시스템의 적용 및 확산, 무인택배 시스템이 도입된 주택, 제한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빌트인 시스템, 가변형·시스템 가구 증가 등 인테리어 방식의 변화, 맞춤형 주거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공간수요에 대응하는 기능 창출

□ 생활공간 서비스 시설의 증가

- 주택의 상품화와 더불어 노인 및 1인 가구의 외부활동, 커뮤니티 욕구를 타겟으로 한 새로운 생활서비스 공간 상품화 촉진

17) KB지식비타민,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p.1

18)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경에는 약 6조원 정도로 확대될 전망- 상계서, p. 1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사업의 증가

1) 유지관리 관련 사업 증가

□ 노후한 소규모 건축물 증가와 유지 및 관리사업의 확대

- 저성장 경제흐름의 지속으로 관리차원의 건축산업 증가
 - 과거 SOC중심의 대형 건설사업 투자는 '채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¹⁹⁾
- 소규모의 노후 건축물의 지속적인 증가
 - 연면적을 기준으로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약 616만동으로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약 719만동의 85.7%이상을 차지
 - 기존 건축물 조성 현황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노후 건축물 대다수가 소규모 건축물일 것으로 추정되며 시간이 경과 할수록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의 노후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2-2] 건축물 면적 규모별 동수

(단위: ㎡/ 동수/ %)

| 구분 (단위) | 계 | 100 | 100-200 | 200-300 | 300-500 | 500 ~1000 | 1000 ~3000 | 3000 ~10000 | 10000 이상 |
|------------|-----------|-----------|-----------|---------|---------|--------------|---------------|----------------|-------------|
| 합계 | 7,191,912 | 3,256,250 | 1,599,626 | 535,392 | 772,117 | 546,098 | 270,159 | 153,346 | 58,924 |
| | (100) | (45.28) | (22.24) | (7.44) | (10.74) | (7.59) | (3.76) | (2.13) | (0.82)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9.02.07.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가능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은 현재 약 450만동으로 전체 건축물 동수의 64%이상을 차지. 또한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수는 약 389만동으로 55%,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도 245만동, 34%이상으로 나타남

19) 용환진(2017), "SOC투자, 향후 5년간 최대 47조 부족", 매일경제 2월 15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07820>>(2017.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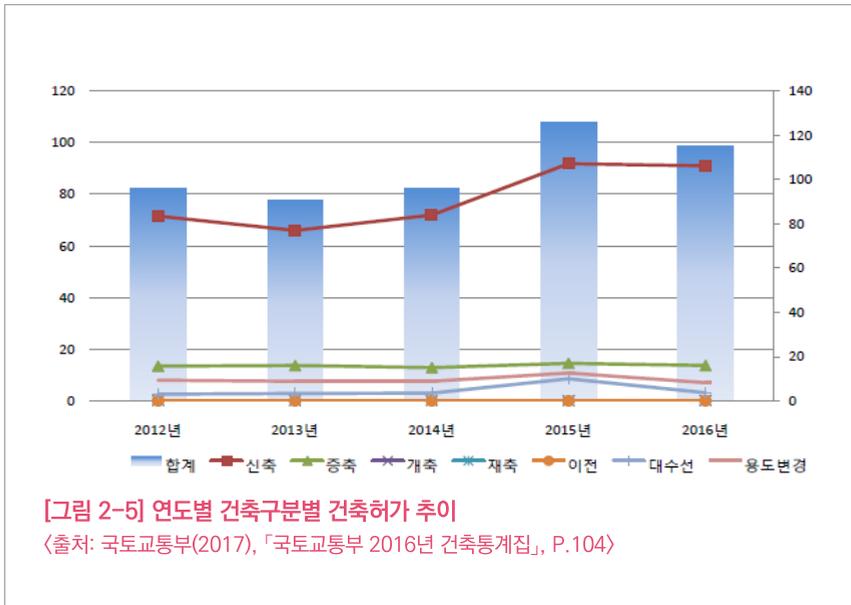
[표 2-3] 경과연수별 건축물 수

(단위: 동수/%)

| 지역 | 계 | ~10년 | 10~15년 | 15~20년 | 20~25년 | 25~30년 | 30년~ | 기타 |
|----|-----------|-----------|---------|---------|---------|---------|-----------|-----------|
| 합계 | 7,031,588 | 1,321,425 | 638,543 | 633,799 | 862,378 | 572,420 | 2,452,969 | 3,887,767 |
| | (100.00) | (18.79) | (9.08) | (9.01) | (12.26) | (8.14) | (34.88) | (7.82)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9.03.11. 기준)>

- 건축물의 노후화를 지연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개보수 등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사업 증가
 - 국토교통부 건축물 허가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건축구분별 건축허가 건수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순으로 각각 144,396건(71.1%), 37,128건(18.3%), 18,857건(9.3%)으로 여전히 신축 비중이 높지만 2015년 이후 상승 추세가 꺾였고 반면 증축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전년도 대비 재축 건축물 허가건수는 28.6% 증가하였으며,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대한 건축물 허가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 실내건축 관련 공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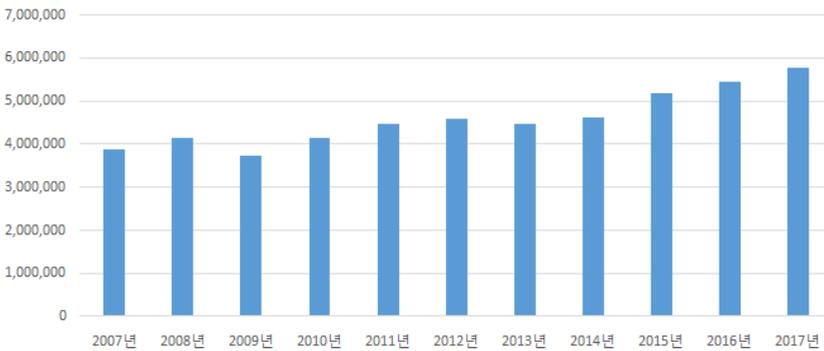
□ 실내건축 공사 증가

- 대표적인 소규모 건축 전문 공사업으로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리노베이션 사업 분야인 실내건축의 경우, 최근 10년간(2007년~2017년) 도급 건수 기준 약 125%, 매출액 기준으로 1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실내건축공사업 도급건수 및 매출액(2007-2017)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건수 | 59,598 | 65,556 | 71,087 | 72,576 | 73,179 | 73,246 | 72,891 | 68,854 |
| 매출 | 3,888,619 | 4,139,871 | 3,743,540 | 4,136,623 | 4,469,006 | 4,575,915 | 4,477,467 | 4,634,155 |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2019.02.20. 기준)>



[그림 2-6] 실내건축공사 도급 건수 및 매출액(2007-2017)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2019.02.20. 기준)>

□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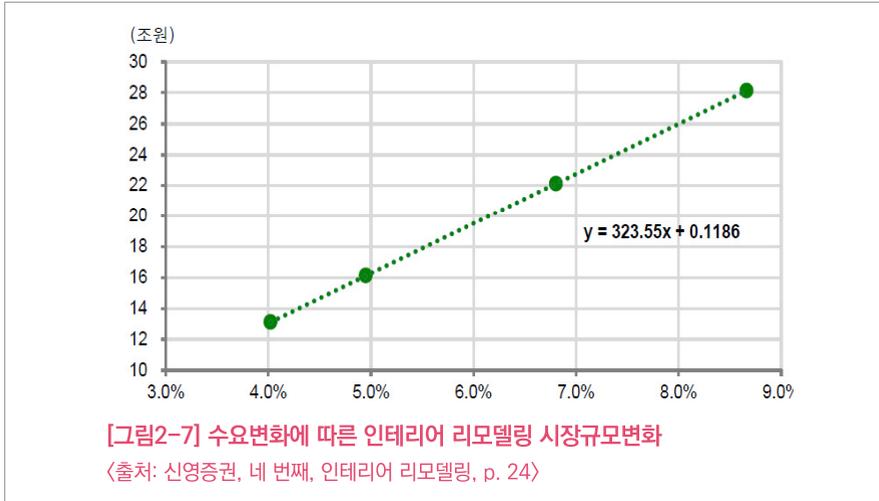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른 추정방식을 활용, 노후화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의 잠재 시장규모를 추정하면 약 16.1조원²⁰⁾
 - 준공 후 경과 연수가 10년~20년 미만인 경우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요가 가

20) 신영증권, 네 번째, 인테리어 리모델링, p.23

<http://www.shinyoung.com/upload/FileServer/bbsfiles/71/20190327/1553644408435.pdf>

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리모델링 수요가 4.9%일 때 시장규모는 16.1조원으로 전망

- 향후 수요율이 1% 바뀔 때마다 관련 시장 규모는 3조원씩 증감할 것으로 분석21)



21) 신영증권, 네 번째, 인테리어 리모델링, p.24 / <http://www.shinyoung.com/upload/FileServer/bbsfiles/71/20190327/1553644408435.pdf>

3. 건축물 실내 공간 소비형태 변화와 안전 이슈

1) 건축물 소비 형태의 변화

□ 새로운 건축 유형의 등장

-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 저성장 현상은 IT 등의 신기술과 맞물리며 건축시장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건축물과 연동된 새로운 산업을 등장시킴
 - 특히 건축설계 및 시공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어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무수한 가상 또는 실제의 전문가 '커뮤니티(디지털 플랫폼 등)'를 토대로 새로운 건축물 이용 형식이 등장
-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공유주택이나 공동작업 공간이 증가하였고 다분야 협업이 가능한 개방적 인큐베이터 공간, 팝업스토어 등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 건축공간이 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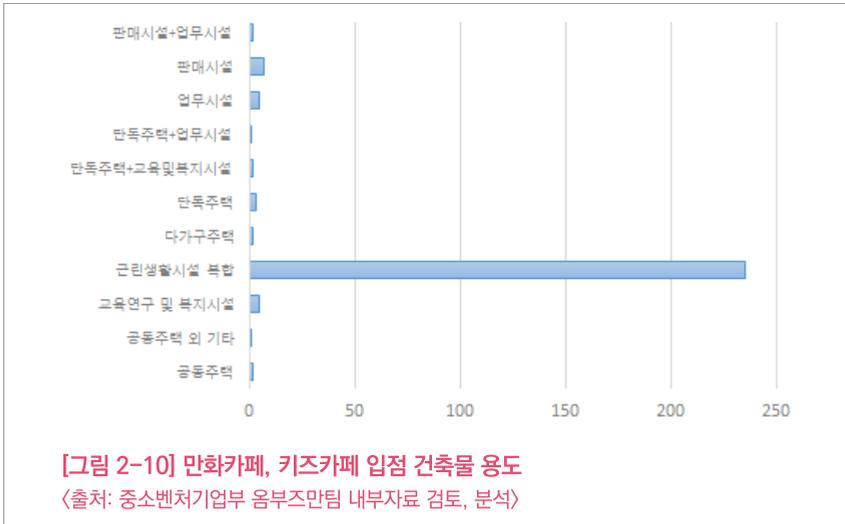


[그림 2-8] 공유공간 플랫폼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2-9] 공유주택 사례_커먼타운
출처: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4/203880/>

□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등장과 건축물 실내 공간구조 변화

- 새로운 건축물 유형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에 없었던 상업적 서비스 목적의 다중이용업소의 등장과 확산
 - 만화카페²²⁾, 키즈카페²³⁾, 애견카페²⁴⁾ 등 소비자의 니즈와 산업성장 동향을 반영한 새로운 여가생활 서비스 제공업의 등장
- 이들 시설은 대체로 상업 및 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며, 해당 목적에 상응하는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 기존 공간의 분위기 뿐 만 아니라 구조 및 설치물의 형태까지 변경
 - 실내건축과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 개인 및 대중적 취향과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공간을 생산



- 22) 1. 만화를 보면서 음료나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게. 2. 젊은 취향에 맞게 카페 풍으로 디자인한 만화 대본소. 3. 한국에서는 ‘만화 대본소’, ‘만화 가게’로도 불리며, 일본에서는 ‘만화 다방(漫画喫茶店)’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만화 카페 [comics cafe, 漫画喫茶店] (만화애니메이션사전, 2008. 12. 30., 김일태, 윤기현, 김병수, 설종훈, 양세혁)
- 23) 어린이를 소비자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설정하고 부모들이 함께 시간을 소비하는 실내 어린이 놀이터
- 24) 애견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휴식하며 차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실내 휴게공간

2) 근린생활시설 내 다중이용업소의 설치 현황

- 신규 서비스업종으로서 다중이용업소는 키즈카페와 만화카페의 경우 전국적으로 최소 약 770개 이상이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8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171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키즈카페, 만화카페와 더불어 찜질방, 공공도서관도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대표적인 서비스시설에 해당함
- 해당 시설이 위치한 건축물의 약 40%는 2,000㎡이하의 중소규모이고 60%는 그 이상의 중대규모에 해당함

[표 2-5] 만화 및 키즈카페, 찜질방, 공공도서관 사례 수

(단위: 업소 수)

| 구분 | 소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
| 만화카페 | 643 | 13 | 150 | 38 | 31 | 21 | 41 | 25 | 47 | 145 | 18 | 29 | 14 | 15 | 8 | 22 | 23 |
| 키즈카페 | 128 | 4 | 48 | 17 | 7 | 3 | - | - | 11 | 26 | - | 1 | 4 | 3 | 3 | 1 | |
| 소계 | 771 | 17 | 198 | 55 | 38 | 24 | 41 | 25 | 58 | 171 | 18 | 29 | 15 | 19 | 11 | 25 | 24 |
| 찜질방 | 92 | 11 | 28 | 6 | - | - | - | - | - | 26 | - | 10 | - | 6 | 3 | - | 2 |
| 공공도서관 | 52 | 4 | 17 | 2 | 1 | 2 | 3 | - | 4 | 8 | 2 | 3 | 3 | 1 | 2 | - | - |
| 합계 | 920 | 32 | 243 | 63 | 39 | 29 | 44 | 25 | 62 | 205 | 20 | 42 | 18 | 26 | 16 | 25 | 26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내부자료 참조, 정리>

[표 2-6] 만화 및 키즈 카페, 찜질방, 공공도서관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 (단위: 업소 수/%)

| 합계 | ~500㎡ | 500~1000 | 1000~2000 | 2000~3000 | 3000~ |
|-----|-------|----------|-----------|-----------|-------|
| 561 | 38 | 97 | 97 | 78 | 251 |
| 100 | 6.8 | 17.3 | 17.3 | 13.9 | 44.7 |

<출처: 민원24, <http://minwon.go.kr>, 건축물 관리대상 조사·분석>

- 근린생활시설 내 업소 면적은 150~300㎡미만이 35.7%로 가장 많고 500㎡ 미만도 20.4%를 차지하며 1,000㎡이상이 17.1%로 나타남

[표 2-7] 만화 및 키즈 카페, 찜질방, 공공도서관 업소 위치 층 (단위: 업소 수/%)

(단위: 업소 수/%)

| 합계 | 지하층 | 1층 | 2~4층 | 5층 | 6~10층 | 10층이상 |
|-----|------|-----|------|------|-------|-------|
| 307 | 55 | 17 | 176 | 32 | 22 | 5 |
| 100 | 17.9 | 5.6 | 57.3 | 10.4 | 7.2 |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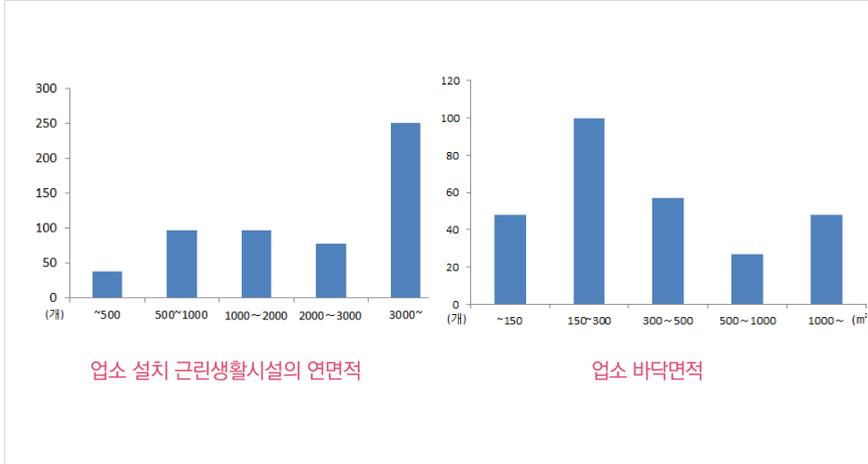
<출처: 민원24, <http://minwon.go.kr>, 건축물 관리대상 조사·분석>

- 또한 해당 업종이 위치한 층은 2~4층이 57.3%로 가장 많고 약 18%는 지하층에도 위치하고 있음

[표 2-8] 만화 및 키즈 카페, 찜질방, 공공도서관 업소 바닥면적 (단위: m²/업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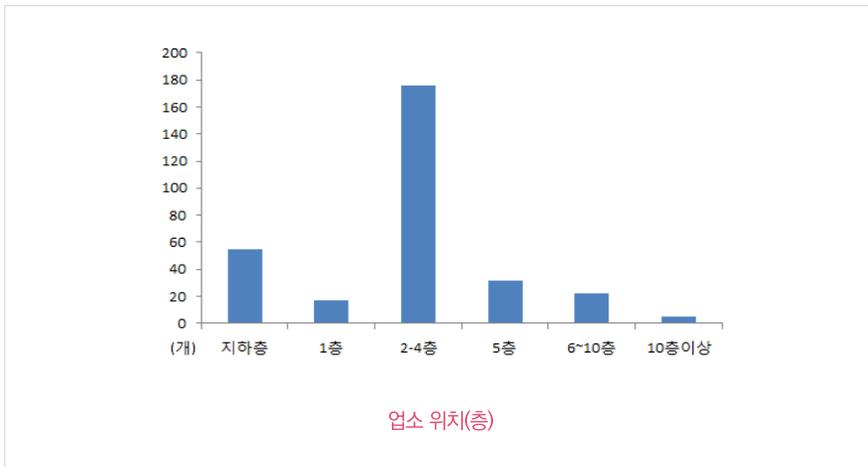
| 합계 | ~150 | 150~300 | 300~500 | 500~1000 | 1000~ |
|------|------|---------|---------|----------|-------|
| 280 | 48 | 100 | 57 | 27 | 48 |
| 99.9 | 17.1 | 35.7 | 20.4 | 9.6 | 17.1 |

<출처: 민원24, <http://minwon.go.kr>, 건축물 관리대상 조사·분석>



[그림 2-11] 신규 업종 설치 건축물의 전체 면적 및 해당 면적 현황

<출처: 민원24, <http://minwon.go.kr>, 건축물 관리대상 조사·분석>



[그림 2-12] 신규 업종 위치 층

<출처: 민원24, <http://minwon.go.kr>, 건축물 관리대상 조사·분석>

- 한편, 다중이용업소가 가장 많이 입점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약 16%로 단독주택(58.3%)을 제외하고 가장 많음

[표 2-9] 국내 건축물 용도별 동수 비중

(단위: %)

| 단독 주택 | 공동 주택 | 근린 생활 | 문화 및 집회 | 종교 시설 | 판매 시설 | 운수 시설 | 의료 시설 | 교육 연구 시설 | 노유 자시 설 | 수련 시설 | 운동 시설 | 업무 시설 | 숙박 시설 | 위락 시설 |
|-------|-------|---------|---------|---------|-------|---------|-------|----------|---------|-------|-------|---------|-------|-------|
| 58.3 | 6.3 | 16.0 | 0.2 | 0.5 | 0.1 | 0.0 | 0.1 | 1.0 | 0.6 | 0.1 | 0.1 | 0.5 | 0.6 | 0.1 |
| 공장 | 창고 시설 | 위험 물시 설 | 자동차 관련 | 동물 및 식물 | 자원 순환 | 교정 및 군사 | 방송 통신 | 발전 시설 | 묘지 관련 | 관광 휴게 | 장례 시설 | 야영 장 시설 | 기타 | 확인불가 |
| 4.4 | 4.6 | 0.4 | 0.4 | 4.7 | 0.3 | 0.4 | 0.0 | 0.1 | 0.0 | 0.1 | 0.0 | 0.0 | 0.0 | 0.1 |

<출처: 세움터 2019.03 기준 자료를 참고로 분석>

- 규모별로는 근린생활시설 전체 면적 1,149,493㎡ 중 200㎡미만이 51.7%로 가장 많고 500㎡미만이 29.9%, 1,000㎡미만이 11.9%, 1,000㎡이상이 5.8%로 대부분 중·소규모로 이루어짐

[표 2-10] 근린생활시설 면적별 비중

(단위: %)

| 합계 | 200㎡ 미만 | 200~500㎡ 미만 | 500~1,000㎡ 미만 | 1,000~2,000㎡ 미만 | 2,000~3,000㎡ 미만 | 3,000~10,000㎡ 미만 | 10,000㎡ 이상 | 확인불가 |
|-----|---------|-------------|---------------|-----------------|-----------------|------------------|------------|------|
| 100 | 51.7 | 29.9 | 11.9 | 3.9 | 0.9 | 0.9 | 0.1 | 0.5 |

<출처: 세움터 2019.03 기준 자료를 참고로 분석>

- 층수의 경우 6층미만이 97.4%로 가장 많으며, 노후도는 30년이하가 23.6%로 가장 많고 40년이하도 13.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큰 시설로 간주할 수 있음

[표 2-11] 근린생활시설 층수별 비중

(단위: %)

| 합계 | 6층 미만 | 6층~11층 미만 | 11층~16층 미만 | 16층~21층 미만 | 21층~31층 미만 | 31층 이상 | 확인불가 |
|-----|-------|-----------|------------|------------|------------|--------|------|
| 100 | 97.4 | 2.2 | 0.1 | 0.0 | 0.0 | 0.0 |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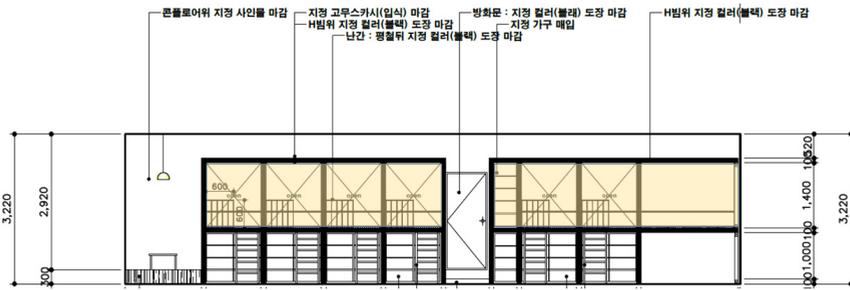
<출처: 세움터 2019.03 기준 자료를 참고로 분석>

3) 건축물 실내 공간 변화 양상과 안전 이슈

□ 실내 공간의 수직구획과 바닥면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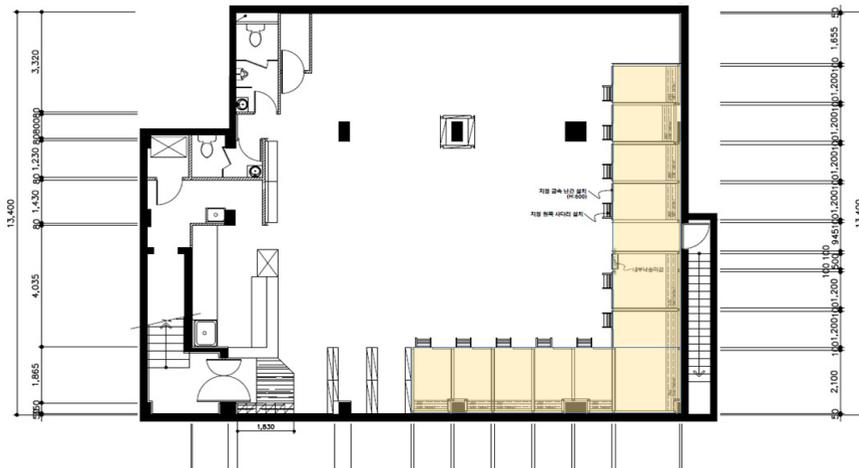
-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소 운영 시 한 개 층 내부에 '다락'과 같은 복층공간을 만들거나 철거가 용이한 가구형태의 공간을 형성하여 거실과 동일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 실내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복층부분을 거실로 간주할 것인지, 설치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층의 바닥면적 산정방식이 달라지며,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경우 위법건축물로 전락하게 됨



[그림 2-13] 키즈카페 도면(단면)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내부자료 참조〉



[그림 2-14] 키즈카페 도면(평면)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내부자료 참조〉

- 관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민원이 제기되기는 등 시장에서의 분쟁과 갈등이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해당 부분에 대한 허가권자의 해석이 달라 여전히 시설운영과 관리의 어려움
- 더불어 건축물 안전을 담보해야하는 건축법 소관 부처와 시장경기 활력 증진을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점도 다른 상황

[표 2-12] 실내 공간 활용에 대한 민원내용 및 답변

| 접수 | 내용 | 민원 답변(공문) |
|-----------|--|--|
| 서울 서대문구 | 프랜차이즈 카페 “놀숲”인테리어 복층에 대한 확인과 단속 요청 | 프랜차이즈 카페 “놀숲”사업장내 구조물들은 그 공간의 높이가 1.1m ~ 1.3m 정도로서 건축법에서 정의한 독립된 거실(2.1m 이상)로 볼 수 없어 복층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서울 마포구 | 영업장(놀숲)에 설치된 구조물이 건축법이나 소방안전 저촉 여부 | 상·하 2칸[높이:약1.2(소)~2m(대)]을 만들어 2~3인 정도가 만화를 보는 구조로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학생용 책상(외)과 책상(아래) 겸용인 가구형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무단증축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
| 서울 강남구 | 만화방내 책 읽는 등 오락을 목적으로 일부를 구획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공간이 책을 읽는 등의 주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으로 구획되는 경우라면 거실로 볼 수 있음.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함 |
| 서울 서대문구 | -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또는 제14조(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위반(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되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하오니 기한 내 정비바람 |
| 서울 서초구 | - |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 납부바람 |
| 창원시 마산합포구 | - | 영업장내 복층 구조 시설물의 경우 공간높이 1.1m로 독립된 거실로 보기 어려우며 영업장내 인테리어시설인 경우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님 |
| 서산시 | - | 만화카페(보물섬) 복층구조물들은 건축물 형태가 아닌 단순한 가구형태의 인테리어 시설물로 판단되어 건축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
| 논산시 | 만화복카페(만화와 추억)내의 복층구조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 여부 | 현지 조사한 바 건축물 형태가 아닌 단순한 가구 형태의 인테리어 시설물로 판단되어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
| 동두천시 | 지행동 718-4번지 3층 만화카페의 복층의 불법사항 여부 | 현장확인 결과 건축법 제2조 제1항 6호에서 정의한 거실의 용도로 볼 수 없음 |
| 국토교통부 | 실내에 높이 1.2m 이내인 복층형태의 인테리어 공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인지 | 거실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다락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아울러, 실내 인테리어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팀 내부자료 정리>

□ 실내 공간 변화에 따른 안전 이슈

- 공간트렌드 변화를 대변하는 만화카페, 키즈카페 등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설치물의 형태에 대한 제품 성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화재 및 생활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 우려
- 이러한 시설의 경우 연소가 쉬운 종이(만화책 등), 목재, 플라스틱, 패브릭 종류를 많이 이용하며, 따라서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연기, 유독가스를 방출할 수 있어 이용자 안전에 취약
- 특히 이들은 대부분 건축물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어 수직 대피 동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또한 기존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거실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재실자 밀도가 높아져 기존 피난통로 및 피난기구 등 위급 시 대피시설이 계획용량에 맞게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제3장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

1. 건축물 실내 공간의 안전 문제
 2.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3. 국내의 건축물 피난안전 규정
-

1. 건축물 실내 공간의 안전 문제

□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사고 유형

- 건축물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크게 생활안전과 화재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생활안전사고는 건축물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미끄러짐, 추락·낙상 등으로, 일반적으로 내·외부 공간 구조 및 설치물 불량, 부적절한 마감재료 등으로 인해 발생함
 - 화재사고는 대체로 자연발화나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며 화재로 인한 연소 확대 여부에 의해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가 결정됨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의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실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건축물 용도는 주로 주택, 학교, 대형 유통시설, 실내골프연습장, PC방, 공중목욕장, 실내놀이터, 노인요양시설, 영유아보육시설로 나타남²⁵⁾

25) 김은희 외(2014),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0

1) 생활안전사고 발생장소 및 원인

- 2000년 이후 실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된 주요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 건축물의 업소 용도는 노래주점, 오피스텔, 나이트클럽, 체육관, 학원, 음식점 등으로 나타남²⁶⁾
- 실내 안전사고는 건축물 용도 및 건축물 내부공간인 실(室)의 종류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 분석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에 근거한 안전사고 발생 공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²⁷⁾
 - 건축물 주용도로 이용하는 공간: 거실, 출입구, 계단, 복도
 - 건축물 내·외부 매개를 위한 공간: 베란다, 발코니
 - 물을 사용하는 공간: 화장실 및 욕실
 - 화기 또는 관련 설비 사용 공간: 주방, 보일러실, 세탁실 등

[표 3-1] 건축물 용도별 안전사고 발생공간

| 구분 | | 실내공간 | | | | | | | 마감부분 | | |
|------|---------|------|-----|----|----|-----|-----|----|------|-----|----|
| | | 거실 | 출입구 | 계단 | 복도 | 베란다 | 화장실 | 주방 | 마감재료 | 감시물 | 기타 |
| 주거 | 주택 | 0 | 0 | 0 | - | 0 | 0 | 0 | 0 | 0 | 0 |
| 교육연구 | 학교 | 0 | 0 | 0 | 0 | - | 0 | 0 | 0 | 0 | 0 |
| 판매 | 대형유통시설 | - | 0 | 0 | - | - | - | 0 | 0 | 0 | 0 |
| 운동 | 실내골프연습장 | - | - | - | 0 | - | - | - | 0 | - | - |
| 근린생활 | pc방 | 0 | - | 0 | - | - | - | - | - | 0 | - |
| | 공중목욕탕 | - | 0 | 0 | - | - | 0 | 0 | 0 | 0 | - |
| | 실내놀이터 | - | 0 | 0 | - | - | - | - | - | 0 | 0 |
| 노유자 | 노인요양시설 | 0 | 0 | 0 | 0 | 0 | 0 | - | 0 | 0 | 0 |
| | 영유아보육시설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출처: 김은희 외(2014),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5〉

26) 전계서, pp.21-29

27) 상계서, pp.21-29

□ 근린생활시설

- 다중의 이용이 가장 많은 시설 중 하나인 근린생활시설 안전사고는 PC방, 찜질방,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속 발생
 - 소방방재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접수된 PC방 관련 화재사고 129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²⁸⁾
 - PC방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은 위급상황 발생 시 외부 탈출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소화기 등 기타 소방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여 적시 활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충전이 되지 않아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음²⁹⁾

□ 노인관련 시설

-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노인의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건수현황을 짚어보면, 2013년 3,831건, 2014년 4,453건, 2015년 5,111건으로 매년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표 3-2] 고령자 안전사고 접수 현황

| 구분 | 2013 | 2014 | 2015 | 평균 |
|----|-------|-------|-------|-------|
| 건수 | 3,831 | 4,453 | 5,111 | 4,465 |

(출처 : 한국소비자원(2016), 고령자 추락·낙상사고 위해사례 동향 분석, p.1)

- 이 중 생활안전사고는 ‘넘어짐·미끄러짐’이 4,829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넘어짐·미끄러짐, 추락·낙상사고의 비율이 높아짐
- 실내 공간별로는 거실, 화장실, 출입구·계단·복도의 순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며³⁰⁾ 미끄러운 바닥마감재 사용, 부적절한 공간구조계획이 주요 원인이 됨

□ 영유아 관련 시설

- 일반적으로 영유아 관련 시설의 안전사고는 넘어짐, 부딪힘 사고이며, 키즈

28) 김혜진(2010), PC 방 안전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p.2

29) 상계서, p.42

30) 박범규(2011), 노인요양시설 안전실태 조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p.9

카페 등 실내 놀이터의 경우 넘어짐, 추락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함

[표 3-3] 실내놀이터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 안전사고 유형 | 년도 | 건수 |
|-----------------|------|----|
| 놀이기구에서 추락 | 1999 | 5 |
| 바닥에 미끄러짐 | 2000 | 10 |
|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골절상 | 2001 | 27 |
| 시설물에 부딪혀 열상 | 2003 | 21 |
|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면서 충돌 | 2004 | 39 |
| | 2005 | 16 |

<출처: 김대중(2001), 실내 놀이터 안전실태 조사 결과; 다중이용시설내 설치된 유료 실내놀이터 중심, 한국소비자원 / 박범규(2005), 대형 유통매장내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 특히 키즈카페 등 실내놀이터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 위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입점 시설의 건축환경이 제각기 달라 보편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화재사고 발생장소 및 원인

□ 화재 발생 건수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간 화재발생 건수 평균 40,000건 중 25,000건 이상 (60%이상)이 건축물에서 발생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화재발생 건수는 44,435건이고 사망자수는 253명, 재산피해액은 4,420억원에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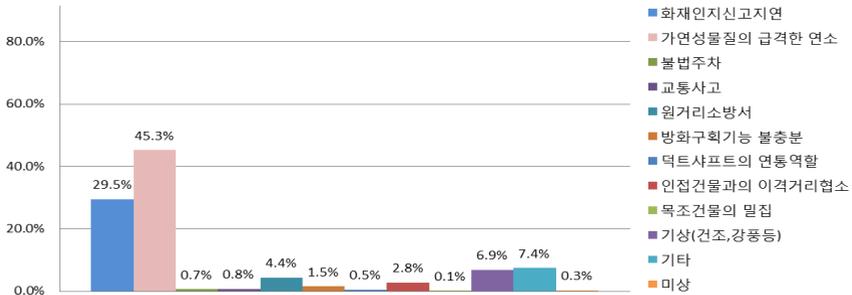
[표 3-4] 연간 전체 화재발생 건수 및 건축물 화재 건수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전체(건) | 49631 | 47318 | 41863 | 43875 | 43249 | 40932 | 42135 | 44435 | 43413 | 43178 |
| 건축물(건) | 29,926 | 28,389 | 26,904 | 27,033 | 26,657 | 25,662 | 25,822 | 26,303 | 27,208 | 26,714 |
| 비율(%) | 60.30 | 60.00 | 64.27 | 61.61 | 61.64 | 62.69 | 61.28 | 59.19 | 62.67 | 61.87 |

<출처: 김대중(2001), 실내 놀이터 안전실태 조사 결과; 다중이용시설내 설치된 유료 실내놀이터 중심, 한국소비자원 / 박범규(2005), 대형 유통매장내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 화재 발생 장소

- 2015년 기준,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는 비주거 시설 14,712건(33.1%), 주거 시설 11,860건(26.1%)으로 나타남
 - 이 중 비주거(14,712건)시설은 음식점이 2,701건(18.4%)으로 가장 많고, 공장 시설 2,447건(16.6%), 생활서비스 1,152건(7.8%), 창고시설 1,136건(7.7%), 판매시설 904건(6.1%), 업무시설 888건(6.0%), 동식물시설 867건(5.9%)의 순으로 발생



[그림 3-1] 화재확대 사유

〈출처: 국민안전처(2015), 2015 화재발생현황분석, p.8 내용참조 작성〉

[표 3-5] 우리나라 연도별 화재발생 추이

(단위: 건수/%)

| 구분(건) | 계 | 주거 | 비주거 | 차량 | 위험물 가스제조 소등 | 철도선박 항공기등 | 임야 | 기타 |
|-------|----------|--------|--------|-------|-------------------|--------------|-------|-------|
| 2015년 | 44,432 | 11,587 | 14,712 | 5,028 | 26 | 120 | 3,341 | 9,618 |
| 2014년 | 42,135 | 10,860 | 14,961 | 4,823 | 22 | 111 | 2,921 | 8,437 |
| 전년 대비 | 건수 2,297 | 727 | -249 | 205 | 4 | 9 | 420 | 1,181 |
| | 증감 5.5 | 6.7 | -1.7 | 4.3 | 18.2 | 8.1 | 14.4 | 14.0 |

〈출처: 국민안전처(2015), 2015 화재발생현황분석, p.4〉

- 2017년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237건(39%)로 가장 많고, 노래연습장이 97건(16%),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97건(16%), 고시원 47건(7.7%)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시설의 일반적인 내부공간 특징은, 하나의 건물에 다양한 업종이 복합되어 있다는 점과 다양한 재료의 내부칸막이 설치를 통한 세부 실을 구획한다는 것으로, 화재발생 시 피난 및 마감재료의 가소성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결정됨³¹⁾

□ 화재 발생 원인³²⁾

- 화재사고는 일반적으로 전기적 원인, 사용자 부주의, 기계 과열, 방화 등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지만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은 시설의 물리적·기계적 구축환경에 의한 연소 확대 여부에 따라 결정
- 특히 신체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등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여부가 중요
-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 대형 화재사고의 피해 확대 원인은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 스프링클러 미설치, 피난통로 차단, 유독가스 유발 마감재 및 물건의 적치 등이 지목됨

[표 3-6] 다중이용시설 업종 별 화재발생 원인

(단위 : 건수)

| 업소별(1) | 계 | 전 기 적 | 기 계 적 | 화 학 적 | 가 스 누 출 | 교 통 사 고 | 부 주 의 | 기 타 | 자 연 적 | 방 화 | 방 화 의 심 | 미 상 |
|------------------------|-----|-------------|-------------|-------------|------------------|------------------|-------------|--------|-------------|--------|------------------|--------|
| 합계 | 607 | 246 | 35 | 4 | 4 | 0 | 268 | 2 | 0 | 4 | 5 | 39 |
| 일반음식점 | 215 | 52 | 10 | 4 | 3 | 0 | 129 | 1 | 0 | 0 | 1 | 15 |
| 휴게음식점 | 22 | 8 | 3 | 0 | 0 | 0 | 10 | 0 | 0 | 0 | 0 | 1 |
| 단란주점 | 31 | 18 | 3 | 0 | 0 | 0 | 7 | 0 | 0 | 0 | 0 | 3 |
| 유흥주점 | 66 | 34 | 3 | 0 | 1 | 0 | 20 | 0 | 0 | 2 | 0 | 6 |
| 비디오감상 실, 비디 오소극장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게임제공업 | 23 | 8 | 0 | 0 | 0 | 0 | 15 | 0 | 0 | 0 | 0 | 0 |
| 노래연습장 업 | 97 | 75 | 8 | 0 | 0 | 0 | 7 | 0 | 0 | 2 | 2 | 3 |
| 복합유통제 공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제과점 | 1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 목욕탕 (찜질방) | 19 | 3 | 2 | 0 | 0 | 0 | 12 | 0 | 0 | 0 | 0 | 2 |
| 산후 조리원 | 1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안마 시술소 | 3 | 1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 |

31) 전계서, p.20

32) 김은희 외(2016),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3~19

| | | | | | | | | | | | | | |
|---------------|----|----|---|---|---|---|---|----|---|---|---|---|---|
| 영화영상관 (극장) | 3 | 2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 복합영상물 제공업 | 1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스크린골프 연습장 | 1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 학원 | 4 | 3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 고시원 | 47 | 7 | 1 | 0 | 0 | 0 | 0 | 36 | 0 | 0 | 0 | 0 | 3 |
| 화상대화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화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클라텍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수면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실내사격장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 | 72 | 35 | 3 | 0 | 0 | 0 | 0 | 27 | 1 | 0 | 0 | 2 | 4 |

<출처: 통계청, <http://kosis.kr>. 검색일자: 2019.04.12.>

2.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

□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률 종류

- 건축물 실내공간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은 건축, 공간복지, 소방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음
- 건축물 건축과 유지관리 관련 법령 : 「건축법」, 「건축물관리법(2020.5.1. 시행)」
 - 「건축법」에서는 사용자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각종 설비 기준을 제시하며, 실내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실내공간에서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
 -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복지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
 -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 「주거약자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필요한 편의시설 기준을 규정
-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등 소방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소방대상물에 관한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
 - 「다중이용업소법」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표 3-7]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 관련 법제도와 주요내용

| 구분 | 법제도 | 주요내용 |
|------|--|---|
| 건축 | 「건축법」 | - 사용자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각종 설비 기준 - 실내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실내공간에서 생활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준 |
| | 「건축물관리법」 (2020.5.1. 시행) | - 건축물의 안전과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기준 |
| 공간복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 편의법) | - 사회적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기준 |
|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법) | -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기준 |
| 소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 - 화재와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기준 -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기준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법) | -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업소의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 관련 법률 규정 유형 분류

-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규정은 내용 및 적용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내용에 따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 화재예방 및 피난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구분
 - 또한 해당 기준의 적용 시점에 따라 계획단계에 적용되는 기준과 건축물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구분
- 이 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준은 적용시점별로 생활안전사고 방지와 사회적 약자의 공간 사용 편의 확보에 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계획단계 1: 「건축법」의 넘어짐·미끄러짐·추락·충돌 등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마감재료 및 실내건축 기준
 - 계획단계2: 「장애인등편의법」과 「주거약자법」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

설 설치기준

- 유지관리단계: 「건축법」의 건축물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기준
- 화재 및 피난 안전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 방지와 재난 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환경을 갖추기 위한 규정
 - 계획단계: 「건축법」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물 구조·재료·설비 기준
 - 계획·유지관리 단계: 「소방시설법」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설계기준 및 소방시설 설치 기준
 - 유지관리단계: 「다중이용업소법」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

[표 3- 8]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 관련 규정의 유형 분류

| 구분 |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 화재 및 피난 안전 확보 | |
|----------|----------------------------|-------------|-------------|------------------|----------------|
| | | 계획 | 유지관리 | 계획 | 유지관리 |
| 건축 | 「건축법」 | 마감재료, 실내건축 | 실내건축 검사 | 피난시설 | - |
| | 「건축물관리법」 (2020.5.1. 시행) | - | 건축물 유지관리 | | 건축물 유지관리 |
| 공간 복지 | 「장애인 등 편의법」 | 장애인등 편의시설 | - | - | - |
| | 「주거약자법」 | 주거약자 편의시설 | - | - | - |
| 소방 | 「소방시설법」 | - | - | 화재안전설계 성능위주설계 | 소방시설 유지관리 |
| | 「다중이용업소법」 | - | - |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규정

- 건축물의 실내공간은 안전한 생활환경으로서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건축법」의 마감재료 및 실내건축에 대한 기준과 「장애인편의법」, 「주거약자법」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운영되고 있음

[표 3-9]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기준

| 구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건축 마감 | 「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 재료) | | |
| | | 제52조의2(실내건축) 제1항 내지 2항 | 제61조의2(실내 건축) | 제26조의5(실내건축 의 구조·시공방법 등 의 기준) |
| 편의 시설 | 「장애인등 편의법」 | 제8조(편의시설의 설 치기준) | 제4조(편의시설 의 종류) | 제2조(편의시설의 세 부기준) 제3조(안내표시기준) |
| | | 「주거 약자법」 | 제9조(주거약자용 주 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 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 제4조(주거약자 용 주택의 편의시 설 설치기준)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유지관리기준으로는 「건축법」의 실내건축 검사, 「건축물 관리법」의 건축물 유지관리기준이 있음

[표 3-10]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기준

| 구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실내건축 검사 | 「건축법」 | 제52조의2(실내건축) 제3항 | | |
| 유지 관리 | 「건축물 관리법」 |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 | |

* 「건축물 관리법」은 2020년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계획기준1: 생활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 마감

- 「건축법」 제52조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실내 바닥 마감재료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에 설치하는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미제 정상태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52조의2는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게 되는 다중이용건축물³³⁾, 분

양 건축물³⁴⁾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내건축 마감 기준을 제시함

-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건축물의 실내건축은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으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 마감재료, 층돌·끼임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완충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령에서 고시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기준' 은 생활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마감재, 안전난간, 완충재료, 실내출입문, 거실 내부 칸막이벽 기준을 제시함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배수(排水)·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층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 3-1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생활안전 관련 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
| 바닥마감재 | 공용부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이며 화장실, 욕실, 샤워실 등 물쓰는 공간의 미끄럼 방지 기준 |
| 안전난간 | 공용계단, 공용 복도에서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기준 |
| 완충재료 | 실내공간 층돌사고 방지를 위한 완충재 설치, 안전유리 설치 기준 |
| 실내 출입문 |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에 손끼임방지장치 설치 |
| 거실 내부 칸막이벽 | 유효폭 120cm 적용, 유리벽은 안전유리 사용 |

〈출처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해당내용 발췌·정리〉

33)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3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3,000㎡ 이상인 건축물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실 이상 또는 업무시설 바닥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여 건축설계 시 반영할 것을 권장함
 - 미끄럼, 추락, 충돌, 끼임, 기타 사고 등 건축물 실내 안전사고 유형별로 실내건축 안전기준 제시

[표 3-12]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중 '실내건축 안전기준'

| 사고유형 | 실내건축 안전기준 |
|------|--|
| 미끄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이하 “미끄럼 저항성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유자시설의 화장실 및 욕실과 물놀이시설의 거실(수영조 및 수영조 주변 공간), 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하는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층고 2.1m 이상인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유자시설의 진입부,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 층고 2.1m 이상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긴급 피난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색상(밝은 색상, 형광색 등)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
| 추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노유자 시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난간의 간살은 세로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의 발코니, 추락의 위험이 있는 노대 등과 비슷한 구조의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 간살의 방향은 세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유자시설의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의 난간에는 노유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의 기계장치는 진입부 바닥 및 경사로 바닥에 명확한 안전 경고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충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시 유리문에 충돌되지 않도록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공용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두께의 완충재를 15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어린이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두께의 충격완충재 설치를 권장하며, 그 밖에 놀이터 관련 시설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중 놀이터 기준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 |

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 골프연습장의 타석은 칸막이를 제외한 유효너비 2.5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골프연습장 벽면에는 메모리폼 또는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끼임

-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세대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세대 내부에서 갑작스런 문의 닫힘으로 인해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 닫힘 방지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동주택 외부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교육연구시설의 양여달이 유리문과 판매시설의 매장 출입 유리문은 문짝이 맞닿는 양쪽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시설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문은 갑자기 닫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가락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문닫힘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물놀이시설 수조의 급배수압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배수구 개수를 늘리고 최대한 분산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물놀이시설 급배수구 주변에 이용자의 주의를 요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물놀이시설의 배수로 커버는 보행하중에도 변형이 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넘어짐

- 주택 및 노유자 시설의 거실 출입문은 특별한 용도의 실을 제외하고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튼(블라인드)은 줄에 의한 감김이나 질식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줄이 없는 전자동식이나 수동식 제품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튼(블라인드)에 줄이 있는 경우에는 커튼(블라인드) 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 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을 위한 통로의 유효너비는 120c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거실에 설치되는 피난 통로의 칸막이벽의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중 해당내용 발췌·정리>

□ 계획기준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

-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시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함
 -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접근로, 통행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

[표 3-13] 장애인등의 사용편의를 위한 시설 기준

| | |
|------|--|
| 구분 | 편의시설 |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 내부시설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 위생시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 기타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출처: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 3-14]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편의시설 기준 적용대상

| 구분 | 세부용도 | 규모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300~1,000㎡ |
|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 500㎡ 이상 |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 1,000㎡미만 |
| |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300㎡ 이상 |
| | 공연장 | 300~500㎡ |
| | 안마시술소 | 500㎡ 이상 |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 500㎡ 이상 |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 500㎡ 이상 |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1,000㎡ 이상 |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 |
| 교육연구시설 | 학교 | - |
| | 교육원 | 50㎡ 이상 |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 |
| 운동시설 | 체육관, 운동장 | - |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 - |
|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500㎡ 이상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및 지사 | 1,000㎡ 이상 |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객실 30개 이상), | - |
| | 관광숙박시설 | |
| 공장 | | - |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운전학원 | - |

| | | |
|--------|--------------------------|----------------------|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 - |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 | 1,000㎡ 이상 |
|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 - |
|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휴게소 | 1,000㎡ 이상 300㎡ 이상 |
| 장례식장 | - | 500㎡ 이상 |

〈출처: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용 주택 사용안전을 위한 편의시설 기준을 규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해당 주택에 필요한 편의시설 기준을 정함³⁵⁾
 - 주거약자 임대 목적으로 건설 또는 개조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함
 - 주거약자용 주택의 출입문 폭, 출입문 손잡이, 바닥 재료 및 높낮이차, 비상연락장치, 현관 조명·난간·경사로 기준, 거실 조도, 주방 가구, 욕실 구성에 대한 기준 제시

[표 3-15]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 구분 | 설치기준 |
|---------|--|
| 출입문 | 유효너비 85cm(욕실 80cm), 출입문 옆 여유공간 60cm |
|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손잡이 등 조작이 쉬운 것 |
| 바닥 | 미끄럼방지 마감재, 바닥 높낮이차 없는 것이 원칙 |
| 비상연락장치 | 거실, 욕실, 침실에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 설치 |
| 현관 | 동작감지센서 등, 수직·수평손잡이,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
| 거실 | 비디오폰 설치, 조도 600~900lux, 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인 경우) |
| 부엌 | 좌식싱크대(지체장애인 또는 휠체어사용자) |
| 욕실 | 동작감지센서 등, 욕조 높이 45센티미터 이하, 상하이동샤워기, 안전손잡이 (지체장애인 또는 휠체어사용자)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변기 옆 75센티미터 여유공간 확보 |

〈출처: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요약 정리〉

3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유지관리기준1 ; 실내건축 검사

- 「건축법」 제52조의2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조례를 통해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검사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분양건축물로 동일하나 지자체 별로 검사시점 및 검사주기에 차이를 보임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25조의3(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61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매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34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4년으로 한다.

여주시 건축조례

제28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현장조사업무 대행자인 건축사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 유지관리기준2: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법」 중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제정(2019.4.30.)되었으며 2020년 5월 시행 예정
- 「건축물관리법」제12조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된 안전기준이 준공 후에도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함
 - 건축물 실내공간을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법 제50조의 건축물 마감재료 및 제52조의2 실내건축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화재 및 피난 안전 확보 규정

- 건축물의 실내공간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유지관리기준을 제시함
 - 계획기준으로 건축물 마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시설, 준소방시설,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있음

[표 3-16] 화재 및 피난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기준

| 구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내부 구조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 | |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 | 제52조의2(실내건축) | 제61조의2(실내건축) |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 실내 마감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 | 소방시설법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방염성능기준 |
| 다중이용업소 | 제10조(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 | | |
| |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 |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 화재 안전 설계 |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
| | |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
| 안전 시설 |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제9조(안전시설등) |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유지관리기준으로 건축물의 화재안전 유지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관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관리 기준이 있음

[표 3-17] 화재 및 피난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기준

| 구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 건축물 안전관리 | 건축물 관리법 |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 | | |
| | |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 | |
| 소방시설 관리 | 소방시설법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 |
| |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
| |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22조(소방안전관리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20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
| | |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 |
| |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 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
| 안전시설 관리 | 다중이용업소법 | 제8조(소방안전교육) | |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
| | |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제9조(안전시설등)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
| | |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 |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 |
| | | 제11조(피난시설, 방 | | | |

| | |
|---------------------------------|---|
| 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
|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

* 「건축물 관리법」은 2020년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계획기준1: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내부구조

- 「건축법」 제49조는 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물이 갖춰야하는 피난시설 등에 관한 규정으로 화재 시 사용자 안전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부구조가 갖춰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명시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도록 함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표 3-18] 방화구획 설치기준

| 구분 | 방화구획 기준 |
|--------|---|
| 10층 이하 | 바닥면적 1,000㎡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시 3,000㎡) 마다 구획 3층이상,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
| 11층 이상 | 바닥면적 200㎡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시 600㎡), 실내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는 경우 5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1,500㎡) 마다 구획 |

(출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 47조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특정 용도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³⁶⁾를 내화구조³⁷⁾로 하여 화재 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시행규칙 14조의2는 건축물의 방화와 사용자 안전을 위해서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 산후조리원 등은 해당 건축물에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 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동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36)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벽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함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7호)

37)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7호)

- 「건축법」 제52조의2는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게 되는 다중이용건축물³⁸⁾, 분양 건축물³⁹⁾을 대상으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실내건축 마감 기준을 제시함
 -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으로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칸막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실내마감재·난간·창호·출입문 기준을 제시함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배수(排水)·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토교통부령에서 고시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기준’은 화재 및 피난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마감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난 유도설비는 「소방시설법」, 「장애인편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계획하도록 함

[표 3-19]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화재안전 관련 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
| 불연재료 사용 | 거실의 벽, 반자 등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피난규칙 제24조 준수 |
| 피난 유도설비 | 소방시설법, 장애인편의법 준수 |

〈출처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1조〉

38)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39)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실 이상 또는 업무시설 바닥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계획기준2: 방화를 고려한 실내마감

- 「건축법」에서는 방화를 고려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을 규정
 -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거실 내부에 접하는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소방시설법」은 화재 예방 및 지연을 위해 실내장식물의 방염성능을 규정
 -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방염대상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소방시설법」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설치 기준을 규정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을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대신하여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하며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 속)까지 구획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동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 계획기준3: 화재안전설계

- 「소방시설법」제9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분류와 같이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
 -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정함
 - 화재안전기준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방재안전 관련 기준으로 구성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표 3-20] 화재안전기준(NFSC)

| 구분 | 기준 | 코드 |
|--------|------------------------|----------|
| 소화설비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NFSC101 |
| | 옥내소화전설비 | NFSC102 |
| | 스프링클러설비 | NFSC103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NFSC103A |
|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NFSC103B |
| | 물분무소화설비 | NFSC104 |
| | 미분무소화설비 | NFSC104A |
| | 포소화설비 | NFSC105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NFSC106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NFSC107 |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NFSC107A |
| | 분말소화설비 | NFSC108 |
| | 옥외소화전설비 | NFSC109 |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NFSC501 |
|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NFSC501A |
| | 연결송수관설비 | NFSC502 |

| | | |
|--------|-----------------|---------|
| | 연결살수설비 | NFSC503 |
| | 비상콘센트설비 | NFSC504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NFSC505 |
| | 연소방지설비 | NFSC506 |
|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 NFSC201 |
| | 비상방송설비 | NFSC202 |
| |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 NFSC203 |
| | 자동화재속보설비 | NFSC204 |
| | 누전경보기 | NFSC205 |
| 피난설비 | 피난기구 | NFSC301 |
| | 인명구조기구 | NFSC302 |
| | 유도등·유도표지 | NFSC303 |
| | 비상조명등 | NFSC304 |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NFSC401 |
| | 소화수조·저수조 | NFSC402 |
| 방재안전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 | NFSC602 |
| | 도로터널 | NFSC603 |
| | 고층건축물 | NFSC604 |
| | 임시소방시설 | NFSC605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법」 제9조의3은 초고층 등 특수한 건축물의 신축 증가, 화재방어 및 피난시스템 등 최첨단 신기술 개발에 따라 특수한 건축물에 적합한 소방시스템 구현을 위해 성능위주설계 기준 마련
 - ‘성능위주설계’란 「소방시설법」과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여 설계를 말하며, 이 경우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⁴⁰⁾
 - 특수한 건축물에 대해 소방설계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화재안전성능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소방시설법」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방시설법」 제9조의3에 따라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을 고시하여 성능위주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0)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 제2조(성능위주설계 정의)

-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경우 건축심의 전 사전검토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소방시장에게 신고하여 성능위주설계의 화재 및 피난안전정능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함

[표 3-21]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 구분 | 절차 | 주요내용 |
|--------------|--------------------|--|
|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 건축심의 신청 전 사전 검토 수행 | 피난계획, 소방시설 설치계획,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 건축허가 신청 전 소방서장에 신고 |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소방시설 계획 및 부하·용량계산서, 성능위주설계 설명서 등 |
| 성능위주설계의 심의 | 성능위주설계 신고내용 심의 |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검증, 심의 결정 성능위주설계의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 평가 |

<출처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1조>

□ 계획기준4: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 다양한 종류, 대형화 및 집적화 등 건축물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 운영됨
 -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1항 1호 정의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따른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으로 바닥면적 100㎡(지하 66㎡) 이상,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설소 등
 -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는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시설 설치 전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숙박을 제공하거나 밀폐구조인 다중이용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획 변경 시 해당 사항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소방시설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비상통로 등에 해당

【표 3-2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 구분 | 안전시설 | 비고 | |
|---------------------------------|-----------|---|-----------------------|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 밀폐구조, 산후조리원, 고시원 |
|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 |
| | 피난설비 | 피난기구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
| | | 피난유도선 |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 |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 | | |
| 비상구 | | | |
| 내부 피난통로 | |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 | |
| 기타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 | |
| | 누전차단기 | | |
| | 창문 | 고시원 영업장 | |

〈출처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를 정리〉

□ 유지관리 기준 1: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물관리법」제12조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된 화재 및 피난 안전 기준이 준공 후에도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하고 조치하도록 규정함
 - 건축물의 화재 및 피난안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법」 제50조의 건축물 마감재료 및 제52조의2 실내건축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표 3-23]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실내공간 화재 및 피난안전 관련 기준

| 구분 | | 주요내용 |
|--------|------------------|---|
| 제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내부구조 |
| 제52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
| 제52조의2 | 실내건축 | 피난에 지장이 없는 칸막이, 난간, 창호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피난유도설비 |

<출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화재 및 피난 안전 기준을 발췌하여 정리>

- 「건축물관리법」제27조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다음 용도의 3층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함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

□ 유지관리 기준 2: 소방시설 관리

-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각종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함(법 제9조)

-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방화시설을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함(법 제10조)
-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소방계획 수립,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법 제20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함(법 제21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대행으로 정기 점검하여야 함(법 제25조)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후략.>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유지관리 기준 3: 안전시설 관리

-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업주와 종업원 등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법 제8조)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법 제9조), 안전시설 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함(법 제9조의2)
 -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방화시설을 「소방시설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함(법 제11조)

-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을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함
(법 제13조)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내외 건축물 피난안전 규정

1) 국내 피난안전 관련 규정

① 피난공간 및 시설물 관련 규정

- 국내 피난안전 규정은 건축 관련 법령과 소방 및 재난 관련 법령을 통해 운영
 - 「건축법」은 건축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재실자의 안전을 위한 피난 및 방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함
 -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화재안전 설계기준을 제시
 - 2012년 제정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을 제시

[표 3-24] 국내 피난안전 규정 개요

| 법령 | 주요내용 |
|---|--------------------------------|
| 「건축법」 | 안전한 피난을 위한 피난시설 기준 |
|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안전 설계기준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건축법」의 피난공간 구조

- 건축물의 재실자가 피난층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통로, 계단 등의 피난 경로와 대피 공간 확보에 관련된 사항
 - 「건축법」제 49조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 피난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
 - 또한 고층건축물 화재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2011년 「건축법」 제50조의2를 신설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해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이 확보된 계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

※ ‘고층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 건축물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 3-25] 「건축법」의 피난안전시설 설치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피난설계기준 | 관계법령 |
|-------------------------|--|-------------------------------|--------------------------------------|
| 직통계단 | 거실 각 부분에서 계단까지의 거리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층수, 바닥 면적)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34조 피난규칙 제8조 |
| 피난계단 |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층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계단 설치 기준 | 건축물의 규모(층 수)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35조 피난규칙 제9조 |
| 특별피난계단 |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 지하3층 이 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계단 설치 기준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층수, 바닥 면적)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35조 피난규칙 제9조 |
| 옥외피난계단 | 건축물 3층 이상의 공연장 등 300㎡ 이상, 집회시 설 1,000㎡이상 설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층수, 바닥 면적)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36조 |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 바닥면적 3,000㎡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이 지하에 있는 경우 설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바닥면적)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37조 |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 바닥면적 300㎡ 이상 관람실, 집회실로부터 출구 는 관람실별 2개 이상, 출구 유효너비 1.5미터 이 상 설치 등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바닥면적)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38조 피난규칙 제10조 |
| 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 |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까지의 보행거리, 출구 개수, 유효폭 등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바닥면적)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39조 피난규칙 제11조 |
| 옥상광장 | 5층 이상에 제2층 근린생활시설(300㎡ 이상의 공 연장·중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11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인 경우 설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층수, 바닥 면적)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40조 |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용 통로 |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 로를 설치하되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 물 또는 11층 이상 건축물은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 | 건축물 용도 및 규 모(층수, 바닥면 적)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41조 |
|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 | 피난안전구역 또는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 설치 | 건축물의 규모(층 수) | 건축법 제50조의2 시행령 제34조 피난규칙 제8조의2 |

<출처 : 건축법령 중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성능위주설계

- 건축물의 초고층화·지하화·복합화 추세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설계 시 성능위주설계 기준 도입
 - 2005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한 성능위주의 화재안전설계를 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법」의 수용인원에 대응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성능위주 설계

-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정함
 - 「소방시설법」 제9조의4,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규정함

「소방시설법」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위치,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설계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 제9조의3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높이 100미터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30층 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에 적용

「소방시설법」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초고층재난관리법」의 수용인원에 대응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성능위주 설계

- 초고층 건축물에 재산 발생 시 재실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함
 - ‘초고층건축물’이란 동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실자 밀도 기준

- 재실자 밀도 관련 규정은 개별법에 산재하고 법령마다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수치의 재실자 밀도계수를 정하고 있는 실정⁴¹⁾
- 「건축법」의 피난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출을 위해 재실자 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소방 및 재난 관련 법령에서는 「소방시설법」의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수용인

41) 박수로·황은경, ‘국내의 재실자 밀도 기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4 No.3(2014), p.254

원 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위한 거주밀도 기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및 기준'의 재실자 밀도에 따른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있음

- '건축물·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⁴²⁾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을 위해 건축물 사용형태별 공간용도에 따른 재실자 밀도 제시
 - 공간용도는 건축물 용도를 혼용하여 사용,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용도에 대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별도로 명시⁴³⁾

[표 3-26] 「건축법」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 용도별 재실자 밀도 기준

| 구분 | 사용형태별 | 재실자 밀도(인/㎡) | |
|-------|----------------------|-------------|------|
| 문화·집회 | 고정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 | 0.45 | |
| | 고정좌석이 아닌 의자를 사용하는 공간 | 1.29 | |
| |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 | |
| |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 | |
| | 무대 | 1.40 | |
| 운동 | 게임제공업 등의 공간 | 1.02 | |
| | 운동시설 | 4.60 | |
| 교육 | 도서관 | 서고 | 9.30 |
| | | 열람실 | 4.60 |
| | 학교 및 학원 | 교실 | 1.90 |
| 보육 | 보호시설 | 3.30 | |
| 의료 | 입원치료구역 | 22.3 | |
| | 수면구역 | 11.1 | |
| 교정 |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 등 | 11.1 | |
| 주거 | 호텔 등 숙박시설 | 18.6 | |
| | 공동주택 | 18.6 | |
| 업무 | 업무시설, 운수시설 및 관련 시설 | 9.30 | |
| | 지하층 및 1층 | 2.80 | |
| 판매 | 그 외의 층 | 5.60 | |
| | 배송공간 | 27.9 | |
| 저장 |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 46.5 | |
| 산업 | 공장 | 9.30 | |
| | 제조업 시설 | 18.6 | |

(출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중 해당내용 발췌 정리)

42)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3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43) 박수로·황은경, 전개논문, p.255

- 「소방시설법」중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수용인원 산정기준⁴⁴⁾
 -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은 수용인원에 따라 산출하게 됨
 - 근린생활시설의 수용인원은 전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산출하며, 수용인원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개별 근린생활시설 면적에 영향을 받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가 해당됨

[표 3-27] 「소방시설법」 설치기준 : 수용인원 산정방법

| 용도 | 수용인원 |
|-----------------------------|-----------------|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시설 종사자 +침대개수 |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시설 종사자 +바닥면적/3㎡ |
| 강의실 · 교무실 · 상담실 · 실습실 · 휴게실 | 바닥면적/1.9㎡ |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4.6㎡ |
| 기타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3㎡ |

〈출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의 해당내용 발췌 정리〉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사용형태별 공간용도의 거주밀도⁴⁵⁾
 - 초고층 건축물 등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위해 건축물 용도별·사용형태별 거주밀도를 정함

[표 3-28] 「초고층재난관리법」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 용도별 거주밀도

| 건축용도 | 사용형태별 | 거주밀도 (명/㎡) | 비고 |
|----------|--------------------------------------|---------------|---------------------------------|
| 문화·집회 용도 | 가. 좌석이 있는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1.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
| | 1) 고정식 좌석 | n | 2.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
| | 2) 이동식 좌석 | 1.30 | 「건축법 시행령」 별 |

44)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45)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동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등)

| | | | |
|-------|--------------------------------------|------|---|
| | 3) 입석식 | 2.60 | 표 1 제4호마목의 공연장을 포함한다. 3. 극장·회의장·전시장에는 로비·홀·전실(前室)을 포함한다. |
| | 나. 좌석이 없는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80 | |
| | 다. 회의실 | 1.50 | |
| | 라. 무대 | 0.70 | |
| | 마. 게임제공업 | 1.00 | |
| | 바. 나이트클럽 | 1.70 | |
| | 사. 전시장(산업전시장) | 0.70 | |
| 상업 용도 | 가. 매장 | 0.50 | 연속식 점포: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포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 나. 연속식 점포 | | |
| | 1) 매장 | 0.50 | |
| | 2) 통로 | 0.25 | |
| | 다. 창고 및 배송공간 | 0.37 | |
| | 라. 음식점(레스토랑)·바·카페 | 1.00 | |
| 업무 용도 | 가. 사무실이 높이 60m 초과하는 부분에 위치 | 1.25 | |
| | 나. 사무실이 높이 60m 이하 부분에 위치 | 0.25 | |
| 주거 용도 | 가. 공동주택 | R+1 | R은 세대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
| | 나. 호텔 | 0.05 | |
| 교육 용도 | 가. 도서관 | | |
| | 1) 서고·통로 | 0.10 | |
| | 2) 열람실 | 0.21 | |
| | 나. 학교 | | |
| | 1) 교실 | 0.52 | |
| | 2) 그 밖의 시설 | 0.21 | |
| 운동 용도 | 운동시설 | 0.21 | |
| 의료 용도 | 가. 입원치료구역 | 0.04 | |
| | 나. 수면구역(숙소 등) | 0.09 | |
| 보육 용도 | 보호시설(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0.30 | |

비고: 둘 이상의 사용형태로 사용되는 층의 거주밀도는 사용형태별 거주밀도에 해당 사용형태의 면적이 해당 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출처: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거주밀도〉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및 기준’의 수용인원 산정기준⁴⁶⁾

- 「소방시설법」은 특수한 건축물에 적합한 소방시스템 구현을 위해 성능위주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높이 100미터 이상, 전체 층수 30층 이상 등 특수 건축물에 대해 법규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계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는 특수소방대상물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으로서 화재 및 피난 시 물레이션을 위한 공간용도별 수용인원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3-29] 화재 및 피난시물레이션을 시나리오 작성 시 수용인원 산출기준

| 구분 | 사용용도 | ㎡/인 |
|-------|------------------|---------------|
| 집회용도 | 고밀도지역(고정좌석 없음) | 0.65 |
| | 저밀도지역(고정좌석 없음) | 1.4 |
| | 벤치형 좌석 | 1인/좌석길이45.7cm |
| | 고정좌석 | 고정좌석 수 |
| | 취사장 | 9.3 |
| | 서가지역 | 9.3 |
| | 열람실 | 4.6 |
| | 수영장 | 4.6(물 표면) |
| | 수영장 데크 | 2.8 |
| | 헬스장 | 4.6 |
| | 운동실 | 1.4 |
| | 무대 | 1.4 |
| | 접근출입구, 좁은 통로, 회랑 | 9.3 |
| | 카지노 등 | 1 |
| 스케이트장 | 4.6 | |
| 교육용도 | 교실 | 1.9 |
| 상업용도 | 매점, 도서관, 작업실 | 4.6 |
| | 피난층 판매지역 | 2.8 |
| | 2층 이상 판매지역 | 3.7 |
| | 지하층 판매지역 | 2.8 |
| 보호용도 | | 3.3 |
| 의료용도 | 입원치료구역 | 22.3 |

46) 「소방시설법」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고시 제 2017-1호]

| | | |
|--------------|------------|---------|
| | 수면구역(구내숙소) | 11.1 |
| | 교정, 감호용도 | 11.1 |
| 주거용도 | 호텔, 기숙사 | 18.6 |
| | 아파트 | 18.6 |
| | 대형 숙박주거 | 18.6 |
| 공업용도 | 일반 및 고위험공업 | 9.3 |
| | 특수공업 | 수용인원 이상 |
| 업무용도 | | 9.3 |
| 창고용도(사업용도 외) | | 수용인원 이상 |

〈출처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별표1] 중 해당내용 발췌〉

2) 국외 피난안전 관련 규정 현황

□ 국외 피난규정의 현황과 특성

- 성능 중심의 피난안전설계기준으로 전환
 - 국외의 피난규정은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성능 중심의 피난안전설계기준으로 바뀌어가고 있음
 - 1990년대 전반에 영국(1985)이 「Housing and building control act」를 통해 최초로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가 도입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승인지침(Approved document)의 구체화되면서 성능 설계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변화가 일어남⁴⁷⁾
 - 성능위주설계는 피난 및 내화안전설계에 ‘성능개념(Performance Based Regulations)’을 도입하여 화재 시 건물의 형태, 재실자 밀도, 공간의 규모 및 가연물의 형태 등을 고려함
- 재실자 밀도 개념 적용
 - 화재 발생 시 재실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피난설계를 위해 재실자 밀도를 기준으로 피난용량을 산정
 - 국외의 건축물 피난규정은 정부와 화재안전관련 민간기관의 기술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용도 및 사용형태에 따라 재실자 밀도를 정하여

47) 서동구(2014), 성능위주 화재안전설계를 위한 설계화재, 재실자 밀도 및 스프링클러 액적의 설계인자 분석,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9-20

피난설계에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피난규정

- 미국의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건축 기준, 방화 및 피난 기준, 건축재료 등으로 구성되며 35개의 장 중 '제10 장 피난방법(Mesns of Egress)'에 피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피난규정은 재실자 밀도, 피난통로의 규격, 피난출구의 수, 복도·계단·램프의 구성, 피난유도사인, 난간 등 피난과 관련된 계획기준을 제시
 -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안전한 피난을 위한 요구사항이 각각 달라지므로 건축물의 용도, 재실자 밀도를 기준으로 피난설계가 이루어짐
- 건축물의 용도는 집회, 업무, 교육, 산업 등 10개의 용도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내에서 특성별로 다시 세분
 - IBC 제3장에서 건축물 용도분류와 기준을 언급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은 용도와 방화안전 및 상대적 위험성에 의한다고 명시함⁴⁸⁾
 - 각 용도분류는 용도별 특징, 사용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
- 사용형태별 공간용도에 따른 재실자 밀도 기준을 제시하며, 재실자 증가 시 건물 전체의 최대 수용인원을 제한⁴⁹⁾
 - 재실자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재실자 밀도를 토대로,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재실자 밀도로 나누어 수용인원을 산출하고, 그 수용인원에 따른 피난용량을 산정하여 각 건축물의 특성에 알맞은 피난규정을 적용

[표 3-30] IBC(Intrenational Building Code)의 '재실자 부하(Occupant Load)' 기준 주요내용

| 구분 | 재실자의 수 |
|----------|---|
| 재실자부하 설계 | 1. 누적 재실자 부하 : 대피 이동 경로가 사이 공간을 포함하는 경우의 누적 재실자 부하 <hr/> -사이 공간 또는 부속 영역 -재실자가 하나 이상의 방, 영역 또는 공간을 통해 다른 공간을 통해 빠져나가는 경우 설계 재실자 하중은 상호 연결된 부속물 또는 개입 공간의 결합 재실자 부하 - 대피 경로 용량 설계는 대피 이동 경로를 따라 해당 지점까지 모든 객실, 구역 또는 공간의 탑승자 하중 누적 부분에 기초해야 함 |

48) 박수로·황은경(2014), 전계논문 P.256

49) 상계논문 P.256

| | |
|----------|--|
| | -중층의 인접 수준 -인접한 층의 방, 면적 또는 공간을 통하여 필요한 출구가 있는 중층의 재실자 부하 부분은 해당 방, 면적 또는 공간의 재실자 부하에 추가 |
| | -인접층 별도 층의 재실자 부하는 추가되지 않음 |
| | 2. 고정 좌석이 없는 영역 : 재실자 수는 공간의 기능에 할당된 재실자 부하 계수에 따라 산출. 의도된 기능이 기준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가장 유사한 열거된 기능을 설정 |
| 재실자부하 증가 | -어떤 건물에서든 허용된 재실자 부하는 7제곱피트(0.65㎡)당 한 명의 재실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가 가능 |
| 재실자부하 계시 | -집회시설로 사용되는 모든 방 또는 공간은 객실 또는 공간의 주출입구 근처 눈에 띄는 곳에 재실자 부하를 게시해야 함 |
| 고정좌석 | -고정 좌석과 비상구가 있는 구역의 경우, 재실자 부하는 고정 좌석의 수에 따라 결정 -대기 공간과 같이 고정 좌석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재실자 부하는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휠체어 공간과 관련 좌석 재실자 부하는 제공된 각 휠체어 공간에 대해 한 명의 재실자와 동반자 좌석 고려 -팔걸이로 나뉘지 않은 고정 좌석이 있는 구역의 경우, 재실자 부하는 좌석 길이의 각 18인치(457 mm)에 대해 한 사람, 좌석 부스의 재실자 부하는 좌석 부스의 등받이에서 측정된 부스 좌석 길이의 24인치(610 mm) 당 한 사람에 기초함 |
| 외부공간 | -건물 입주자가 접근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야드, 패티오, 코트 및 이와 유사한 실외 구역에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대피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 -재실자 부하는 예상 사용량에 따라 건물 관리자에 의해 할당됨 -건물 재실자 외에 사람이 옥외 공간을 사용하고 옥외로부터의 대피 경로가 건물을 통과하는 경우, 건물의 대피 요건은 건물의 재실자부하와 실외 영역의 합계를 기준으로 함 |
| 다중용도 | -건물에 두 명 이상의 재실자가 있는 경우, 대피 요건은 해당 공간의 점유에 근거하여 건물의 각 부분에 적용 |

(출처 : IBC(2015) p.251-252)

[표 3-31] 재실자 당 허용 최대바닥면적(미국)

| 공간의 기능 | 재실자 부하 계수 Floor area in square feet(sqare meter) per occupant | | |
|-----------|--|-----------|-------|
| 부속창고, 기계실 | 300 | (27.87) | gross |
| 농업용 건물 | 300 | (27.87) | gross |
| 항공기 격납고 | 300 | (27.87) | gross |
| 공항 터미널 | | | |
| 수하물 찾는 곳 | 20 | (1.86) | gross |
| - 수하물 취급 | 300 | (27.86) | gross |
| 중앙 홀 | 100 | (9.29) | gross |
| 대기공간 | 15 | (1.39) | gross |

| | | | |
|-----------------------------|-----|-----------|-------|
| 집회시설 | | | |
| 위락시설(게임, 도박장) | 11 | (1.02) | gross |
| 전시시설(미술관, 박물관) | 30 | (2.79) | net |
| 집회시설(고정좌석 有) | | | |
| 집회시설(고정좌석 無) | | | |
| 의자 | 7 | (0.65) | net |
| 스탠딩 공간 | 5 | (0.47) | net |
| 테이블+의자 | 15 | (1.39) | net |
| 볼링장 | | | |
| 각 레인별 인원 5명, 15피트 런 웨이+부속공간 | 7 | (0.65) | net |
| 업무 공간 | 100 | (9.29) | gross |
| 법정(고정 좌석 영역 외) | 40 | (3.72) | net |
| 어린이집(탁아소) | 35 | (3.25) | net |
| 기숙사 | 50 | (4.65) | gross |
| 교육시설 | | | |
| 교실 | 20 | (1.86) | net |
| 상점과 기타시설 | 50 | (4.65) | net |
| 운동시설 | 50 | (4.65) | gross |
| 제조 및 제조 공간 | 200 | (18.58) | gross |
| 공업시설 | 100 | (9.29) | gross |
| 보호시설 | | | |
| 입원치료 영역 | 240 | (22.30) | gross |
| 외래 영역 | 100 | (9.29) | gross |
| 숙박 영역 | 120 | (11.15) | gross |
| 주방, 상업 | 200 | | gross |
| 도서관 | | | |
| 열람실 | 50 | (4.65) | net |
| 서가 | 100 | (9.29) | gross |
| 락커룸 | 50 | (4.65) | gross |
| 쇼핑몰 : 오픈, 지붕 | | | |
| 상업시설 | 60 | (5.57) | gross |
| 보관, 재고, 배송 구역 | 300 | (27.87) | gross |
| 주차장 | 200 | (18.58) | gross |

| | | | |
|------------|-----|-----------|-------|
| 주거시설 | | | gross |
| 스케이트장, 수영장 | | | |
| 링크, 풀 | 50 | (4.65) | gross |
| 데크 | 15 | (1.39) | gross |
| 무대와 플랫폼 | 15 | (1.39) | net |
| 창고 | 500 | (46.45) | gross |

〈출처 : IBC(2015), p.251〉

□ 영국의 피난규정

- 영국의 건축법령은 건축법(Building Act), 건축규칙(Building Regulations), 승인지침(Approved Document)으로 구성
 - 건축법(Building Act)은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피난관련 규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화재발생시 인면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⁵⁰⁾
 - 건축규칙(Building Regulations)은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 아래에 제정되어 있는 승인지침(Approved Document)에 제시
- 건축물의 용도는 15개로 구분하고 각 용도에 따라 재실자 밀도를 정함
 - 건물이용행태, 즉 재실자 밀도를 기준으로 건축물 용도를 구분함. 예를 들면 회의실, 식당, 바(Bar), 열람실, 레스토랑 등은 사용용도가 다르지만 재실자 밀도가 유사하므로 같은 용도군으로 분류⁵¹⁾
- 화재안전 규정을 성능기준으로 전환
 - 새로운 형태의 설계나 복잡한 대형구조물 건립에 따라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과 피난용량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피난 용량은 용도별 재실자의 밀도에 따라 각 층당 피난용량을 설정하여 수용인원 및 재실자의 사용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피난계단의 개수 및 피난거리 등을 산정함⁵²⁾

50) 박수로·황은경(2014), 전계논문 P.257

51) 상계논문 P.258

52) 안현(2012), 재실자 밀도를 고려한 국내의 피난안전규정 비교 연구, p.25

[표 3-32] 용도별 재실자 밀도(영국)

| 용도 | 재실자 부하 계수 (㎡/인) |
|--|-----------------|
| 입석 관중 공간, Bar 공간(서빙 지점으로부터 2m이내) 그와 비슷한 refreshment 공간 | 0.3 |
| 오락장, 집회장(일반적인 집회 용도 공간을 포함), 빙고장, 클럽, 집회시설 내 매점, 무도장, 대중음악 공연을 위한 집회장 및 고정된 좌석이 없는 그와 비슷한 refreshment 공간 | 0.5 |
| 중앙 홀, 출서는 곳 또는 쇼핑몰 | 0.7 |
| 회의실, 휴게실, 회의장, 식당, 인가된 도박장(공공 공간), 라운지 또는 bar(위 1번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0 |
| 전시장 또는 스튜디오(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녹음) | 1.5 |
| 스케이트장 | 2.0 |
| 상점 판매공간 | 2.0 |
| 미술관, 기숙사, 공장 생산 공간, 박물관 또는 작업장 | 5.0 |
| 사무실 | 6.0 |
| 상점 판매 공간 | 7.0 |
| 주방 또는 도서관 | 7.0 |
| 침실 또는 study-bedroom | 8.0 |
| 침실-거실, 당구장 또는 스누커장 | 10.0 |
| 창고 | 30.0 |
| 주차장 | 2명당 1대 |

〈출처 : The Building Regulation - Approved Document B, HMSO, 2007, 안현(2012) p.24 재인용〉

□ 일본의 피난규정

- 일본의 피난규정은 국내와 유사하며 「건축기준법」과 「소방법」에 포함되어 있음
 - 「건축기준법」과 「소방법」의 제정 및 운영기관이 이원화 되어있지만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성능기준을 적용한 피난안전검증법을 도입하여 대규모 특수공간 등에 적용하고 있음⁵³⁾

53) 안현(2012), 전계논문 P.28

- 피난안전검증법은 주택, 사무실, 교실, 판매시설, 식당, 집회시설 등 8개 용도군으로 구분하고 거실 종류에 따라 재실자 밀도 기준을 제시⁵⁴⁾
 - 8개용도에 따라 11개의 세부 용도에 대해서만 재실자 밀도가 제시되어 있을 뿐 미국이나 영국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표 3-33] 용도별 재실자 밀도(일본)

| 용도 | 재실자 밀도(인/㎡) | |
|--|-------------|-------------------|
| 주택의 거실 | 0.06 | |
| 주택 이외 건축물의 침실 | 고정 침대 | 침대수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수치 |
| | 그 외 | 0.16 |
| 사무실, 회의실 그 외 유사한 것 | 0.125 | |
| 교실 | 0.7 | |
| 백화점 또는 물품판매업 점포 | 매장 부분 | 0.5 |
| | 매장 부속 통로 부분 | 0.25 |
| 음식실 | 0.7 | |
| 극장, 영화관, 연회장, 관람장, 공회당, 고정석 집회장 그 외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실 | 고정석 | 좌석수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수치 |
| | 그 외 | 1.5 |
| 전시실 그 외 유사한 것 | 0.5 | |

〈출처:建築關係法令集, 건설성 고시 제 1441호, 2011, 안현(2012) p.27 재인용〉

3) 국외 피난안전 규정의 시사점

□ 국내 피난안전 규정 현황

- 국내의 경우,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일본의 체제를 도입하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법령으로 제정 시행해 왔으나,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층수, 규모에 따른 사양규정으로 구성됨
- 용도분류체계에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고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건축법의 피난시설 설치 기준은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바닥면적 등을 기준으로 복도의 폭, 피난계단의 설치, 출구의 수, 보행거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

54) 박수로·황은경(2014), 전계논문 P.257

- 최근 신재료, 신공법을 활용한 초대형·초고층 건물의 출현 등에 대응하고자 일부 법령에서 재실자 밀도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초대형·초고층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법령에 따라 재실자 밀도 기준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이용자의 행태 및 수용인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국외 피난안전 규정 현황과 시사점

-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성능 중심의 피난안전설계기준으로 전환하고 있음
- 재실자를 중심으로 한 용도분류를 토대로, 용도별 재실자 밀도와 피난용량을 과학적, 공학적으로 산정하여 각 건축물의 특성에 알맞은 피난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음
- 미국, 영국은 최대수용인원에 따라 둘 이상의 피난경로의 수를 결정
- 피난경로의 폭은 재실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용도별 재실자 1인당 단위 폭을 기준으로 피난경로의 최소폭을 산출함
- 건축물의 용도와 이용행태에 적합한 용도분류체계의 재정비 필요
- 합리적인 피난안전 계획 수립을 위한 지표로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용도별 재실자 밀도 기준 정립 필요
- 재실자 밀도를 기반으로 피난용량 산정 및 성능 중심 피난안전 관련 건축 기준 마련 필요

제4장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 에 따른 안전기준 개선안

1. 실내 공간 수요변화의 주안점과 안전기준 개선 방향
 2. 실내 공간 안전기준 개선방안
-

1. 실내 공간 수요변화의 주안점과 안전기준 개선 방향

□ 실내 공간 활용방식 다양화와 '중층' 개념 정립, '안전보강기준' 마련

- 여성의 사회진출,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현대인의 생활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키즈카페, 만화카페, 찜질방, 독서실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 증가
- 해당 업종은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소비자 취향 마케팅이 활발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중층 설치를 통한 특색 있는 공간 구성과 상업적으로 활용을 들 수 있음¹⁾
- 그러나 현재 중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건축시장의 혼선 가중 및 사용자 관리책임 규정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엇보다 앞서 '중층'에 대한 법적 용어가 정립되어야 함
- 또한 근린생활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 시설이 복합적으로 집합되어 있고, 대다수가 휴게목적의 취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난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피난계획기준 강화 필요
 - '중층' 정의, 설치가능 면적 기준, 중층 설치 시 안전시설 보강 계획 등

1) 앞서 조사한 표-의 사례들은 모두 중층구조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 면적 증가로 인해 옥외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이 될 경우 피난계단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 변경은 불가하며,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실내건축 사업 증가와 '실내공간 계획기준' 보완 및 적용 확대

- 준공 후 임대방식으로 입주, 운영되는 근린생활시설 내 다중이용업소는 수시로 업종이 바뀌게 되며 이 경우 별도의 실내건축을 통해 공간구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됨
- 현재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및 분양건축물에 한정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다중이용업소에도 의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이 요구됨
 -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여 화재 및 사용 안전을 확보하고자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상범위가 다중이용건축물, 분양대상 건축물로 제한적임
 - 건축규모 측면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은 5,000㎡ 이상, 분양건축물 중 3,000㎡ 이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감안하여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 또는 용도를 구체화할 필요

□ 준공 후 실내 공간 불법 변경 상존과 '유지관리 점검 강화'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공간에 층층 설치 시 층고가 2.1미터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1차 제도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무허가로 설치되는 사례도 빈발
- 특히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 다락기준을 적용, 1.5미터 이하로 설치한 후 사용과정에서 거실로 활용하는 경우, 정기 점검, 또는 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
 - 현재 합법적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층층을 설치하여 영업 중인 사례는 건축 시장에서의 분쟁 및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만 행정적 시정 조치에 대한 상호간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용자 및 건축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²⁾

- 최종 허가를 기점으로 실내공간의 불법적 변경에 대한 점검 및 후속조치도 강화할 필요

※ 현재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기준은 개별법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따라 실내건축의 적정 시공 여부를 검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에 대해 정기점검 실시,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는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해당 업소의 안전시설을 정기점검

□ 다양한 실내 공간 활용방식의 확대 전망과 재실자 밀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피난안전기준 재정립

- 임대를 통해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건축물 실내공간은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 실내공간의 변경은 곧 면적 및 수용인원의 증가와 연계되며, 이 경우 늘어난 재실자 밀도를 고려한 피난안전 등 위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건축물 화재 시 피난행동을 예측하고 안전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실자의 수, 즉 ‘재실자 밀도’이며 이는 각 피난시설의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³⁾
 - 재실자의 수는 피난경로 상의 계단, 복도의 피난 용량을 산출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피난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피난계획에서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재실자 밀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성능중심 설계기준이 도입되고 있으나 국외 사례에 비해 미흡하고, 재실자 밀도를 규정하는 법령 또한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해외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실자 밀도’와 같이 시설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수용인원과 수용인원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지표 마련 필요

2) 국토부, 광주나이트클럽붕괴사고 대책회의(2019.08.07.) 중 5개 지자체 공무원 공동 의견
 3) 안현, ‘재실자 밀도를 고려한 국내의 피난 안전 규정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6

2. 실내 공간 안전기준 개선 방안

1) 용어정의 및 설치기준 마련, 피난기준 적용 확대

□ '중층' 용어 추가, 설치가능 면적 제한기준 마련

- (대안) 중층을 활용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공간 활용 실태를 고려하여,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2조, 119조, 시행규칙에 '중층'에 대한 개념과 설치기준을 명시
 - 중층은 해당 거실 바닥 면적의 1/3 이하로 한정하며, 중층하부는 실로 구획되어서는 안 됨⁴⁾
 - 바닥면적에는 산입하되,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
 - 층수산정에서 제외
 - 중층으로부터의 피난기준은 해당 실의 계획기준 동일하게 적용
- (취지) 건축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층'에 대한 제도적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준공 후 중층을 설치하려는 자 또한 본 기준에 맞게 설계 및 공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단계(실내건축, 리모델링 포함) 건축물 안전관리의 기반을 마련
 - 그러나 한 개 거실 내부에 설치되어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일반적인 층수에는 산입하지 않고, 해당 층 바닥면적에는 포함하되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용자의 건축 활동을 장려함

[표 4-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등 개정안

| 구분 | 기존 | 개정안 |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 <p>제2조(정의) 14의2. “중층”이란 한 개 층 거실 일부를 수직으로 구획하여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을 말하며 중층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중층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 - 중층의 반자높이는 1.80이상 2.10이하</p> </div> |

4) 미국 NFPA, Life Safety Code101,2015년, p. 31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타.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타. (변동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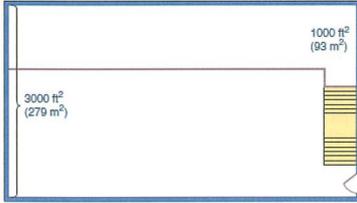
(신설) 파. **중층의 바닥면적은 중층이 설치되는 거실 바닥 면적의 1/3이하로 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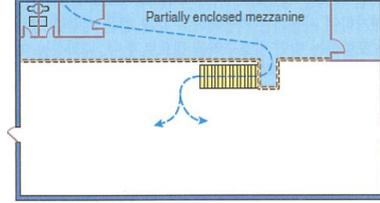
가~바. (변동없음)

(신설) 바. **중층의 바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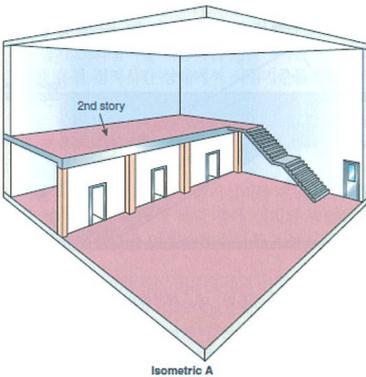
9.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 **중층(신설)**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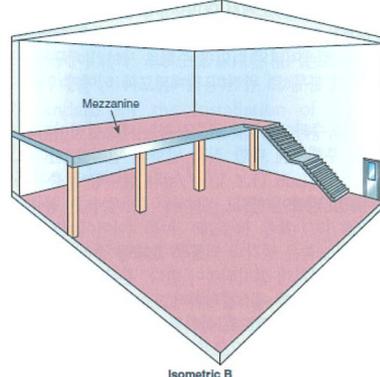
[그림 4-1] 중층설치 평면1



[그림 4-2] 중층설치 평면2



[그림 4-3] 중층 불가



[그림 4-4] 중층 가능

[중층의 설치기준]

(출처: 미국 NFPA, Life Safety Code101,2015년, p. 316)

□ 직통계단, 옥외피난계단, 건축물 바깥으로의 출입구 설치 대상 확대

- (대안)「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6에 따라 직통계단과 옥외피난계단, 피난층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포함하는 건축물,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으로 이동하는 직통계단을, 시설 사용 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2개소로 확대하고, 3층 이상의 층의 경우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취지)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는 건축물은 신축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 피난공간 설치 기준을 강화함

[표 4-2]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등 개정안

| 구분 | 기존 | 변경 |
|--------------------|---|---|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p>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p> <p>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탁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 이상인 것</p> <p>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p> | <p>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p> <p>1. (좌동)</p> <p>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포함하는 건축물과 독서실, (이하 좌동)</p> |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 <p>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p> | <p>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p> |

| | | |
|--------------|--|--|
| | 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포함하는 건축물 |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2. (좌동) |
|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 제39조(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 제39조(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포함하는 건축물(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
| | 3. 종교시설 | |
| | 4. 판매시설 | |
| |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10. (좌동) |
| | 6. 위락시설 | |
| | 7.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창고시설 | |
| |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
| | 9. 장례시설 | |
| |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

2) 실내건축 기준 개정

□ 실내건축 안전 기준 적용 대상 확대

- (대안)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의 적용대상을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 건축물로 확대
 - 현재 적용대상이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건축물에 한정된 실내건축의 구조·시

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 건축물로 확대

- (취지) 신축건물 뿐 아니라 기존 건물 중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중층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단계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표 4-3] 「건축법」 제52조의2 등 개정안

| 구분 | 기준 | 개정안 |
|------------------------|---|--|
| 건축법 제52조의2 |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 변경없음 |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좌동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포함하는 건축물 |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좌동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 건축물 |

□ 대피공간 설치

- (대안)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에 대피공간 설치 추가
 -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피난 안전을 위해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또는 거실에 면한 노대 또는 발코니 설치
 - 피난안전을 위해 대피공간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정함
- (취지) 대피 성능(이동속도 등) 이 각기 다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난 취약자를 배려한 대피공간을 마련하여 안전성 확보
 - 예를 들어, 실내어린이 놀이터와 휴게음식점이 결합한 키즈카페의 경우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중간층에 위치하지만 아동의 대피능력을 고려한 안전장치 미흡
 - 또한 ‘중층’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축소, 직통계단 등 건축물 구조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며, 따라서 안전 보강조치가 가능한 대피공간, 피난시설 추가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할 필요

[표 4-4]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개정안

| 구분 | 기존 | 개정안 |
|------------------------|--|--|
| 건축법 시행 규칙 제26조의5 |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1. 29.>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 마감재로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배수(排水)·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1. 29.> 1~6. (좌동) 7.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유아가 주이용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은 안전한 피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각 영업장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1.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발코니 등 |

□ 실내건축 안전기준 보완

- (대안)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중 안전 관련 세부규정 보완
 - 제6조(안전난간 등): 거실 내부에 개방형 중층을 조성하는 경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중층 거실에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의 재료는 기존 기준을 따르도록 함
 - 중층 거실 바닥에서 피난통로로의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층 출입구 및 통로를 확보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적합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취지) 중층에서 피난층으로 안전한 이동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중층에 대한 안전 보완 조치 유도

[표 4-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

| 구분 | 기존 | 개정안 |
|-------------------------|--|--|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 <p>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p> <p>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p> <p>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p> | <p>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중층 거실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p> <p>2~3. 좌동</p> |
| - | - | <p>신설</p> <p>제9조의2(피난통로 등) ①중층의 경우 각층 부딪침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상부층 바닥에서 피난통로로의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출입구 및 통로폭을 확보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적합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p> |

3) 안전관리 점검제도 확대

□ 실내건축 정기 점검 대상 확대

- (대안) '중층' 개념 정립,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개정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대상을 법적용 대상으로 확대, 조례 반영 내용 축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에 따른 다중 이용업소를 포함하는 건축물 포함
- (취지) 현재 「건축법」 제52조의2에는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 여부 검사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검사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과 '분양건축물'에 한정함. 본 연구의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36조, 39조, 61조의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의 개정(안)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대상 매칭 필요

[표 4-6] 「건축법」 제52조의2 개정안

| 구분 | 기존 | 개정안 |
|-----------|---|---|
| 건축법 52조의2 |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
| |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

제5장 결론

1. 연구 성과
 2. 향후 과제
-

1. 연구 성과

- 실내공간 변경이 발생하는 주요 시설 ; 1,2층 근린생활시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 건축물
 - 노인인구, 1인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 반려동물 가구 등 가구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공간 마케팅 및 상품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실내건축, 리모델링 등 관련 건축산업도 성장추세
 - 대표적인 산업으로 키즈카페, 만화카페, 애견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휴게음식점의 다중이용업소이며 1,2층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확산
 - 전국에 위치한 해당 업종 사례 920건 조사 결과, 전체 연면적 1,000㎡이상(75%), 시설면적 500㎡이하(73%), 2~4층(57%)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서비스 공간인 중대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새로운 다중이용업종의 등장에 따른 실내공간 변경 특징과 안전문제 쟁점; 중층 설치, 생활안전·피난안전 기준 미흡
 -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휴게 목적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비자의 흥미 유발, 가용면적 확대를 위해 중층을 설치가 일반적 양상
 -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주목적인 키즈카페의 대부분이 중층, 또는 유사한 형태

의 가구 배치 등을 통해 상하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법률에 중층 정의가 부재하여 해당 공간의 화재 및 붕괴, 각종 생활안전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한계

□ 계획 단계 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도 실내공간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규정 마련; 피난·방화구조, 실내건축, 안전관리

- ‘중층’ 용어 정의, 설치가능 면적 제한; 건축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층’에 대한 제도적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준공 후 중층을 설치하려는 자 또한 본 기준에 맞게 설계 및 공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단계(실내건축, 리모델링 포함) 건축물 안전관리의 기반 마련
- 직통계단, 옥외피난계단, 출입구 설치 대상 확대;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는 건축물은 신축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 피난공간 설치 기준을 강화함
- 실내건축 안전기준 적용대상 확대; 신축건물 뿐 아니라 기존 건물 중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중층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단계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대피공간 설치; 대피 성능이 각기 다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난 취약자를 배려한 대피공간을 마련하여 안전성 확보
- 실내건축 안전기준 보완; 중층에서 피난층으로 안전한 이동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중층에 대한 안전 보완 조치 유도
- 실내건축 정기 점검 대상 확대; 현재 「건축법」제52조의2에는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 여부 검사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대부분 검사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과 ‘분양건축물’에 한정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침을 마련

2. 향후 과제

□ 변화하는 건축환경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마련

- 건축물의 이용계층·행태를 고려한 성능 중심의 건축물 용도분류 재편 필요
 - 건축물 용도분류체계는 건축규제를 적용하고 피난규정을 정립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요소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조정 필요
 - 건축물의 안전한 실내공간 계획을 위해서는 각 공간의 주요 기능, 주이용자, 주이용자의 행태특성이 반영된 건축물 용도분류 필요
 - 특히, 한 건축물에 각 개별법령에 의한 건축규제를 혼란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상호 연계성 확보 필요
 - 우선적으로 건축법령과 소방법령 간 용도분류를 일원화하는 등 국내 실정에 맞게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재편

□ 재실자 밀도 기준을 통한 보다 정교하고 탄력적인 실내 공간 안전기준 마련 필요

- 건축물 실내공간 안전 규정은 건축물 용도, 규모와 함께 주이용자 특성 및 이용자 밀도에 대한 고려 필요
 -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는 수용인원에 적합한 피난경로를 확보하여 재실자를 즉각 화재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실의 최대수용인원을 예측하고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재실자 밀도를 고려한 공간 활용성능에 따른 탄력적 피난규정 정립 필요
 - 건축물 사용과정에서 실내공간의 변경 요구가 늘어날수록 공간의 가용 용량을 고려한 안전 계획기준도 탄력적으로 정교해져야 할 필요

[보고서]

- 김대중(2001), 실내 놀이터 안전실태 조사 결과, 다중이용시설내 설치된 유료 실내놀이터 중심, 한국소비자원
- 김상호 외(2012),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 김은희 외(2014),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구조 및 시공방법 등의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은희 외(2016),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혜진(2010), PC 방 안전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 박범규(2005), 대형 유통매장내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 박범규(2011), 노인요양시설 안전실태조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 서수은 외(2013), 건축물의 실내건축 재료에 관한 화재안전성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 조성오(2010), 실내건축 관련 소방규정과 방염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한국소비자원(2016), 고령자 추락·낙상사고 위해사례 동향 분석, 한국소비자원

[논문]

- 박수로·황은경(2014), 국내외 재실자 밀도 기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4권 3호
- 서동구(2014), 성능위주 화재안전설계를 위한 설계화재, 재실자 밀도 및 스프링클러 액적의 설계인자 분석,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현(2012), 재실자 밀도를 고려한 국내외 피난 안전 규정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홈페이지]

구글코리아 : <http://google.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www.kosca.or.kr/>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4/203880/>
매일경제 : “SOC투자, 향후 5년간 최대 47조 부족”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7/02/107820/>
매일경제: “공유주택-공유하우스 디자인의 미래”,
<http://www.mk.co.kr/news/culture/view/2019/04/203880/>
민원24 :<http://minwon.go.kr>
시사인: “독립 공간 지키고, 고립시간 줄이고”,
<http://m.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08>
세움터: <https://www.eais.go.kr/>
스페이스클라우드, <http://spacecloud.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2035000002>
통계청: <http://kosis.kr>

[기타]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8),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육성지원 사업” 내부자료
국민안전처(2015), “2015 화재발생현황분석”
국토교통부(2017), “국토교통부 2016년 건축통계집”
국토교통부,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김일태 외(2008), 「만화애니메이션 사전」, 만화 카페 [comics cafe, 漫画喫茶店], 네이버 지식
백과
김종일(2018.08.20.), “만화산업 고속성장 빚장 풀자”, 시사저널
대한전문건설협회, “2007~2017년 실내건축분야 매출액”
미국 NFPA(2015), Life Safety Code101, NFPA
민원24, “건축물 관리대상 조사·분석”
박정호(2015.01), “KDI 경제저널”, KDI
세움터, 건축물 관리대상
신영증권(2019.03.27.), “네 번째, 인테리어 리모델링”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2~2017)”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내부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1.12.07.),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통계청 보도자료(2016.12.08.),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
통계청 보도자료(2016.09.29.), “2016 고령자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17.09.26.) “2016 고령자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17.06.20.),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한국고용정보원(2017), “2017 상반기 일자리 전망”
한국소비자원(2016), “고령자 추락·낙상사고 위해사례 동향 분석”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2015), International Code Council
KB지식비타민,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Regulations to Respond to the Change of Interior Space Demand in Buildings

SUMMARY

Kim, Eun Hee

Chapter 1. Introduction

As the low-growth economic trend continues, the remodeling and indoor construction industry using existing buildings are highlighted rather than new construc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linked with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such as population, furniture, and technology, and it creates a new type of space with various functions. In addition to the positive aspect of revitaliz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or boosting the livelihood economy, it is also the subject of social problems such as the box office of an illegal renovation of existing buildings, accidents and disput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nflicting points of the current building standards from the viewpoint of user safety when to change the indoor space and to prepare improvement plan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in parts: first, the changes in the interior space of buildings according to changes in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the problems raised accordingly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limitations of the safety-related legal system of the interior space of buildings in Korea in light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cause of the safety accident of the interior space of buildings, and compared the safety regulations of the buildings in Korea and abroad to deri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Finally, the improvement plan for building standards corresponding to the new

indoor space demand-type was presented, and a reasonable safety standard improvement plan was suggested considering changes i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in the future.

Chapter 2. Safety Problems of Interior Space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Building Demand

As the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the type of households such as single-person households, dual-income households, multicultural households, and companion animal households is subdivided, space marketing is expanding for them. Various living space service facilities are increasing, an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efficient use of indoor space. The remodeling and renovation of existing buildings, maintenance and management projects and expansion of indoor construction work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 same context.

On the other hand, as the social change accelerates, new architectural types such as shared housing and joint workspace have appeared, and service facilities for commercial purposes such as cartoon cafes, kids cafes, and dog cafes have also increased. In the case of kids' cafes and comic cafes, at least 770 are installed and operated arou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nationwide, and the new leisure service has changed the form of indoor space. It is noteworthy that a multi-story floor is made inside one level and used for living room use.

In the case of the second floor,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building is installed arbitrarily during the building use process without building permission or notification, and some facilities have been ordered to be remov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illegality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is case, it may lead to legal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business operators and the disposition of fine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cause of such conflicts, which is the absence of building standards for the act. Notably, there is no clear legal standard for the floor area, that is, the living room space, which has been vertically increased, besides, as the area increases, the occupant density increases. There is no complimentary device to eliminate the added safety risk other than the initial plan standard.

Chapter 3. The Act on the Safety of Building Interior Space

To secure the safety of the interior space of the building, the current legal system should be preceded by the regul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nd the structure. Life safety accidents are occurring continuously in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such as PC rooms, jjimjilbang, indoor playgrounds (kids cafes), and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safety accidents for the elderly are also increasing. Kids' cafes, which are equivalent to indoor playgrounds, are located in multi-use facilities such as sales facilities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which can lead to large-scale damage in the event of an accident. Other multi-use facilities are frequently involved in fire safety accidents, and the cause is that fire safety performance is often deteriorated depending on the structure and materials of the internal partition installed as needed.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law system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interior space of the building are as follows.

The types of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afety of interior space of buildings are divided into the building and maintenance law, the area welfare-related laws for the socially weak, the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details of the rules, the standards for creating a safe living environment, the standards for fire prevention and evacuation safety, and the planning stage and maintenance stage application criteria can be divid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point.

This law pointed out the limitations in three aspects: First,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of the floor added to live in the level. It is not irrelevant to the increase in the illegal use of 'attic,' which is the current legal space. Next, safety standards such as structure and construction method of indoor architecture are prepared, but the application target is limited to multi-use buildings and buildings to be sold, so it can not be applied to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nd multi-use facilities with many changes in indoor space. Lastly,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door space only by the evacuation safety facility standard defined by the use and size of buildings.

On the other hand, we compared the evacuation safety regul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buildings to establish a legal system related to evacuation safety of more intelligent buildings. The internal evacuation safety regulations stipulate the use of buildings, the number of floors, the width of corridors according to the size, the

installation of evacuation stairs, the number of exits, and the walking distance, and are operated by dualization into building laws and sub-decrees. Recently, in order to cope with the emergence of large-scale buildings using new materials and new construction methods, some rules and regulations have introduced the standard of occupancy density, but it is limited to massive and high-rise buildings, and it is challenging to secure consistency because the measure of occupancy density is different for each law.

In the case of overseas countries, performance-oriented evacuation safety design standards are introduced from the planning and design stages.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building use classification method based on a person in a room, calculating the person in a room density and the evacuation capacity for each user, and applying evacuation regulations correspon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uilding.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maximum number of indoor space users should be determined, and the number of evacuation routes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ly, and the minimum width of the evacuation route should be calculated by reflecting the unit width per occupant peruse.

Chapter 4.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s for the Change of Interior Space

To secure the indoor space safety of buildings, a clear concept of 'middle-story,' which is pointed out as the most practical problem,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is, the standard of the installation area and structural reinforcement should be prepared in the range that the floor area ratio of existing buildings does not change. Also, the rule of interior space and finishing materials corresponding to the changes in interior space in the process of using other structures should be prepared, and the maintenance inspection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improve fundamental building standards such as evacuation safety plan considering the density of indoor space occupants.

In this direction,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 for safety standards in terms of evacuation, and fire protection structure, indoor construction, management and inspection so that safety can be secured according to changes in indoor space in the planning stage as well as in the use stage.

First, the legal concept of 'mezzanine,' which is controversial in the architectural market, is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nd the installation area and height are defined.

Second, buildings, including multi-use facilities, will be included in the direct statistical stage, outdoor evacuation stairs, and entrance installation targets considering the new construction stage.

Third, the facilities that install and operate the middle floor centering on multi-use facilities among existing buildings, as well as new buildings, will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indoor construction safety standards so that the responsibility for safety management at the use stage can be strengthened.

Fourth, in case of an accident in a multi-use facility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with different evacuation performance, a shelter space considering vulnerable people to be evacuated should be prepared to ensure safety.

Fif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for safe movement from the middle floor to the refuge floor,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indoor building safety standards for the middle level installed in existing buildings, is supplemented.

Six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buildings, including multi-us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Multi-use Businesses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regular inspection of indoor premises.

Chapter 5. Conclusion

The present situation diagnosis and problem improvement of related safety standards are urgent in that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the interior space of buildings can cause the complex of various industries, the method of changing the interior space, and the structure and materials of the installations used in the chang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epared institutional condi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current safety standard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oor space use of new industries that appear as the demand of the market.

However, more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afety standards that penetrate the entire building that can respond flexibly to the changing architectural

environment and manage systematically. For this, it is required to reflect various planning elements such as main user characteristics and size along with the use and size of buildings. When referring to the case of overseas construction standards, the reorganization of the use classification,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plan, and the performance design standard accordingly can be a metho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rovement of an efficient building standards system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Keywords :

Interior space, Demand change, Safety standards, Evacuation, Mezzanine, Occupant density

부록1. 건축물 실내 공간 안전 관련 법령

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준

① 계획기준

생활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마감

건축법 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法 제52조의2(실내건축)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승 제61조의2(실내건축)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則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규칙]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건축물 분양법 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일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 6. 1.>

- 승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야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1.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

장 애 인 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則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則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주 거 약 자 법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자법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승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유지관리기준

실내건축 검사

건축법 法 제52조의2(실내건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25조의3(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61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매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34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4년으로 한다.

여주시 건축조례

제28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현장조사업무 대행자인 건축사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관 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피난 안전 확보 기준

① 계획기준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내부구조

건축법 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차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

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則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이내마다

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감동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기지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맴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강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맴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규칙]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2호)

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則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숙 제61조의2(실내건축)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則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 마감재로는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배수(排水)·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6. 실내의 물출부 등에는 총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규칙]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방화를 고려한 실내마감

건축법 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숙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000㎡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춘 것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2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則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 장식물을 제외한다.

④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

한다. 이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규칙]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1호)

소방시설법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수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동리듬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

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울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울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행정규칙]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19-2호)

다 중 이 법 제10조(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동림
용 업 소 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法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則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행정규칙]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2호)

화재안전설계

소 방 시 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
설 법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행정규칙]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法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행정규칙]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다 중 이 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
용 업 소 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
법 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
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

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한다) 1부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찢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기준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관 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건축물(이하 "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방시설 관리

소방시설 법 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행정규칙]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승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삭제 (2015. 7. 24.)

2. 삭제 (2015. 7. 2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낙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나.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다. 낙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삭제 <2017. 1. 26.>
-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라. 지하구
-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則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감습교육이나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감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급 또는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증

2. 삭제 (2007. 12. 13.)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 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8., 2015. 7. 16., 2017. 2. 10.)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행정규칙]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19-5호)

法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則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를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② 소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則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則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별표 2의2와 같다.
-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 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則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

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행정규칙]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19-5호)

안전시설 관리

다중이용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
업소법 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횟수, 시기,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則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 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 또는 2)에서 정한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 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9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나.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 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 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

당한다.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④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신규 교육 대상자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2.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⑤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찢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則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②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행정규칙]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57호)

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숙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숙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1. 미이행업소명

2. 미이행업소의 주소

3.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 미이행의 횟수

③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1.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2.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6. 시·군·구청 소식지(시·군·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則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則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한다) 1부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시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則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① 법 제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설치 기준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제2호다목과 같다.

法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則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則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則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부록2. 만화카페 및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설치 현황

| 만화카페(232)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지역 | 상호명 | 연면적 (㎡) | 건축 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지역 | 주구조 | 주용도 | 층수 | 높이 (m) | 위치 층수 | 용도 변경전 | 용도 변경후 (원) | 해당 면적 (㎡) | 위반 사유 | 위치 층수' | |
| 1 | 강원도 | 뽀뽀한 하루 | 4,475 .2 | 498.0 | 68.8 | 550.9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경량철 골구조 | 근린생 활시설 업무시 설 | 지하1 층/지 상10 층 | 37.4 | 지하1 층 | 문화및 집회시 설(극 장) | 제2종 근생(일반음 식점) | 484.1 | | | 지1 |
| 2 | 강원도 | 카툰매 니아 | 6,878 .7 | 967.9 | 75.8 | 447.3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교육연 구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7.4 | 광장빌 딩4층 | | 사무소 (학원, 기원) | 951.5 | | 4 | |
| 3 | 강원도 | 별투강 릉본점 | 6,213 .4 | 1,730 .6 | 71.5 | 186.3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3층 | 17.4 | 208호 | | 근린생 활시설 | 1,530 .5 | | 2 | |
| 4 | 강원도 | 망스의 북다방 | 8,838 .2 | 1,203 .7 | 77.3 | 411.2 | 일반상 업지역 외1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업무시 설 | 지하2 층/지 상6층 | 29.3 | | | | | | | |
| 5 | 강원도 | 복스복 스 | 1,124 .0 | 238.7 | 69.9 | 329.2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교육연 구시설 | 지하층 /지상5 층 | 20.9 | 2층 | | 사무소 | 232.8 | | 2 | |
| 6 | 강원도 | 청춘다 락방 | 585.0 | 195.7 | 49.9 | 149.2 | 일반상 업지역 | 일반철 골구조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3 층 | 16.4 | 3층 |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휴게 음식점) | 195.7 | | 3 | |

| | | | | | | | | | | | | | | | | |
|----|-----|-------------------------|----------|---------|------|-------|-------------------|---------------------------------|--|------------------------|------|-----------------|--------------------|-------|--------------------------|---|
| 7 | 강원도 | 카툰다 락방 | 3,323.3 | 1,146.0 | 7.8 | 15.3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판매및 영업시 설(상 점)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2층 | 9.2 | 브라운 가3층 | | | | |
| 8 | 강원도 | 별투원 주단지 점 | 6,878.7 | 967.9 | 75.8 | 447.3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교육연 구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7.4 | 광장빌 딩4층 | 사무소 (학원, 기원) | 951.5 | 4 | |
| 9 | 강원도 | 만화& 레고카 페덱스 | 2,216.3 | 325.1 | 69.0 | 404.7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업무시 설 | 지하1 층/지 상7층 | 23.9 | 4층 | 컴퓨터 학원 | 323.5 | 4 | |
| 10 | 경기 | 만화카 페놀 | 2,940.9 | 459.4 | 74.9 | 363.9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업무시 설 | 지하2 층/지 상5층 | 18.5 | | | | | |
| 11 | 경기 | 만화카 페만만 세 | 1,130.2 | 186.6 | 69.0 | 339.8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조스라 브 | 근린생 활시설 업무시 설 | 지하1 층/지 상5층 | | 은수빌 딩3층 | 당구장 | 186.6 | 3 | |
| 12 | 경기 | 누리만 화카페 | 2,693.6 | 368.9 | 69.3 | 414.3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교육연 구및복 지시설 | 지하1 층/지 상7층 | 22.7 | 삼화빌 딩지하 층 | 골프연 습장 | 221.4 | 지 | |
| 13 | 경기 | 코믹스 도이만 화카페 | 630.7 | 132.2 | 68.3 | 257.8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및조적 조슬라 브지붕 | 근린생 활시설 및주택 | 지하1 층/지 상4층 | | 지하1 층 | 노래연 습장 | 132.2 | 지1 | |
| 14 | 경기 | 달코믹 스 | 15,777.1 | 1,216.9 | 59.4 | 582.6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 지하3 층/지 상10 층 | 43.2 | | | | | |
| 15 | 경기 | 북카페 방곡 | 4,048.7 | 561.8 | 57.3 | 332.8 | 제2층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교육연 구및복 지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0.9 | 정석그 린프라 자 | | | | |
| 16 | 경기 | 힐링데 코믹스 | 7,212.6 | 880.3 | 79.6 | 388.0 | 중심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라멘조 | 근린생 활시설 외2 | 지하3 층/지 상5층 | 19.8 | 피아자 코코빌 딩 | | | 지하1 층무단 층축(복층) | |
| 17 | 경기 | 즐거운 다락방 (삼곡 동) | 3,982.7 | 549.0 | 79.1 | 416.7 | 일반상 업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제2층 근린생 활시설 위락시 설 | 지하2 층/지 상7층 | 24.0 | 휘닉스 빌딩5 층 | 제2층 근린생 활시설 | 392.7 | 조경혜 손및무 단층축 | 5 |
| 18 | 경기 | 놀툰 | 8,116.5 | 823.7 | 79.6 | 608.3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 제1,2 층근린 | 지하2 층/지 | 34.3 | | | | | |

| 총 | | | | | | | | | | | | | | | |
|----|----|-------------|---------|-------|------|-------|------------|----------|------------------|-----------|------|---------|--------------------|-------|---|
| 31 | 경기 | 진통 | 1,095.3 | 222.8 | 72.9 | 288.8 | 일반상업지역 | 라멘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13.0 | | | | |
| 32 | 경기 | 유량할뜰새 | 1,289.3 | 302.1 | 53.6 | 225.9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4.0 | 5층 | 제2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187.4 | 5 |
| 33 | 경기 | 카페데코믹스(철산) | 2,844.3 | 399.0 | 67.2 | 324.3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5층 | 16.4 | | | | |
| 34 | 경기 | 만화산책엔카페 | | | | | | | | | | 상도빌딩3층 | | 3 | |
| 35 | 경기 | 내사랑순정씨 | 1,523.1 | 456.7 | 58.7 | 218.9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15.0 | 명동하우스3층 | 근린생활시설 | 295.3 | 3 |
| 36 | 경기 | 북앤빅뱅 | 738.0 | 307.8 | 59.6 | 119.3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2층 | 8.0 | | | | |
| 37 | 경기 | 일공달콩다락방 | | | | | | | | | | | | | |
| 38 | 경기 | 커피가있다락방 | 385.4 | 131.8 | 49.8 | 145.7 | 제1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단독주택, 제1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1.9 | | | | |
| 39 | 경기 | 잼놀만화카페 | 595.4 | 200.4 | 79.7 | 236.9 | 일반상업지역 | 철골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2.8 | | | | |
| 40 | 경기 | 하루 | 6,857.6 | 837.0 | 77.7 | 533.5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8층 | 31.0 | | | | |
| 41 | 경기 | 만화가페노리터 | 1,432.5 | 286.5 | 69.8 | 349.2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5층 | 20.2 | | | | |
| 42 | 경기 | 실북만화카페 | 601.6 | 120.8 | 52.7 | 206.8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지하1층/지상4층 | 12.1 | 3층 | 휴게음식점 | 111.9 | 3 |
| 43 | 경기 | 공간Book&Cafe | 463.7 | 157.4 | 59.4 | 174.8 | 제1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단독주택 | 지하층/지상4층 | 15.1 | | | | |
| 44 | 경기 | 내사랑순정씨 | 1,523.1 | 456.7 | 58.7 | 218.9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15.0 | 명동하우스3층 | 근린생활시설 | 295.3 | 3 |
| 45 | 경기 | 평만화방 | 3,221.9 | 422.6 | 58.7 | 293.1 | 중심상가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 지하2층/지상5층 | 20.1 | 진명프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46 | 경기 | 즐거운 다락방 | 2,836 .7 | 453.1 | 69.2 | 261.6 | 중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중중 주택 | 지하2 층/지 상5층 | 15.9 | 2층 | 학원 | 근린생 활시설 | 448.1 | 2층불 법중축 해제 | 2 |
| 47 | 경기 | 뽕골뽕 골만화 카페 | 4,562 .1 | 533.5 | 62.2 | 366.1 | 중심상 가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2 층/지 상5층 | 20.0 | | | | | | |
| 48 | 경기 | 안양힐 링만화 | 6,596 .0 | 949.7 | 87.0 | 415.9 | 중심상 가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위락 시설 | 지하2 층/지 상5층 | 20.0 | 부림프 라자5 층506 호 | | | | | 5 |
| 49 | 경기 | 호계동 카페데 코믹스 | 2,597 .4 | 378.2 | 79.3 | 366.5 | 상업지 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2 층/지 상5층 | 20.0 | | | | | | |
| 50 | 경기 | 안양카 페데코 믹스 | 2,477 .6 | 477.2 | 68.5 | 272.7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 4층 | | 일반음 식점 | 238.6 | | 4 |
| 51 | 경기 | 안양스 캐치복 안화카 페 | 709.3 | 181.8 | |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주택 | 지하1 층/지 상3층 | | | | | | | |
| 52 | 경기 | 하하호 호만화 카페 | 770.8 | 153.0 | |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의원, 위락시 설사 무실 | 지하1 층/지 상5층 | | | | | | | |
| 53 | 경기 | 더심공 카텐앤 북카페 | 2,207 .8 | 358.9 | 49.9 | 299.5 | 제1종 일반주 거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교 육연구 및복지 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1.5 | 낙원빌 딩6층 | 교육연 구및복 지시설 | 제2근 린생활 시설(사무실) | 358.9 | | 6 |
| 54 | 경기 | 책읽는 고양이 | 782.4 | 199.2 | 37.9 | 112.5 | 제1종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3층 | 14.0 | 3층 | | 근린생 활시설 (사무 소) | 199.2 | | 3 |
| 55 | 경기 | 빅점만 화카페 | 874.9 | 221.4 | 111.0 | 334.0 | | 콘크리 트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 3층 | | 근린생 활시설 | 221.4 | | 3 |
| 56 | 경기 | 카툰팩 토리 | 11,79 9.2 | 997.7 | 77.6 | 667.8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 지하3 층/지 상9층 | 40.2 | 3층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 위락시 설 | 492.9 | | 3 |
| 57 | 경기 | 카툰트 리 | 12.18 2.04 | 1,076 .4 | 79.8 | 559.5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업무시 설,근 린생활 시설 | 지하4 층/지 상8층 | 35.9 | 지하1 층 |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 | | 지1 |
| 58 | 경기 | 구르동 만화카 페 | 14,16 4.9 | 1,357 .2 | 63.7 | 496.5 | 중심상 가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교 육연구 및복지 시설 | 지하2 층/지 상8층 | 34.3 | 5층 | | | | | 5 |
| 59 | 경기 | 컬트만 화카페 | 33.94 1.6 | 2,222 .5 | 70.5 | 797.5 | 중심상 가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교 육연구 및복지 시설 | 지하4 층/지 상12 층 | | 6층60 1호 | | | | | 6 |

| | | | | | | | | | | | | | | | |
|----|----|------------------------|--------------|-------------|------|-------|-------------------|------------------------|---|------------------------|------|--------------------------------|-------------------------|-------------|----|
| 60 | 경기 | 남만편 더안화 카페 | 4,094 .4 | 586.3 | 80.1 | 430.4 | 중심상 가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 지하2 층/지 상5층 | 26.4 | | | | |
| 61 | 경기 | 노블코 믹스 | 7,736 .6 | 592.2 | 40.5 | 683.1 | 중심상 가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업무 시설, 노유자 시설 | 지하3 층/지 상10 층 | 38.8 | 10층 | 근린생 활시설 | 574.8 | 10 |
| 62 | 경기 | 만화3 65 | 997.5 | 156.8 | 59.3 | 306.1 | 제1층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주택 | 지하1 층/지 상6층 | 18.4 | 4층 | 근린생 활시설 (사무 실) | 156.8 | 4 |
| 63 | 경기 | 코믹큐 브 | 2,737 .1 | 383.0 | 63.8 | 299.9 | 근린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2 층/지 상5층 | 23.5 | | | | |
| 64 | 경기 | 만화광 | 10,63 5.3 | 1,158 .1 | 73.3 | 492.9 | 준주거 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교육연 구시설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 지하2 층/지 상7층 | 30.8 | | | | |
| 65 | 경기 | 공통서 현점 | 5,713 .0 | 651.5 | 71.4 | 354.5 | 중심상 가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위락 시설 | 지하3 층/지 상5층 | 20.9 | | | | |
| 66 | 경기 | 유쾌한 상상 | 11,74 0.6 | 2,312 .3 | 50.6 | 198.7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교 육연구 및복지 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20.8 | | | | |
| 67 | 경기 | 하하코 믹스 | 2,545 .7 | 369.2 | 49.9 | 262.5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1.1 | 건정프 라자5 층 | 제2층 근린생 활시설 | 279.4 | 5 |
| 68 | 경기 | 만화공 간 | 638.4 | 159.2 | |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3층 | | 지하 | | | 지 |
| 69 | 경기 | 부글바 글 | 3,017 .3 | 578.8 | 59.5 | 236.5 | 제2층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13.8 | 2층 | | | 2 |
| 70 | 경기 | 만화카 페튼 | 12,13 6.4 | 839.8 | 60.0 | 599.0 | 근린상 업지역 | 철근 | 근린생 활시설 | 지하3 층/지 상11 층 | 48.7 | | | | |
| 71 | 경남 | 카툰공 감청원 롯데점 | 55,89 9.6 | 3,010 .9 | 20.6 | 181.7 | 중심상 업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판매시 설 | 지하6 층/지 상9층 | 55.3 | 창원롯데 백화점 점영플 라자7 층 | 판매시 설 | 2,949 .0 | 7 |
| 72 | 경남 | 다락만 화카페 인제대 점 | 2,508 .6 | 404.9 | 78.2 | 405.4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단독주 택,위 락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2.3 | 4층 | 일반음 식점 | 360.3 | 4 |

| | | | | | | | | | | | | | | | | |
|----|----|------------------|-------------|-------|------|-------|-------------------|--|--|------------------------|------|-------------------|----|---------------------------|-------|---------------------------------|
| 73 | 경남 | 꽃보다 민화 | 440.3 | 101.6 | 59.4 | 201.0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단독주 택 | 지하1 층/지 상4층 | 12.0 | 3층 | | 근린생 활시설 (사무 실) | 97.9 | 3 |
| 74 | 경남 | 마나보 다북카 페 | 8,199 .5 | 756.6 | 89.9 | 797.6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위락시 설, 판 매시설 | 지하2 층/지 상10 층 | 41.3 | 맷초빌 딩8층 |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 439.2 | 8 |
| 75 | 경남 | 몬스터 켓 | 978.6 | 244.7 | 78.7 | 236.2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일반숙 박시설 | 지하1 층/지 상3층 | 12.1 | | | | | |
| 76 | 경남 | 누버서 | 4,515 .2 | 392.7 | 56.4 | 555.2 | 일반상 업지구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 활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 설, 위 락, 숙 박시 설) | 지하2 층/지 상10 층 | 39.9 | 파크프 라자 | | | | |
| 77 | 경남 | 심심푸 리 | 821.4 | 226.6 | 58.6 | 212.3 | 제2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경량철 골구조 | 제2중 근린생 활시설 단독주 택 | 지하층 /지상4 층 | 15.8 | 3층 | | 제2중 근린생 활시설 | 220.6 | 3 |
| 78 | 경남 | 마나보 다만화 카페 | 1,697 .7 | 352.4 | 56.2 | 199.9 | 제2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중 근린생 활시설 (외1건) | 지하1 층/지 상4층 | 17.2 | | | | | |
| 79 | 경남 | 북앤빅 뱅진해 점 | 1,858 .4 | 554.0 | 80.5 | 270.2 | 도시지 역외1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중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4 층 | 16.2 | 조이메 디칼빌 딩2층 |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의원) | 543.9 | 2 |
| 80 | 경남 | 벌튼창 원상남 점 | 3,814 .9 | 396.8 | 58.7 | 399.6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위락시 설 | 지하2 층/지 상7층 | 31.1 | 드림디 포 | | | | 지상1 ~4층, 지하2 층불법 증축 |
| 81 | 경북 | 공툰경 주점 | 644.2 | 129.6 | 74.0 | 294.1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시멘벽 돌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 2층 | 다방 | 게임제 공업소 | 125.9 | 2 |
| 82 | 경북 | 다락 | 1,068 .9 | 291.9 | 79.1 | 127.5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경량철 골조, 벽돌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위락시 설 | 지하1 층/지 상4층 | 18.6 | | | | | |
| 83 | 경북 | 카툰박 스 | 2,502 .8 | 331.8 | 54.0 | 407.0 | 도시지 역외1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중 근린생 활시설 외1 | 지하층 /지상9 층 | 3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 경북 | 즐거운꿈마 | 945.5 | 315.2 | | | | | 철근콘크리트조외1 | 근린생활시설외1 | 지하층/지상3층 | | | | | | |
| 85 | 경북 | 심심푸리안화카페 | 848.9 | 283.0 | 69.8 | 209.4 | | 근린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3.0 | | | | | |
| 86 | 경북 | 카툰살롱안화카페 | 1,490.6 | 260.8 | 49.6 | 283.6 | | 제3종일반주거지역외1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7층 | 27.3 | | | | | |
| 87 | 경북 | 만화카페공통 | 2,519.6 | 361.8 | 47.8 | 320.9 |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하1층/지상7층 | 30.0 | 6층 | 학원 | 346.6 | 6 | |
| 88 | 경북 | 마나살롱 | 16.660.8 | 1,092.2 | 28.4 | 384.8 |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벽식라멘구조 시멘트벽돌조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1층/지상18층 | 49.7 | B동01호 | | | | |
| 89 | 경북 | 심표만화카페 | 1,374.0 | 322.9 | 58.7 | 249.7 | | 2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5층 | 20.4 | | | | | |
| 90 | 경북 | 별투안화카페구미원평점 | 588.2 | 323.3 | 78.8 | 143.5 |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2층 | 11.2 | | | | | |
| 91 | 광주 | 폴덤 | 420.7 | 289.4 | 53.4 | 82.4 | | 일반주거지역 | 조립식판별 |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2층 | 8.5 | | | | | |
| 92 | 광주 | 휴안 | 1,462.5 | 402.9 | 69.7 | 253.0 | | 근린상업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 지하층/지상4층 | | 4층 | 의원 |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 | 지상1층(소매점) 무단중축 | 4 |
| 93 | 광주 | 떼글데굴 | 3,655.0 | 498.4 | 58.7 | 347.8 |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32.5 | | | | | |
| 94 | 광주 | 봄들 | 1,364.1 | 222.2 | 13.8 | 34.0 | | 자연녹지지역외2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1.2 | 이레마트1관3층 |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 182.6 | 3 |
| 95 | 광주 | 마시보구 | 2,409.8 | 507.7 | 85.0 | 403.3 |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6층 | 26.2 | 2층 | 위락시설(유흥주점) | 휴게음식점 | 469.0 | 2 |
| 96 | 광주 | 카툰스토리 | 1,150.7 | 259.6 | 46.4 | 205.5 |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5층 | 19.2 | | | | | |
| 97 | 광주 | 카툰앤북카페 | 898.8 | 236.7 | 73.1 | 277.6 |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5층 | 21.0 | | | | | |

| 애니타임 | | | | | | 조 | | 층 | | | | | | | | | |
|------|----|----------|----------|---------|------|-------|--------------|------------------|--------------------------------|-----------|-------|-----------|---------------------------|-------------------|---------|--------------------|----|
| 98 | 광주 | 벌튼광주신창점 | 395.3 | 142.8 | 59.8 | 165.4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단독주택 | 지하층/지상3층 | 10.6 | | | | | | |
| 99 | 광주 | 만화카페다락 | 870.0 | 316.6 | 59.9 | 164.6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8.6 | 3층 | 노래연습장 | 276.7 | 3 | | |
| 100 | 광주 | 폴덤충장점 | 1,384.6 | 336.1 | 78.9 | 325.2 | 중심상업지역 | 일반철골콘크리트 구조 | 소매점, 일반 음식점, 사무소, 학원 | 지하층/지상5층 | 22.9 | 천하빌딩 | | | | | |
| 101 | 대구 | 폴캠코믹스 | 1,256.6 | 282.2 | 74.3 | 272.8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18.0 | 지하1층(로드뷰) | 일반음식점 | 샤진관 | 220.5 | 옥상층(5층) 조립식 판별무단중축 | 지1 |
| 102 | 대구 | 잭캠박스 | 314.7 | 134.6 | 59.6 | 139.2 | 도시지역외1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1.0 | 2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119.6 | 2 | | |
| 103 | 대구 | 쌈쌈맘 | 3,313.6 | 441.7 | 79.4 | 524.8 | 제3종 일반주거지역외1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위락 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 시설 등 | 지하1층/지상8층 | 31.9 | | | | | | |
| 104 | 대구 | 벌튼동성로 | 3,053.8 | 527.2 | 79.9 | 391.2 | 중심상업지역 | 일반철골구조, 블록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0.7 | | | | | | |
| 105 | 대구 | 신나는북새통 | 9,055.3 | 1,231.0 | 68.7 | 348.9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철골구조 | 일반음식점 | 지하2층/지상7층 | | 프라이빗지하2층 | 전기, 기계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 37.8 | 지2 | | |
| 106 | 대구 | 쪽방길꼭3지구점 | 2,910.5 | 505.5 | 70.2 | 332.7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7.4 | 4층 | 교육연구시설(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63.9 | 4 | |
| 107 | 대구 | 콩토상인점 | 2,249.9 | 450.0 | 49.8 | 249.2 | 제3종 일반주거지역외1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5층 | 22.1 | 403호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 450.0 | 4 | |
| 108 | 대구 | 카페더카툰 | 5,952.4 | 812.6 | 70.0 | 422.8 | 근린상업지역 | 콘크리트 구조 |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7층 | 318.0 | 대보빌딩7층 | | 근린생활시설 | 694.1 | 7 | |
| 109 | 대구 | 다락방만화카페 | 29,989.4 | 1,836.9 | 38.9 | 499.3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2층/지상7층 | 74.5 | 전전트원밸리 | | 근린생활시설 | 1,118.2 | 2 | |

| | 패 | | | | | 구조 | 파트) | 상25 층 | 스상가 205호 | | | | | | | | |
|-----|----|------------------------|--------------|-------------|------|-------|-------------------|--------------------------------|---|-------------------|------|------------------|--------------------|--|-------------|------------------------------|---|
| 110 | 대구 | 코믹스 스토리 | 1,990 .5 | 372.2 | 68.7 | 306.5 | 일반상 업외 | 철근콘 크리트 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5층 | 22.2 | 3층 | 의원 | 근린생 활시설 (학원) | 3 | | |
| 111 | 대전 | 심심푸 리대전 가수원 점 | 3,577 .5 | 561.9 | 60.0 | 299.0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6층 | 30.0 | | | | | | |
| 112 | 대전 | 다락만 화카페 대전점 | 2,260 .3 | 352.7 | 69.6 | 371.2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교육연 구시설 | 지하1 층/지 상7층 | 26.0 | 정우빌 딩4층 | 교육연 구시설 (학원)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휴게 음식점) | 36.3 | 4 | |
| 113 | 대전 | 깍뚝 | 3,383 .4 | 533.0 | 60.0 | 299.8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8.8 | 도안시 타타워 5층 |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 359.4 | 5 | |
| 114 | 대전 | 신나는 복새동 (동구) | 1,447 .4 | 393.5 | 59.5 | 163.4 | 2중일 반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시멘트 벽돌조 | 공동주 택,시 상 | 지하1 층/지 상3층 | 11.2 | 지하1 층 | | 시장 | 367.2 | 지1 | |
| 115 | 대전 | 마실 | 794.8 | 220.6 | 56.7 | 155.6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3층 | 11.2 | 지하1 층 |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 189.4 | 지1 | |
| 116 | 대전 | 복적복 적 | 3,746 .7 | 718.5 | 69.9 | 216.0 | 준주거 지역 | 철골조 철근 콘크리 트구조 | 제2층 근린생 활시설 | 지하2 층/지 상4층 | 17.0 | 미래빌 2층 | | 제2층 근린생 활시설 | 687.5 | 2 | |
| 117 | 대전 | 다락만 화카페 충대점 | 4,011 .6 | 489.4 | 69.9 | 493.8 | 준주거 지역 | 일반철 골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판매시 설 | 지하1 층/지 상9층 | 37.2 | 누드캐 슬빌딩 | | | | | |
| 118 | 대전 | 카툰공 감대전 관저점 | 430.6 | 173.6 | 59.9 | 148.4 | 제1층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다가구 주택(4 가구) 제1층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3 층 | 10.5 | 1층 |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소매 점) | 151.1 | 1 | |
| 119 | 대전 | 심심푸 리(대 전) | 9,413 .6 | 1,010 .3 | 74.8 | 537.4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판 매시 설, 운동시 설 | 지하2 층/지 상8층 | 34.7 | | | | | | |
| 120 | 대전 | 수상한 다락방 | 14,61 1.7 | 1,475 .0 | 67.6 | 512.8 | 일반상 업지역 | 일반철 골구조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교육 연구및 복지시 설,판 매및영 업시설 | 지하2 층/지 상8층 | 35.1 | 금강프 라자4 층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 교육연 구및복 지시설 제1층 근린생 활시설 | 1,402 .1 | 109,1 12,11 3호무 단중축 | 4 |

| | | | | | | | | | | | | | | | | |
|-----|----|-------------------|--------------|-------------|------|-------|-----------------|--|---|------------------------|------|------------------|---------------------------|---|-------|----|
| 121 | 부산 | 노리코 믹스 | 2,431 .3 | 410.2 | 75.9 | 366.4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외 | 지하1 층/지 상5층 | 17.0 | 3층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 409.3 | 3 | |
| 122 | 부산 | 소통 | 61,85 1.4 | 3,807 .2 | 60.0 | 622.8 | 준주거 지역외 1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공동주 택, 근 린생 활시 설, 운동시 설 | 지하5 층/지 상30 층 | 90.5 | | | | | |
| 123 | 부산 | 삼삼푸 리 | 6,946 .0 | 952.4 | 80.0 | 484.0 | 일반상 업지역 | | | | | | | | | |
| 124 | 부산 | 티앤북 스 | 8,948 .5 | 2,077 .8 | 80.0 | 260.3 | 일반상 업지역 외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운동시 설 | 지하1 층/지 상4층 | 20.1 | 네오스 퀘어 | | | | |
| 125 | 부산 | 오심콩 만화카 페 | 1,704 .1 | 228.7 | 80.5 | 548.7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7층 | 29.3 | 동춘빌 딩5층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의원) | 228.7 | 5 | |
| 126 | 부산 | 원더코 믹스 | 1,654 .8 | 281.7 | 84.7 | 419.5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상 고 | 지하1 층/지 상5층 | | 2층 | 근린생 활시설 (다방) | 281.7 | 2 | |
| 127 | 부산 | 안녕만 화카페 야 | 970.2 | 150.1 | 59.5 | 315.6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조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업무시 설 | 지하1 층/지 상6층 | 17.9 | 2층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 146.9 | 2 | |
| 128 | 부산 | 만화카 페섬해 운대점 | 989.5 | 196.2 | 59.3 | 228.8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주막, 교육연 구및복 지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12.6 | 3층 | 교육연 구시설 (학원)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인터 넷컴퓨 터개업 시설제 공업소) | 187.0 | 3 |
| 129 | 부산 | 만화를 부탁해 | 2,078 .2 | 353.1 | 84.6 | 423.2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유형주 점 | 지하1 층/지 상5층 | 18.1 | 5층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다방) | 판매시 설(인 터넷컴 퓨터개 업시설 제공업 의시설) | 90.1 | 5 |
| 130 | 부산 | 순정살 똥 | 181.3 | 90.6 | |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2 층 | | 2층 | 근린생 활시설 (다방) | 90.6 | 2 | |
| 131 | 서울 | 만화산 땡 | 1,735 .9 | 270.8 | 49.6 | 246.4 | 일반상 업지역 외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일반업 무시설 | 지하1 층/지 상5층 | 18.3 | 삼화빌 딩지하 1층 | 소매점 , 판매 시설 | 인터넷 컴퓨터 개업시 설제공 업 | 223.6 | 지1 |

| | | | | | | | | | | | | | | | | |
|-----|----|-------------|---------|-------|------|-------|-----------|------------------|--------------------|-----------|--------|-------------|----------------------------|------------------|-------|----|
| 132 | 서울 | 만화가 페다릭 | 2,471.0 | 377.3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5층 | | 근린생활시설 | 145.1 | 5 | |
| 133 | 서울 | 만화가 패성영 등포점 | 899.9 | 152.4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영인빌딩3층 | | | | 3 | |
| 134 | 서울 | 수만화 카페 | 1,833.7 | 370.0 | 60.0 | 237.9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14.0 | 지하1층 | 일반음식점 | 365.8 | 지1 | |
| 135 | 서울 | 만화가 페휴 | 1,148.7 | 303.0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점포 | 지하1층/지상4층 | | 지하 | 제2층 근린생활시설 (점소년개업제공업의시설) | 220.6 | 지 | |
| 136 | 서울 | 만화가 페휴 | 970.0 | 279.4 | 52.8 | 140.7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 지하 | 제2층 근린생활시설 (인터넷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225.1 | 지 | |
| 137 | 서울 | 달콤만화카페 | 729.6 | 124.1 | 59.8 | 287.3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0.4 | 지하1층 | 서점 | 일반음식점 | 115.7 | 지1 |
| 138 | 서울 | 카페데코믹스 신림점 | 698.4 | | |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0.2 | 3층 | 사무실 | 174.5 | 3 | |
| 139 | 서울 | 만화보논패드카페 | 1,045.7 | 154.4 | 60.0 | 326.1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외1 | 지하1층/지상6층 | 19.3 | 이엔에스빌딩 지하1층 |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소) | 제2층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149.8 | 지1 |
| 140 | 서울 | 만화가 페휴 | 1,034.5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무실, 점포, 탁구장 | 지하1층/지상3층 | | 서랑빌딩 지하1층 | 사무실 | 188.4 | 지1 | |
| 141 | 서울 | 만화가 페휴 | 2,232.3 | 320.2 | 57.6 | 342.0 | 일반상업지역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7층 | 26.6 | | | | | |
| 142 | 서울 | 만화가 페휴 | 801.0 | 159.0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 지하1층 | 근린시설 | 170.6 | 지1 | |
| 143 | 서울 | 섬포 | 1,191.3 | 272.9 | 53.1 | 165.9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0.6 | 지하1층 | 제2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338.7 | 지1 | |

| | | | | | | | | | | | | | | | | | | | |
|-----|----|-------------------|-------------|-------|------|-------|--|--|-------------------|----------------------------------|--------------------------------|-------------------|------------|--------------------------|--------------------------------------|--------------------------------|-------|---|----|
| 144 | 서울 | 심곡달 공민화 카페 | 1,148 .1 | | | | | | 제3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사무실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2층 | | | | | | | |
| 145 | 서울 | 만화가 페휴 | 530.8 | | | | | | 제3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3층 | 지하1 층 | 근린생 활시설 | 149.0 | | | 지1 | |
| 146 | 서울 | 만화가 페휴 | 947.0 | 160.5 | 46.5 | 214.0 |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단독주 택, 근 린생 활 시설 | 지하1 층/지 상5층 | 14.9 | | | | | | | |
| 147 | 서울 | 마나보 다문화 카페 | 1,478 .5 | 293.9 | 51.1 | 176.8 | | | 제2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오정빌 딩2층 | | | | | 2 | |
| 148 | 서울 | 만화가 페싱강 남역점 | | | | | | | | | | | 2층 | | | | | 2 | |
| 149 | 서울 | 만화가 페점 | 699.0 | 147.0 | 58.1 | 199.6 | | | 제2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13.4 | 2층 | 제2중 근린생 활시설 (사무 소) | 제2중 근린생 활시설 (학원) | 146.5 | | 2 |
| 150 | 서울 | 꽃샘코 믹스 | 1,666 .9 | 260.6 | 50.7 | 274.0 | |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교육연 구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0.0 | 지하1 층 | 대중음 식점 | 교육연 구시설 | 257.4 | 지1층 복층설 치반차 높리(2 .1m) 위반 | 지1 |
| 151 | 서울 | 콩툰청 담점 | 2,353 .5 | 367.0 | 53.4 | 183.0 | | | 제3중 일반주 거지역 | 일반철 골구조 , 철근 콘크리 트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4 층/지 상5층 | 20.8 | 청담C GV지 하2층 | 제2중 근린생 활시설 | 282.2 | | 지2 | |
| 152 | 서울 | 만화가 페휴 | 2,902 .5 | 693.1 | | | | | 제1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영동빌 딩2층 | 근린생 활시설 , 숙박 시설 | 693.1 | | | 2 | |
| 153 | 서울 | 카툰클 럽 | 4,035 .1 | 808.0 | 19.5 | 79.1 | |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중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18.8 | 지하1 층 | 제2중 근린생 활시설 (일반 음식점) | 630.4 | | 지1 | |
| 154 | 서울 | 장만동 | 493.5 | 83.9 | 49.8 | 248.6 | | | 제2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5층 | 15.1 | 지하1 층 | 근린생 활시설 (다방) | 제2중 근린생 활시설 (사무 소) | 74.8 | | 지1 |
| 155 | 서울 | 만화가 페가이 야 | 6,838 .5 | 511.9 | 48.2 | 324.6 | |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일반업 무시설 , 근린 생활 시설 | 지하4 층/지 상7층 | 24.8 | 지하1 층 | 근린생 활시설 (대중 음식점) | 549.7 | | 지1 | |
| 156 | 서울 | 즐거운 작당 | 995.9 | 217.9 | 59.9 | 199.6 | | | 제2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 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14.2 | 지하1 층 | | | | 지1 | |

| | | | | | | | | | | | | | | | | |
|-----|----|---------------|-----------|----------|------|-------|------------|----------------------|--|------------|------|---------|----------------|------------|-------|---|
| 157 | 서울 | 청춘문화사옥 | 867.8 | 259.0 | 58.4 | 195.6 | 제2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4.3 | 삼이빌딩 | | | | |
| 158 | 서울 | 당골딩굴알타미라 | 2,025.4 | 243.3 | 59.9 | 394.3 | 제3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7층 | 23.7 | | | | | |
| 159 | 서울 | 마나배달 | 152.569.1 | 11,438.9 | 59.8 | 492.2 | 제1층 일반사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방송통신시설 | 지하4층/지상2층 | 99.9 | 지하1층 | 근린생활시설 | 지1 | | |
| 160 | 서울 | 클럽보다문화 | 1,531.4 | 198.3 | 59.9 | 362.1 | 제1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7층 | 22.8 | 2층 | 일반음식점 | 194.6 | 2 | |
| 161 | 서울 | 로빈스에그 | 1,374.1 | 218.0 | 49.1 | 245.7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 지하1층 |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 284.3 | 지1 | |
| 162 | 서울 | 만화가페나무 | 193.1 |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2층 | | 2층 | 의원 | 94.6 | 2 | |
| 163 | 서울 | 카페데코믹스신촌점 | 685.3 | 135.8 | 46.5 | 193.6 | 제2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15.0 | | | | | |
| 164 | 서울 | 카툰공감신문점 | 4,070.5 | 429.1 | 57.9 | 389.1 | 제3층 일반주거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8층 | 33.5 | 독수리빌딩5층 |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406.0 | 5 | |
| 165 | 서울 | 만화가페휴 | 905.0 | 226.3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 3층 | 미용원 | 226.3 | 3 | |
| 166 | 서울 | 만화북카페릴링 | 3,295.4 | 665.6 | 59.6 | 199.8 | 제2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아파트 및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10층 | 33.3 | | | | | |
| 167 | 서울 | 책보는고릴라 | 623.3 | 163.1 | 59.4 | 174.2 | 제3층 일반주거지역 | 철골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2.3 | 3층 | 근린생활시설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163.1 | 3 |
| 168 | 서울 | 효자동만화방(만화카페휴) | 960.5 |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 서울 | 무림만 화카페 | 2,011 .6 | 353.1 | 82.2 | 372.8 | 일반상 업지역 | 경량철 골조,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 지하2 층/지 상5층 | 5층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비대 오물감 상실)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소매 점) | 247.3 | 5 | |
| 170 | 서울 | 연극보 다만화 | 497.4 | 86.3 | 49.8 | 208.4 | 제1종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5층 | 13.8 | 지하1 층 | 근린생 활시설 (소매 점) | 근린생 활시설 (일반 음식점) | 136.5 | 지1 |
| 171 | 울산 | 코믹프 레스 | 4,994 .2 | 514.9 | 69.9 | 614.6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위락시 설 | 지하2 층/지 상8층 | 29.5 | 플러프 리자7 01호 | 휴게음 식점 | (x/45 7.02) | 7 | |
| 172 | 울산 | 썸튼 | 1,978 .6 | 285.5 | 69.1 | 417.0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경량 철골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8층 | 33.0 | | | | | |
| 173 | 울산 | 마나보 다 | 532.8 | 200.2 | 59.8 | 159.2 | 2종일 반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층 /지상3 층 | 11.6 | | | | | |
| 174 | 울산 | 마나보 다 | 1,283 .1 | 351.8 | 53.5 | 195.0 | 일반주 거지역 | 철골조 외 |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4 층 | 19.1 | 3층 | 근린생 활시설 (음식 점) | 317.5 | 3 | |
| 175 | 울산 | 마나보 다 | 2,126 .8 | 340.6 | 68.3 | 353.1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경량 철골조 | 근린생 활시설 ,위락 시설, 주차장 | 지하1 층/지 상6층 | 20.5 | | | | | |
| 176 | 울산 | 마나보 다 | 695.2 | 241.1 | 65.8 | 189.8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3 층 | 11.9 | | | | | |
| 177 | 울산 | 카페샬 롱만화 카페 | 720.8 | 370.0 | 59.8 | 116.6 | 일반주 거지역 | 철골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2 층 | 9.5 | 2층 | 근린생 활시설 | 350.8 | 2 | |
| 178 | 울산 | 별투울 산삼산 점 | 4,994 .2 | 514.9 | 69.9 | 514.6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위락시 설 | 지하2 층/지 상8층 | 29.5 | 울산플 리프라 자 | | | | |
| 179 | 울산 | 공투울 산동구 점 | 18,56 3.4 | 4,455 .5 | |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4층 | 29.3 | | | | | |
| 180 | 울산 | 패밀리 룩카페 | 9,030 .3 | 2,071 .0 | 79.8 | 273.1 | 일반상 업지역 | 일반철 골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교육연 구시설 ,업무 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23.0 | 지팜프 리자3 층314 호 | 교육연 구시설 ,제1종 근린생 활시설 | 157.3 | 3 | |
| 181 | 인천 | 더쿠스 | 4,146 .7 | 666.6 | 59.2 | 283.8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운동 | 지하층 /지상1 층 | 24.1 | | | | | |

| 시설 | | | | | | | | | | | | | | | | |
|-----|----|-----------|----------|---------|------|-------|------------|---------------|-------------------------------------|------------|------|---------|-----------------------------|-----------------|-------|---|
| 182 | 인천 | 공통연수점 | 1,786.1 | 236.6 | 67.1 | 401.4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6층 | 24.4 | 3층 | 제2층 근린생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222.6 | 3 | |
| 183 | 인천 | 마나박스 | 4,738.0 | 898.6 | 85.3 | 426.2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17.1 | | | | | |
| 184 | 인천 | 정글북 | 3,007.0 | 531.7 | 69.7 | 271.9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지하2층/지상4층 | 19.4 | | | | | |
| 185 | 인천 | 매년의 만화소굴 | 3,603.6 | 351.2 | 78.9 | 772.4 | 일반상업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외1 | 지하1층/지상10층 | 37.5 | | | | | |
| 186 | 인천 | 우리들 세상 | 11,328.4 | 1,383.5 | 67.6 | 360.1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 지하3층/지상6층 | 22.4 | 스타바루투4층 | 일반음식점 | | 4 | |
| 187 | 인천 | 달콤이커피공장 | 290.8 | 102.6 | 59.8 | 169.5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가구주택 | 지하층/지상3층 | 11.3 | | | | | |
| 188 | 인천 | 카페하이다 | 533.6 | 144.3 | 89.8 | 249.8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0.0 | | | | | |
| 189 | 인천 | 애견가페반려견 | 922.2 | 328.6 | 37.0 | 103.7 | 제1층 일반주거지역 | 일반철골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1.0 | 3층 | 제2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제2층 근린생활시설 (학원) | 313.2 | 3 |
| 190 | 인천 | 길업마의다락방카페 | 15,597.3 | | | | 제1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 지하2층/지상10층 | 44.9 | 탑프라자 | | | | |
| 191 | 전남 | 청춘문화살롱 | 2,181.2 | 539.7 | 59.7 | 179.1 | 일반주거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8.6 | 2층 | 휴게음식점 | 41.0 | 2 | |

| | | | | | | | | | | | | | | | | |
|-----|----|----------|---------|-------|------|-------|------------|--------------------|-------------------|-----------|------|--------|----------------|-------------------|-------|---|
| 192 | 전남 | 심삼푸리 | 1,082.2 | 248.2 | 68.8 | 262.1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외1 | 지하1층/지상4층 | 13.6 | | | | | |
| 193 | 전남 | 별통수천본점 | 1,928.5 | 734.9 | 88.6 | 232.5 | 일반상업지역 | 일반철골구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5.9 | 201호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226.2 | 2 |
| 194 | 전남 | 별통여수학동본점 | 1,414.0 | 368.1 | 85.5 | 317.1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5층 | 20.9 | | | | | |
| 195 | 전남 | 마니바 | 2,118.1 | 313.8 | 86.6 | 519.6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4.0 | | | | | |
| 196 | 전남 | 공통목포하당점 | 612.2 | 294.1 | 68.3 | 198.9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1 | 지하층/지상3층 | 10.1 | 2층 | 사무실 | 204.1 | 2 | |
| 197 | 전남 | 공통수천점 | 1,245.1 | 375.6 | 70.0 | 232.0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지하층/지상4층 | 18.3 | 2층 | 휴게음식점 | 375.6 | 2 | |
| 198 | 전북 | 만화다방 | 892.1 | 256.4 | 59.1 | 205.6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8.4 | 2층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 256.4 | 2 |
| 199 | 전북 | 코믹스월드 | 452.9 | 147.1 | 49.5 | 152.2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영업소 | 지하층/지상4층 | | 2층 | 영업소 | 147.1 | 2 | |
| 200 | 전북 | 큐브 | 898.2 | 316.2 | 86.6 | 246.0 | 일반상업 | 철골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1.5 | 3층 | 당구장 | 316.2 | 3 | |
| 201 | 전북 | 카툰하우스 | 970.4 | 290.5 | 61.7 | 206.2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8.5 | | | | | |
| 202 | 전북 | 별통신사가지점 | 2,997.0 | 550.2 | 68.9 | 309.8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6.0 | | | | | |
| 203 | 전북 | 만화야놀사 | 430.1 | 87.1 | 59.2 | 225.4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라브지붕 | 근린생활시설, 주택 | 지하1층/지상5층 | 12.9 | | | | | |
| 204 | 전북 | 패밀리북카페패북 | 664.4 | 166.6 | 36.2 | 106.8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 | | | | |
| 205 | 전북 | 애니숲 | 6,844.2 | 897.8 | 79.4 | 425.9 | 도시지역외1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지하2층/지상8층 | 34.0 | 2층205호 | 소매점 | 113.2 | 2 | |

| | | | | | | | | | | | | | | | |
|-----|----|-----------|---------|-------|------|-------|------------|------------------|----------------------------|-----------|------|----|------------------|-------|---|
| 206 | 전북 | 별문군 산본점 | 997.5 | 332.7 | 57.3 | 171.9 | 일반상업지역 외1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5층 | 21.4 | | | | |
| 207 | 전북 | 부카페 만화 | 502.2 | 152.3 | 69.9 | 230.4 | | 철골콘크리트 구조 | 제1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 | | | |
| 208 | 제주 | 공통제주동흥점 | 1,096.5 | 197.0 | 59.6 | 374.6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5.3 | | | | |
| 209 | 제주 | 골소녀점방안화카페 | 487.9 | 128.6 | 84.9 | 282.7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4.9 | | | | |
| 210 | 제주 | 별문제주시청점 | 2,579.5 | 304.0 | 59.2 | 448.7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 | 지하1층/지상8층 | 29.3 | 4층 | 제2층 근린생활시설 (담구장) | 304.0 | 4 |
| 211 | 제주 | 공통제주서귀포점 | 1,563.1 | 397.8 | 79.7 | 313.2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 | | | |
| 212 | 제주 | 딩골만화카페 | 2,638.0 | 365.4 | 38.1 | 239.6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철골조 | 업무시설,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독서실 | 지하1층/지상7층 | 26.6 | 5층 | 업무시설(사무소) | 111.9 | 5 |
| 213 | 제주 | 송툰 | 840.6 | 164.7 | 72.8 | 313.2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위락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18.0 | | | | |
| 214 | 충남 | 크쿠만 화방 | 315.9 | 158.9 | 32.3 | 64.2 | 계획관리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2층 | 9.7 | | 지역센터마을활력소 | | |
| 215 | 충남 | 코믹몬스터 | 1,503.8 | 303.1 | 55.3 | 227.7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지하1층/지상5층 | 22.6 | 2층 | 제1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299.5 | 2 |
| 216 | 충남 | 신부동만화카페 | 3,650.9 | 966.6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3.0 | 1층 | 소매점 | 122.5 | 1 |
| 217 | 충남 | 만화가페마일 | 494.0 | 192.4 | 54.8 | 140.8 | 제1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 제1,2층 근린 | 지하층/지상3 | 11.6 | | | | |

| | | | | | | | | 거지역 | | 구조 | | 생활시 설 | | 층 | | | | | | |
|-----|----|--------------------|-------------|-------|------|-------|------------------|---------------------------------|--------------------------------------|------------------------|------|-------------------|-------------------|--|-------|--|--|--|---|----|
| 218 | 충남 | 카툰1 974만 화카페 | 1,125 .0 | 313.4 | 56.0 | 150.0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시멘트 벽돌조 | 근린생 활시설 ,주택 | 지하1 층/지 상4층 | 11.5 | | | | | | | | | |
| 219 | 충남 | 만화의 주역 | 356.7 | 122.4 | 59.7 | 173.8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조적 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주 택 | 지하층 /지상3 층 | 11.1 | | | | | | | | | |
| 220 | 충남 | 보물섬 | 1,846 .6 | 300.9 | 59.6 | 353.8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 지하층 /지상8 층 | 28.0 | | | | | | | | | |
| 221 | 충남 | 툰하우 스 | 491.7 | 142.6 | 59.5 | 163.9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조적 조 | 근린생 활시설 ,단독 주택 | 지하1 층/지 상3층 | 10.7 | 2층 | | 제2중 근린생 활시설 (인터 넷컴퓨 터개업 시설제 공업소 | 126.2 | | | | 2 | |
| 222 | 충남 | 깨비코 믹스 | 2,691 .8 | 321.8 | 71.7 | 563.0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업무시 설,근 린생활 시설, 단독주 택 | 지하1 층/지 상8층 | 30.2 | 충남빌 딩3층 | 업무시 설(사 무소) | 제1중 근생(의원) | 319.7 | | | | | 3 |
| 223 | 충남 | 노라터 | 2,842 .0 | 681.7 | 59.8 | 246.8 | | 철근콘 크리트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 지하층 /지상5 층 | 21.7 | | | | | | | | | |
| 224 | 충북 | 곰마 | 2,029 .5 | 497.6 | | | 일반주 거지역 | 라멘조 | 근린생 활시설 ,업무 시설, 주택 | 지하1 층/지 상4층 | | | | | | | | | | |
| 225 | 충북 | 아지트 | 4,595 .6 | 509.6 | 64.3 | 499.5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오피 스텔 | 지하1 층/지 상14 층 | 51.6 | 4층 | | 의원 | 428.9 | | | | | 4 |
| 226 | 충북 | 막톤 | 915.2 | 189.8 | 57.6 | 221.7 | 2중일 반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중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4층 | 14.9 | 지하1 층 | | 일반음 식점 | 184.6 | | | | | 지1 |
| 227 | 충북 | 코믹스 토리 | 7,208 .8 | 768.5 | 69.9 | 487.6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중 근린생 활시설 | 지하2 층/지 상7층 | 31.4 | 율량센 터프라 자3층 | | 제1중 근생(의원) | 765.7 | | | | | 3 |
| 228 | 충북 | 안녕만 화 | 994.1 | 219.6 | 86.2 | 317.6 | 근린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주택 | 지하1 층/지 상4층 | 14.9 | 명동빌 딩3층 | | 사무실 | 216.3 | | | | | 3 |
| 229 | 충북 | 정글북 카페 | 754.1 | 251.4 | 57.7 | 173.2 | 2중일 반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3 층 | 14.1 | 2층 | | 사무소 | 251.4 | | | | | 2 |
| 230 | 충북 | 책다방 | 2,068 .5 | 277.0 | 70.0 | 369.2 | 근린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 지하2 층/지 상7층 | 26.7 | 동익프 라자5 층 | 학원 | 의원 | 253.1 | | | | | 5 |

| 설 | | | | | | | | | | | | | | | | | |
|-------------|-----|----------|----------|---------|------|-------|------------|-------------------|--|------------|------|---------------|--------------------------|---------------|-------|-----------------------|--|
| 231 | 충북 | 애니타임 | 1,689.8 | 336.8 | 59.3 | 248.2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단독주택 | 지하1층/지상5층 | 23.8 | 노아빌딩2층 | 사무소 | 297.3 | 2 | | |
| 232 | 충북 | 콩이네 만화가페 | 855.4 | 170.7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 3층 | 점포 | 170.7 | 3 | | |
| 브랜드키즈카페(98) | | | | | | | | | | | | | | | | | |
| 1 | 강원도 | 원주단계점 | 11,776.8 | 1,595.0 | 74.6 | 462.6 | 일반상업지역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 지하1층/지상8층 | 33.6 | 5층 | 휴게음식점 | 48.4 | 5 | 피난설비(방화문 및 도어클로저 미설치) | |
| 2 | 강원도 | 원주단계점 | 6,147.7 | 909.7 | 77.0 | 454.3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6.0 | 대신빌딩402호 | 업무시설(금융업소) | 휴게음식점 | 224.4 | 4 | |
| 3 | 강원도 | 춘천C GV점 | 47,283.6 | 2,998.8 | 60.0 | 460.6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 문화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지하6층/지상10층 | 65.1 | 1층 | 판매시설 | 휴게음식점 | 17.6 | 1 | |
| 4 | 강원도 | 혁신점 | 17,115.8 | 1,904.5 | 78.3 | 523.6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하3층/지상8층 | 35.7 | 세영에비뉴파크3차406호 | 판매시설(인터넷컴퓨터개입시설, 공공업무시설) | 436.4 | 4 | | |
| 5 | 경기 | 고양삼송점 | 5,254.6 | 558.8 | 69.8 | 477.4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2층 근생, 교육연구시설(학원) | 지하2층/지상7층 | | 새한일프라자301호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 549.9 | 3 | | |
| 6 | 경기 | 구리돌다리점 | 2,513.9 | 627.6 | 63.1 | 180.6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2.0 | | | | | | |
| 7 | 경기 | 구리수택점 | 3,677.7 | 426.5 | 69.8 | 557.5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라멘 및 벽식 구조 |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2층/지상10층 | 36.0 | 2층 | 업무시설(사무소) | 제2종 근생(일반음식점) | 347.4 | 2 | |
| 8 | 경기 | 동탄2신도시점 | 6,685.4 | 817.9 | 70.2 | 401.2 | 근린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 | 지하2층/지상7층 | 30.8 | 비전프라자3층 | 제2종 근생(일반음식점) | 208.5 | 3 | | |

| 시설 | | | | | | | | | | | | | | | | |
|----|----|-----------------|----------|---------|------|-------|------------|-------------------|---|------------------------|------|-----------------|--|--------------------------|-------|---|
| 9 | 경기 | 동탄남 광장점 | 19,659.7 | 1,365.3 | 74.3 | 800.3 | 중심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업 무시설 ,교육 연구시 설,중 교시설 ,공동 주택 | 지하3 층/지 상12 층 | 53.8 | 스타 워301 호 | 제2종 근생(일반음 식점) | 212.6 | 3 | |
| 10 | 경기 | 동탄점 | 3,986.7 | 486.4 | 69.9 | 399.8 | 근린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의료시 설 | 지하2 층/지 상7층 | 26.9 | 1층 | 제1종 근생(소매점) | 제1종 근생(휴게음 식점) | 240.5 | 1 |
| 11 | 경기 | 모란역 점 | 8,034.1 | 757.4 | 75.2 | 651.2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일반개 입제공 업의시 설,제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2 층/지 상11 층 | 38.0 | 지하1 층 | | | 지1 | |
| 12 | 경기 | 미금역 점 | 9,556.9 | 1,003.9 | 70.1 | 432.0 | 중심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라멘조 | 근생, 업무시 설,교 육연구 시설 | 지하3 층/지 상8층 | 26.6 | 405호 | 제2종 근생(멀티미 디어문 화컨테 너블비 제공사) | 운동시 설(골 프연습 장) | 238.8 | 4 |
| 13 | 경기 | 부천중 동점 | 7,152.2 | 535.0 | 69.1 | 633.9 | 중심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위 리시설 ,판매 시설 | 지하4 층/지 상10 층 | 42.0 | 4층 | 판매시 설(멀 티미디 어문화 컨테너 설비제 공사) | 제2종 근생(일반음 식점) | 297.7 | 4 |
| 14 | 경기 | 부천점 | 8,465.6 | 912.2 | 78.7 | 472.5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위 리시설 | 지하3 층/지 상7층 | 28.5 | 302호 | 제1종 근생(의원) | 제2종 근생(당구장) | 124.2 | 3 |
| 15 | 경남 | 거제도 아주점 | 531.4 | 280.4 | 64.2 | 121.7 | 일반상 업지역 | 일반철 골구조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2 층 | 8.5 | 1층 | 제1종 근생(소매점) | 제1종 근생(휴게음 식점) | 271.5 | 1 |
| 16 | 경남 | 경남양 산웅상 점 | 2,316.2 | 264.7 | 67.6 | 514.9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숙박시 설,제1 ,2종근 린생활 시설 | 지하1 층/지 상8층 | 33.0 | 3층 | | 제1종 근생 | 226.2 | 3 |
| 17 | 경남 | 경남양 산점 | 6,666.4 | 816.9 | 79.6 | 481.5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교 육연구 시설 | 지하2 층/지 상7층 | 37.1 | 나래프 라자4 층 | | 제2종 근생 | 127.0 | 4 |
| 18 | 경남 | 김해상 계점 | 7,788.8 | 741.5 | 79.4 | 724.9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2 층/지 상10 층 | 35.6 | 303호 | | 제1종 근생(한의원) | 178.7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업 무,시 교육 연구시 설 | 총 |) | | | | |
| 19 | 경남 | 김해외 동점 | 3,204 .1 | 474.3 | 76.4 | 435.4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조적조 | 제1,2 중근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3.0 | 3층 | 의원 | 474.3 | 3 | |
| 20 | 경남 | 김해인 제대점 | 2,803 .3 | 460.8 | 79.1 | 395.5 | 일반상 업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제1,2 중근생 활시설, 판매시 설 | 지하1 층/지 상5층 | | 5층 | 제2중 근생(사무소 ,노래 연습장) | 제2중 근생(체육도 장) | 460.8 | 5 |
| 21 | 경남 | 김해장 유점 | 14,50 5.6 | 1,049 .5 | 74.7 | 805.0 | 중심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중 근생 활시설, 인마 시술소, 위락 시설 | 지하3 층/지 상12 층 | 43.6 | 2층 | 제2중 근생(일반음 식점) | 판매시 설(계 임제공 업소) | 202.9 | 2 |
| 22 | 경남 | 마산경 남대점 | 4,012 .5 | 480.7 | 89.3 | 563.7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생 활,속 박시설, 위락 시설 | 지하2 층/지 상7층 | 25.8 | 월영빌 당303 ,304 호 | 근생 | 347.9 | 3 | |
| 23 | 경남 | 진주경 상대점 | 4,638 .4 | 540.9 | 70.6 | 456.4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중 근생 활시설 | 지하2 층/지 상7층 | 30.8 | 2층 | 제2중 근생(휴게음 식점) | 제2중 근생(일반음 식점) | 260.3 | 2 |
| 24 | 경남 | 진주평 거점 | 4,030 .8 | 507.9 | 67.2 | 454.6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중 근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7층 | 30.9 | 5층 | 제2중 근생(당구장) | 496.8 | 5 | |
| 25 | 경북 | 경주노 동점 | 1,302 .5 | 332.2 | 82.4 | 244.8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유층음 식점, 휴게음 식점, 점포, 당구장 | 지하1 층/지 상3층 | | | | | | |
| 26 | 경북 | 구미역 점 | 437.3 | 149.5 | 74.0 | 216.5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중근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3 층 | 12.7 | 2층 | 의원 | 149.5 | 2 | |
| 27 | 경북 | 김천분 점 | 1,889 .0 | 378.1 | 69.3 | 346.2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중 근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5 층 | 21.1 | 4층드 림피마 2 | 제2중 근생(사무소) | 278.2 | 4 | |
| 28 | 경북 | 성주점 | 778.3 | 389.1 | 9.8 | 19.6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판매시 설및사 설강습 소,제1 ,2중근 생활 시설, 교육연 구시설 | 지하층 /지상2 층 | | 2층 | 교육연 구시설 | 제1중 근생 | 228.9 | 2 |

| | | | | | | | | | | | | | | | | |
|----|----|--------|---------|-------|------|-------|-----------|----------|-------------------------|-----------|------|-------|--------------------|---------------|-------|---|
| 29 | 경북 | 안동삼산점 | 801.4 | 242.9 | |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2층 | | 근생(점포) | 212.1 | 2 | |
| 30 | 경북 | 안동점 | 3,985.4 | 514.3 | 54.7 | 379.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업무시설 | 지하1층/지상8층 | 28.5 | 1층 | 근생 | | 1 | |
| 31 | 경북 | 영주점 | 491.0 | 161.3 | 60.0 | 182.5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 지하층/지상4층 | 11.7 | 2층 | 사무소 | 107.9 | 2 | |
| 32 | 경북 | 창원대점 | 487.7 | 166.2 | 49.8 | 98.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지하1층/지상2층 | 8.5 | | | | | |
| 33 | 경북 | 포항양덕점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창고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5.8 | 1층 | 소매점 | 164.6 | 1 | |
| 34 | 경북 | 포항중앙점 | 1,445.1 | 664.5 | 72.9 | 158.5 | 일반상업지역 | 일반철골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3.9 | 3층 | 휴게음식점 | 261.0 | 3 | |
| 35 | 광주 | 광주전남대점 | 2,550.4 | 450.2 | 56.9 | 272.5 | 일반주거지역 | 일반철골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18.3 | 4층 |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휴게음식점 | 428.2 | 4 | |
| 36 | 광주 | 광주봉선점 | 1,145.2 | 341.4 | 54.4 | 182.6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20.5 | | | | | |
| 37 | 광주 | 광주충성로점 | 1,306.8 | 308.1 | 73.0 | 257.7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17.0 | 4층 | 사무실 | 일반음식점 | 187.6 | 4 |
| 38 | 광주 | 광주운암점 | 468.2 | 186.7 | 59.7 | 149.6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4.1 | 2층 | 사무소 | 인터넷컴퓨터개입시설제공업 | 175.7 | 2 |
| 39 | 광주 | 광주수완점 | 725.1 | 204.2 | 58.8 | 208.6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6.7 | 3층 | 노래연습장 | 인터넷컴퓨터개입시설제공업 | 199.7 | 3 |
| 40 | 대구 | 대구동천본점 | 2,681.9 | 467.6 | 72.5 | 345.0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3.3 | 3층30호 | 제1종근생(의원) | 제1종휴게음식점 | 192.4 | 3 |
| 41 | 대구 | 대구동성로점 | 1,175.1 | 351.0 | 74.5 | 214.6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 | 15.4 | 2층 | 제2종근생 | 87.5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 | 상4층 | | 사무소) | | | | |
| 42 | 대구 | 대구신매점 | 1,032.8 | 221.4 | 64.9 | 244.6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18.8 | 3층 | 사무소 | 198.9 | 3 | |
| 43 | 대전 | 대전도안점 | 3,772.7 | 584.8 | 59.8 | 300.7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34.0 | 목원빌딩2층 | 제2층근생 | 542.1 | 2 | |
| 44 | 대전 | 대전충남대점 | 997.0 | 332.3 | 57.6 | 172.7 | 도시지역외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4.0 | 3층 | 제1층근생(후계음식점) | 165.5 | 3 | |
| 45 | 대전 | 대전도산점 | 998.0 | 314.1 | 69.7 | 221.6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7.7 | 2층 | 제2층근생(일반음식점) | 310.5 | 2 | |
| 46 | 부산 | 해운대점 | 4,939.1 | 378.6 | 80.0 | 875.8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11층 | 39.6 | 3층 | 제2층근생(일반음식점) 판매시설(인터넷게퓨터개입시설제공업의시설) | 194.3 | 3 | |
| 47 | 부산 | 부산경성대점 | 2,458.7 | 281.6 | 35.4 | 270.3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층근린생활시설 외2 | 지하1층/지상8층 | 28.2 | 7층 | 근생(일반음식점) | 276.4 | 7 | |
| 48 | 부산 | 부산화명점 | 6,431.6 | 765.1 | 585.3 | | 일반상업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공장 | 지하1층/지상8층 | 30.5 | 2층 | 제1층근생 | 제2층근생 | 695.3 | 2 |
| 49 | 부산 | 남포동점 | 8,524.0 | 894.0 | 70.1 | 632.1 | 일반상업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판매및영업시설, 제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10층 | 50.6 | 10층 | 공조실, 통신실, 관리실 | 542.3 | 10 | |
| 50 | 부산 | 기장정관점 | 7,529.2 | 898.6 | 79.6 | 505.0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층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7층 | 28.0 | 3층 | 제2층근생(일반음식점) | 842.7 | 3 | |
| 51 | 부산 | 부산사직점 | 1,495.6 | 204.0 | 59.8 | 438.6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8층 | 30.2 | 3층 | 개인제공업소 | 192.24 | 3 | |
| 52 | 부산 | 부산서면점 | 2,225.6 | 343.9 | 83.8 | 461.1 | 일반상업지역외1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1.3 | 지하1층 | 제2층근생 | 332.8 | 지1 | |
| 53 | 부산 | 부산덕천점 | 1,096.1 | 186.2 | 54.0 | 259.6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16.9 | 3층 | 제2층근생 | 186.2 | 3 | |

| | | | | | | | | | | | | | | | | |
|----|----|---------|----------|---------|------|-------|------------|---------------|----------------------|------------|------|-------------|-----------------------------|-------|--------------------|----|
| 54 | 부산 | 부산명지점 | 7,027.7 | 621.2 | 60.0 | 499.9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9층 | 39.5 | 시온상가2층 | 제2층 근생(일반음식점) | 570.2 | 2 | |
| 55 | 부산 | 부산주례점 | 1,683.9 | 421.9 | |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준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 1,2층 | | | 1.2 | |
| 56 | 서울 | 강남교보타워점 | 3,462.5 | 197.5 | 59.7 | 638.6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5층/지상11층 | 36.9 | 트라이랜드빌딩지하1층 | 일반음식점 | 240.9 | 지하1층무단층축(복층) | 지1 |
| 57 | 서울 | 강남대성학원점 | 1,942.0 | 201.8 | 50.0 | 248.9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3층/지상6층 | 21.0 | | | | | |
| 58 | 서울 | 강남역점 | 995.6 | 272.4 | 49.8 | 99.6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2층 | 10.8 | 1층 | 의원 | 272.4 | 지상1층일부 증축(영업공간) 설치 | 1 |
| 59 | 서울 | 건대점 | 966.7 | 259.2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 3층 | 근린생활시설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를 비제공업소) | 88.7 | | 3 |
| 60 | 서울 | 경희대점 | 1,071.7 | 167.4 | 49.9 | 243.5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 1층 | 대중음식점 | 149.9 | | 1 |
| 61 | 서울 | 고대안암역점 | 3,541.2 | 461.7 | 50.0 | 246.2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6층 | | 4층 | 제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370.1 | | 4 |
| 62 | 서울 | 고척점 | 1,069.1 | 261.8 | | | | 철골조, 세멘벽돌조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점포, 주택 | 지하1층/지상3층 | | 현대상가3층 | | | | |
| 63 | 서울 | 광운대점 | 1,605.3 | 398.3 | 59.9 | 180.0 | 준주거지역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3.0 | 동우빌딩2층 | 제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191.4 | 옥탑점 증축 | 2 |
| 64 | 서울 | 구파발점 | 19,528.3 | 1,467.2 | 59.6 | 499.2 | 도시지역외1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지하4층/지상9층 | 41.1 | 404호 | 교육연구시설 | 142.0 | 제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 |

| | | | | | | | | | | | | | | | | |
|----|----|----------|----------|---------|------|-------|------------|-------------|---------------------|------------|------|----------------|-------------------|-------------------|-------|---|
| 65 | 서울 | 노원역점 | 4,163.0 | 349.1 | 50.5 | 392.6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지하3층/지상8층 | 33.3 | 동익빌딩2층 |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 340.7 | 2 | |
| 66 | 울산 | 울산일산점 | 1,429.9 | 320.1 | 85.2 | 306.7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 | | | | |
| 67 | 울산 | 울산대점 | 1,906.0 | 270.4 | 79.2 | 475.2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0.0 | 5층 | 위락시설 | 270.4 | 5 | |
| 68 | 울산 | 울산산점 | 1,326.3 | 270.0 | 20.0 | 98.0 | 자연녹지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5층 | 20.1 | 4층 | 제2층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제2층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 127.0 | 4 |
| 69 | 인천 | 인천구월점 | 12,674.0 | 1,561.3 | 72.2 | 449.1 | 일반상업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 28.3 | | 402호 | 학원 | 일반음식점 | 4 | |
| 70 | 인천 | 인천청라점 | | | | | | | | | | 1층 | | | 1 | |
| 71 | 인천 | 인천현점 | 9,256.5 | 632.8 | 70.0 | 769.8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및업무시설 | 지하3층/지상11층 | 51.2 | 202호 | 일반음식점 | 제2층 근린생활시설(서점) | 107.7 | 2 |
| 72 | 인천 | 부평본점 | | | | | | | | | | 5층 | | | 5 | |
| 73 | 전남 | 나주혁신도시점 | 2,089.7 | 766.1 | 68.4 | 186.7 | 일반상업지역 | | | | | 2층 | | | 2 | |
| 74 | 전남 | 목포상동점 | 1,191.3 | 359.4 | 84.0 | 278.3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8.0 | 3층 | 골프연습장 | 159.0 | 3 | |
| 75 | 전남 | 무안남약신도시점 | 5,949.2 | 978.3 | 69.5 | 342.8 | 도시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4.6 | 그랜드프라자 10동201호 | 휴게음식점 | 237.5 | 2 | |
| 76 | 전남 | 순천연향점 | 2,173.5 | 480.1 | 85.7 | 302.3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13.3 | 4층 | 사무소 | 240.0 | 4 | |
| 77 | 전남 | 여수신기점 | 486.0 | 132.7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점포, 다방, 사무실, 주택 | 지하1층/지상3층 | | 1층 | 점포 | 132.7 | 1 | |
| 78 | 전남 | 전남강진점 | 1,669.0 | 892.6 | 58.5 | 109.3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 지하층/지상2층 | | | | | | |
| 79 | 전남 | 순천호수공원점 | 588.3 | 232.2 | 59.0 | 149.5 | 제1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단 | 지하층/지상3층 | 12.4 | | | | | |

| 독주택 | | | | | | | | | | | | | | | | | |
|-----|----|---------|---------|-------|------|-------|-----------|---------------|-------------------------|-----------|------|------|------------------|------------------|--------|---|----|
| 80 | 전북 | 군산신 송점 | 2,854.1 | 470.7 | 66.8 | 328.5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5.2 | 4층 | | 4 | | | |
| 81 | 전북 | 익산원광대점 | 1,601.3 | 337.2 | 58.7 | 269.9 | 일반상업지역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지하층/지상6층 | 21.3 | 5층 | 일반음식점 | 248.9 | 시정명령미행 | 5 | |
| 82 | 전북 | 전주전북대점 | 2,980.4 | 750.7 | | |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2.8 | 3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645.1 | | 3 | |
| 83 | 제주 | 제주법원점 | 918.1 | 258.0 | 79.5 | 232.6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 | | | | | |
| 84 | 제주 | 신제주점 | 956.6 | 285.9 | |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 2층 | 대중음식점 | 284.4 | | 2 | |
| 85 | 충남 | 공주신관점 | 298.1 | 149.0 | 66.8 | 133.7 | 근린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0.8 | 2층 | 소매점 | 휴게음식점 | 127.7 | | 2 |
| 86 | 충남 | 당진본점 | 1,296.5 | | 74.7 | 220.5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7.9 | 3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의원 | 434.8 | | 3 |
| 87 | 충남 | 대전한남대점 | 3,358.5 | 477.2 | 59.9 | 349.9 | 일반주거지역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7층 | 21.8 | 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헬스클럽)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3.2 | | 4 |
| 88 | 충남 | 아산터미널점 | 743.8 | 219.5 | 64.6 | 219.0 | 도시지역 | 일반철골구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7.5 | 4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185.7 | | 4 |
| 89 | 충남 | 아산온양온천점 | 987.4 | 236.1 | 72.7 | 254.7 | 일반상업지역 | 일반철골구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14.2 | 지하1층 | 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한의원) | 160.6 | | 지1 |
| 90 | 충남 | 천안두정점 | 874.5 | 220.5 | 58.5 | 231.9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6층 | 20.0 | 2층 | | 사무소 | 220.5 | | 2 |
| 91 | 충남 | 천안신부점 | 5,173.5 | 631.7 | 77.6 | 443.1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지하3층/지상7층 | 25.9 | 3층 | 근린생활시설(의원) | 사건관 | 191.4 | | 3 |
| 92 | 충북 | 제천중양점 | 1,898.2 | 444.6 | 79.0 | 331.1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 | 19.5 | 3층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441.2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 | 활시설 | 상5층 | | | | 활시설 (의원) | | | |
| 93 | 충북 | 청주강서점 | 7,982.5 | 926.3 | 69.8 | 422.8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지하2층/지상7층 | 31.2 | 1층 | 일반음식점 | 제1층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150.8 | 1 | | | |
| 94 | 충북 | 청주개신점 | 3,796.2 | 415.6 | 68.7 | 472.6 | 도시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7층 | 33.2 | 1층 | | 제2층 근린생활시설(금융업소) | 371.7 | 1 | | | |
| 95 | 충북 | 청주용담점 | 2,226.1 | 316.4 | 69.8 | 411.5 | 근린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3.6 | 2층 | 일반음식점 | | 314.9 | 2 | | | |
| 96 | 충북 | 청주충북대점 | 595.3 | 186.0 | 59.6 | 190.9 | 일반주거지역 | 철골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1.0 | | | 제2층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144.6 | | | | |
| 97 | 충북 | 충주교현안림점 | 804.3 | 182.9 | 56.8 | 249.8 | 제2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5층 | 19.7 | 2층 | 소매점 | | 183.0 | 2 | | | |
| 98 | 충북 | 충주연수점 | 796.5 | 233.7 | 58.7 | 200.2 | 제2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7.8 | 2층 | 사무소 | | 225.5 | 2 | | | |
| 브렌드외키즈카페(126) | | | | | | | | | | | | | | | | | | | |
| 1 | 강원 | 월드트리키즈카페 | 947.1 | 342.6 | 67.9 | 187.8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4.3 | | | | | | | | |
| 2 | 강원 | 꼬마대통령 | 664.2 | 350.3 | 55.2 | 104.6 | 제2층 일반주거지역 | 일반철골구조 | 제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2층 | 10.4 | | | | | | | | |
| 3 | 강원 | 핑크아이 | 2,567.1 | 319.6 | 48.4 | 326.3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주택 | 지하1층/지상8층 | 29.1 | | | | | | | | |
| 4 | 강원 | 쁘띠티 | 999.7 | 297.0 | 59.9 | 201.6 | 제2층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5층 | 20.8 | | 중앙하이츠빌딩301호 | 제1층 근생(의원) | | 3 | | | |
| 5 | 경기 | 플스맘베이비키즈카페 | 9,929.3 | 828.6 | 59.8 | 499.4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교육연수시설, 의료시설 | 지하3층/지상9층 | 38.0 | | | | | | | | |
| 6 | 경기 | 키즈올림픽인텍스점 | 99.753.4 | 15.633.4 | 55.4 | 105.4 | 일반상업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편매시설 | 지하4층/지상3층 | 2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경기 | 블링블링커피 | 515.2 | 269.2 | 35.1 | 67.3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철골구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2층 | 10.1 | | | | | | |
| 8 | 경기 | 뽕뽕빵카페 | 9,867.5 | 1,115.1 | 59.8 | 353.4 | 중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하2층/지상6층 | 31.0 | | | | | | |
| 9 | 경기 | 키즈하우스 | 6,074.3 | 453.8 | 79.3 | 803.2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3층/지상10층 | 36.9 | | | | | | |
| 10 | 경기 | 오키즈카페 | 2,064.6 | 345.4 | 85.1 | 423.7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 | | | | | |
| 11 | 경기 | 봉봉키즈점 | 593.9 | 206.8 | 59.1 | 169.7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단독주택/일반음식점 | 지하층/지상4층 | 15.5 | | | | | | |
| 12 | 경기 | 키즈팡팍상승신원점 | 6,662.8 | 514.4 | 64.4 | 601.7 |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3층/지상10층 | 44.3 | 중앙프라자801호 | 제1종 근생(의원) | 478.8 | 8 | | |
| 13 | 경기 | 키즈카페아이니 | 7,323.4 | 1,115.0 | 59.2 | 296.1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1.4 | 대림프라자3층 | | 3 | | | |
| 14 | 경기 | 츄츄모래놀이카페 | 2,412.2 | 314.1 | 60.0 | 300.0 |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하2층/지상5층 | 21.4 | | | | | | |
| 15 | 경기 | 스카이방파주점 | 15,054.9 | 1,548.7 | 78.2 | 599.0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 지하2층/지상10층 | 41.1 | | | | | | |
| 16 | 경기 | 모래키즈마마 | 352.6 | 132.9 | 50.0 | 132.6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지하층/지상3층 | 12.0 | | | | | | |
| 17 | 경기 | 엄마나무카페 | 4,866.2 | 350.0 | 69.0 | 737.1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3층/지상12층 | 44.6 | 10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유계음식점) | 84.7 | 10층 무단층 축목재 62.11 | 10 |

| | | | | | | | | | | | | | | | | |
|----|----|---------------------------------|----------|---------|------|-------|-------------------|------------------------|--|-------------------|------|------------|-------------------------------|---------------------------------|-------|--------------------|
| 18 | 경기 | 팍팍스 클키즈 카페 | 34,107.0 | 3,269.3 | 51.8 | 285.2 | 제3종 일반주 거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교육연 구시설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업 무시설 노유 자시설 | 지하4 층/지 상7층 | 42.4 | 지하1 층 | 근린생 활시설 (일반 음식점) | 운동시 설(놀 이형시 설) | 112.0 | 지1 |
| 19 | 경기 | 원두콩 키즈카 페 | 2,238.3 | 338.0 | 77.2 | 432.2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1.1 | | | | | |
| 20 | 경기 | 키즈앤 팡(노 원) | 850.0 | | |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교육연 구시설 | 지하2 층/지 상6층 | 22.2 | | | | | |
| 21 | 경기 | 하니비 키즈까 페 | 1,180.8 | 331.2 | 54.2 | 193.1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2 층/지 상4층 | 17.3 | | | | | |
| 22 | 경기 | 키즈몽 | 2,896.8 | 559.9 | 59.8 | 229.9 | 제2종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4층 | 18.7 | | | | | |
| 23 | 경기 | 릴리펄 알산식 사점 | 1,040.0 | 590.1 | |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2 층/지 상2층 | 8.9 | 1동20 1호 |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 362.7 | 2 |
| 24 | 경기 | 아이점 프라이 뉴코아 점 | 1,816.3 | 270.3 | 69.6 | 414.7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19.7 | 3층 | | 근린생 활시설 | 270.3 | 3 |
| 25 | 경기 | 키즈팡 팡김포 장기점 | 3,466.0 | 408.9 | 59.0 | 339.5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2 층/지 상6층 | 24.7 | 5층 | | 체육도 장 | 408.5 | 5 |
| 26 | 경기 | 파파마 마김포 장기점 | 3,745.8 | 356.5 | 68.7 | 499.8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판매시 설, 제1 ,2종근 린생활 시설 | 지하3 층/지 상8층 | 30.8 | 6층 | 의원 | 일반음 식점 | 356.5 | 6 |
| 27 | 경기 | 키다리 방방초 지점 | 2,387.2 | 432.2 | 63.3 | 272.8 | 근린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5층 | 20.3 | 3층 |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 430.1 | 3층불 법증축 (복층) |
| 28 | 경기 | 빨강버 스모래 놀이(남 이마트 점) | 757.9 | 189.6 | 59.3 | 206.3 | 제2종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공동주 택 | 지하1 층/지 상5층 | 15.5 | | | | | |
| 29 | 경기 | 파파마 마음인 처인점 | 2,207.8 | 358.9 | 49.9 | 299.5 | 일반주 거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교육연 구시설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1.5 | 6층 |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사무 실)/ | 358.9 | 6 |

| | | | | | | | | | | | | | | | |
|----|----|--------------|----------|---------|------|-------|------------|-----------|----------------------|-----------|------|----|--------------------|-------|---|
| 30 | 경기 | 아일랜드키즈카페 | 483.4 | 149.2 | 59.6 | 193.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4.7 | 1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98.0 | 1 |
| 31 | 경기 | 키즈북 | 4,133.1 | 1,037.7 | 50.4 | 200.9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철골구조 | 업무시설 | 지하층/지상4층 | 21.4 | | | | |
| 32 | 경기 | 키즈카페아이스크림 | 2,392.4 | 378.0 | 59.2 | 293.3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0.6 | | | | |
| 33 | 경기 | 키즈캐슬 | 5,417.7 | 642.5 | 48.4 | 318.3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교육연구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7층 | 29.4 | | | | |
| 34 | 경기 | 삐뽀붕동키즈카페 | 13,203.2 | 2,996.3 | 58.7 | 196.2 | 계획관리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교육연구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21.0 | | | | |
| 35 | 경기 | 헬로방방영통점 | 13,826.8 | 1,179.1 | 78.1 | 660.0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교육연구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4층/지상9층 | 38.8 | 7층 | | | 7 |
| 36 | 경기 | 봉봉키즈용인본점 | 1,072.0 | 283.0 | 52.4 | 198.5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25.0 | | | | |
| 37 | 경기 | 스마일키즈카페 | 784.5 | 197.3 | 59.9 | 238.3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6.2 | | | | |
| 38 | 경기 | 키즈카페노아 | 3,827.7 | 551.1 | 35.6 | 220.3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교육연구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7층 | 28.8 | | | | |
| 39 | 경기 | 다온키즈카페 | 379.0 | 134.9 | 59.9 | 168.4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단독주택 | 지하층/지상3층 | 11.9 | | | | |
| 40 | 경기 | 프레리키즈카페서천마을점 | 9,022.5 | 897.2 | 59.4 | 399.4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3층/지상8층 | 35.4 | 3층 | 의원 | 787.0 | 3 |
| 41 | 경기 | 봉봉키즈팽택점 | 5,557.3 | 843.9 | 71.7 | 387.1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교육연구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6.2 | | | | |

| | | | | | | | | | | | | | | | |
|----|----|-----------|-----------|----------|------|-------|-----------|------------------|----------------------|------------|------|------|------------------|----------------|-------|
| 42 | 경기 | 고고성 키즈카페 | 1,980.6 | 314.1 | 69.1 | 291.4 | 근린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5층 | 23.0 | | | | |
| 43 | 경기 | 올리블랜부천점 | 12,413.5 | 2,162.6 | 75.2 | 376.2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자동차관련시설,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0.9 | 2층 | 제2층근린생활시설 | 2 | |
| 44 | 경기 | 방구쟁이 | 570.9 | 290.6 | 59.8 | 117.5 | 제2층일반주거지역 | 일반철골구조 | 소매점 | 지하층/지상2층 | 7.9 | | | | |
| 45 | 경기 | 키즈필 키즈카페 | | | | | | | | | | | | | |
| 46 | 경기 | 킹콩점 프랜시스점 | 10,342.0 | 1,047.8 | 78.7 | 597.4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8층 | 33.8 | 2층 | 제2층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594.9 | |
| 47 | 경기 | 딸기가 좋아상점 | 41,582.0 | 19,577.1 | 59.9 | 94.9 | 준주거지역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판매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7.3 | 2층 | 판매시설 | 2 | |
| 48 | 경기 | 검단트램폴린파크 | | | | | | | | | | 2층 | | 2 | |
| 49 | 경기 | 키즈카페 | 1,137.4 | 374.3 | 52.8 | 160.5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5층 | 22.4 | | | | |
| 50 | 경기 | 원스팸 | 165,386.9 | 33,503.9 | 69.8 | 184.9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운동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 지하2층/지상9층 | 50.0 | 2층 | 운동시설 | 2 | |
| 51 | 경기 | 스카이방방파주운점 | 3,518.5 | 456.8 | 59.6 | 295.7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5층 | 23.4 | | | | |
| 52 | 경기 | 노리파크화정점 | 9,748.5 | 770.2 | 71.5 | 685.9 | 중심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하3층/지상10층 | 42.6 | 802호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제2층근린생활시설(사무소) | 140.7 |
| 53 | 경상 | 몽니 | | | | | | | | | | | | | |
| 54 | 경상 | 키즈카페노리숲 | 494.2 | 198.4 | 70.1 | 174.6 | 일반상업지역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1.3 | | | | |
| 55 | 경상 | 아이점프키즈카메길 | 1,082.3 | 337.6 | 59.6 | 191.2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5.7 | | | | |

| 주점 | | | | | | | | | | | | | | |
|----|----|-------------|---------|-------|------|-------|-----------|--------------|----------------------------|-----------|------|---------|-----------|---|
| 56 | 경상 | 키즈카페어린왕자구미점 | 2,999.5 | 485.9 | 69.8 | 431.0 | 근린상업지역 | 철골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7층 | 29.1 | 구평메디칼센터 | | |
| 57 | 경상 | 꼬마대통령포항원동점 | 1,253.1 | 313.3 | 49.9 | 199.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6.4 | | | |
| 58 | 경상 | 소풍가는길 | 2,096.4 | 343.5 | 68.8 | 344.0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1.4 | | | |
| 59 | 경상 | 아이띠네구미동곡점 | 3,488.1 | 427.1 | 69.6 | 469.4 | 근린상업지역외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7층 | 32.3 | 명성빌딩 | | |
| 60 | 경상 | 아이띠네곡석점 | 885.8 | 300.1 | 59.7 | 176.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2.0 | | | |
| 61 | 경상 | 주니버스통영무전점 | 988.5 | 230.2 | 69.2 | 297.2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층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6층 | 24.0 | 성진빌딩4층 | 사무소 207.7 | 4 |
| 62 | 경상 | 키즈팝핑김해점 | 3,115.3 | 484.7 | 69.8 | 361.6 | 근린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층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3.3 | | | |
| 63 | 경상 | 스카이방방김해삼계점 | 2,598.0 | 372.0 | 79.9 | 479.0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제1.2층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5.5 | | | |
| 64 | 경상 | 샤사의놀이터 | 2,832.1 | 477.6 | 59.9 | 351.4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층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30.0 | | | |
| 65 | 경상 | 꼬마대통령양방점 | 1,922.2 | 342.7 | 77.7 | 354.1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2.7 | | | |
| 66 | 경상 | 꼬마대통령창원마산점 | 2,985.3 | 355.3 | 69.7 | 512.1 | 근린상업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8층 | 29.3 | | | |
| 67 | 경상 | 꼬마대통령양산점 | 4,309.5 | 906.5 | 79.7 | 294.8 | 일반상업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제1.2층근린 | 지하층/지상5층 | 22.0 | | | |

| | | | | | | | | | | 생활시설 | | | | | | |
|----|----|---------------------------|--------------|-------------|------|-------|-------------------------------|---------------------------|--|------------------------|------|-----------------|-------------------|--------------------------------------|-------|----|
| 68 | 경상 | 꼬마대 통령양 산중상점 | 8,194 .0 | 1,352 .8 | 79.9 | 395.5 | 일반상 업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5층 | 22.5 | 4층 | | | | 4 |
| 69 | 경상 | 꼬마대 통령진 주명거점 | 2,312 .7 | 394.8 | 79.1 | 412.2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2.2 | | | | | |
| 70 | 경상 | 꼬마대 통령양 덕점 | | | | | | | | | | | | | | |
| 71 | 경상 | 키즈카 페어린 왕자양 산저계점 | 2,276 .2 | 371.0 | 40.2 | 246.9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 지하층 /지상7 층 | 25.7 | | | | | |
| 72 | 경상 | 베니주 니 | 14,13 8.7 | 1,043 .1 | 77.1 | 741.2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교육연 구시설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 지하4 층/지 상10 층 | 47.3 | 10층 | 운동시 설(당 구장) | 제2층 근린생 활시설 (휴게 음식점) | 459.8 | 10 |
| 73 | 경상 | 김공점 프항원 1호점 | 5,371 .6 | 581.7 | 59.8 | 399.8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 지하2 층/지 상7층 | 27.5 | 6층 | | 제1층 근린생 활시설 (의원) | 574.5 | 6 |
| 74 | 경상 | 키즈광 팡 | | | | | | | | | | 2층 | | | | 2 |
| 75 | 경상 | 모나베 베 | 4,810 .9 | 531.9 | 75.2 | 501.0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의료시 설, 제1 ,2층근 린생활 시설 | 지하2 층/지 상7층 | 28.9 | 7층 | 의료시 설(병 원) | 휴게음 식점 | 494.8 | 7 |
| 76 | 경상 | 점프노 리 | 2,991 .9 | 509.5 | 59.9 | 277.5 | 일반주 거지역 | 철골조 , 철근 콘크리 트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 지하2 층/지 상5층 | 18.9 | | | | | |
| 77 | 부산 | 어린이 특공대 | 1,889 .0 | 280.3 | 59.9 | 323.2 | 제3층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층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2.0 | DC플 러스마 트 | | | | |
| 78 | 부산 | 꼬마대 통령서 면점 | 7,014 .3 | 4,604 .6 | 79.9 | 121.8 | 가로구 역별최 고높이 제한지 역 | 일반철 골구조 | 창고시 설, 자 동차관 련시설 , 판매 시설,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3 층 | 9.2 | 2층 | | 제1층 근생(휴게음 식점) | 49.5 | 2 |
| 79 | 부산 | 꼬마대 통령거 제점 | 1,407 .6 | 206.7 | 44.4 | 262.1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층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6층 | 24.1 | 3층 | | 제2층 근생(부동산 중개사 무소) | 206.7 | 3 |
| 80 | 부산 | 프레리 | 7,194 | 659.6 | 59.9 | 498.7 | 일반상 | 철근콘 | 제1,2 | 지하2 | 42.0 | 8층80 | 운동시 | 351.8 | 8 | |

| | | | | | | | | | | | | | | | | |
|----|----|-------------------------------|-------------|-------------|------|-------|-------------------|------------------------|---|--|------------|---------------------------|--------------------------|--------------------------|-------|---|
| | | 키즈카페 페국제 신도시 명지점 | .2 | | | | | 업지역 | 크리트 구조 | 중근린 생활시 설, 교 육연구 시설, 운동시 설 | 층/지 상9층 | 3호 | 설-놀 이형시 설 | | | |
| 81 | 부산 | 점프키 즈2 | 8,167 .4 | 699.0 | 59.7 | 469.7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교 육연구 시설 | 지하3 층/지 상8층 | 36.9 | 제일프 라자3 층 | 제2중 근생(일반음 식점) | 687.9 | 3 | |
| 82 | 부산 | 프레리 키즈카 페부산 연산동 점 | 1,595 .5 | | |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단 독주택 | 지하1 층/지 상5층 | | 2층 | 다방 | 269.0 | 2 | |
| 83 | 부산 | 키즈팡 평서면 점 | 3,823 .9 | 489.3 | 76.6 | 557.1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위 락시설 | 지하1 층/지 상9층 | 35.3 | | | | | |
| 84 | 부산 | 꼬마대 통령재 송점 | 6,430 .8 | 1,184 .3 | 59.6 | 190.3 | 제2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창 고시설, 교육연 구시설 | 지하2 층/지 상4층 | 16.3 | 4층40 3호 | 교육연 구시설 (학원) | 제2중 근생(놀이형 시설) | 435.0 | 4 |
| 85 | 부산 | 아이점 프부산 북구점 | 4,988 .0 | 661.7 | |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7층 | 26.1 | 유림노 르웨이 숲상가 401호 | 근생 | 645.2 | 4 | |
| 86 | 부산 | 꼬마대 통령재 명점 | 8,158 .4 | 706.9 | 79.2 | 778.8 | 일반상 업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교육연 구및복 지시설 | 지하2 층/지 상10 층 | 42.5 | 목양프 라자 | | | | |
| 87 | 부산 | 점프노 리부산 과장점 | 8,794 .1 | 704.6 | 83.5 | 977.0 | 일반상 업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운 동시설, 단독 주택, 교육연 구시설 | 지하1 층/지 상14 층 | 63.9 | | | | | |
| 88 | 서울 | 키즈앤 팡(노 원) | 2,568 .3 | 425.8 | 53.4 | 271.3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교육연 구및복 지시설, 단독 주택 | 지하1 층/지 상6층 | 21.0 | | | | | |
| 89 | 서울 | 아호(동부이 촌동) | 904.9 | 177.0 | | | 제3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맨션아 파트관 리소 | 지하1 층/지 상2층 | | 한강맨 션11 동 | | | | |
| 90 | 서울 | 아이앤 맘(위 경동) | 3,392 .9 | 539.2 | 59.8 | 310.0 | 제3중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외3 | 지하1 층/지 상6층 | 19.8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 서울 | 베이비캐슬(홍은동) | 704.8 | 139.2 | 58.4 | 295.7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6층 | 19.8 | 2층(로드뷰) | 독서실 | 136.8 | 2층무단중축 | 2 |
| 92 | 서울 | 더플레이(강동구) | 5,796.7 | 760.8 | 59.5 | 316.2 | 일반주거지역 | 철골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9층 | 41.4 | | | | 1층무단중축 | |
| 93 | 서울 | 릴리퍼트(청담) | 6,835.5 | 798.3 | 57.1 | 290.9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하3층/지상7층 | | | | | | |
| 94 | 서울 | 릴리퍼트(서울숲) | 29,292.9 | 4,434.9 | | | | 철근콘크리트구조 |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지하5층/지상4층 | | | | | | |
| 95 | 서울 | 아이점프(잠실) | 589.7 | | | | | 시멘트돌조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2층 | 근생 | 138.7 | | 2 | |
| 96 | 서울 | 아이피네(연신내) | 2,806.8 | 457.2 | 59.0 | 290.9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 지하1층/지상7층 | 21.9 | | | | 1층천막/철주다용도무단중축(마트) | |
| 97 | 서울 | 홈플러스스키즈카페(영등포) | 66,142.2 | 9,797.5 | 57.0 | 116.6 | 준공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판매시설 | 지하2층/지상5층 | 27.7 | | | | | |
| 98 | 서울 | 어린이왕자(서율대) | 3,171.3 | 346.1 | 59.0 | 475.2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10층 | 41.8 | | | | | |
| 99 | 서울 | 아이플레이(동대문) | | | | | | | | | | | | | | |
| 100 | 서울 | 카페베네(서초) | 2,569.2 | 341.0 | 57.2 | 299.4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9층 | 31.8 | | | | | |
| 101 | 서울 | 킹콩점프(금천) | 7,672.8 | 724.0 | 50.6 | 386.3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10층 | 45.7 | | | | | |
| 102 | 서울 | 릴리퍼트(사당) | 2,117.3 | 347.0 | 49.9 | 248.2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7.3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 전라 | 차타타 키즈카페 | 7,020 .0 | 616.6 | 59.9 | 502.9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교육연 구시설 | 지하2 층/지 상9층 | 41.2 | 5층(로 드뷰) | | 5층50 1호무 단층축 (복층) | 5 | |
| 117 | 전라 | 파파마 마키즈 카페 | 1,721 .4 | 488.3 | 58.7 | 206.9 | 제2종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층 /지상4 층 | 21.3 | | | | | |
| 118 | 전라 | 우가차 카키즈 카페 | 626.3 | 161.3 | 59.9 | 236.4 | 제1종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4 층 | 20.7 | | | | | |
| 119 | 전라 | 키아줌 | 3,249 .0 | 1,044 .1 | 45.4 | 141.3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4 층 | 17.3 | | 어울림 상가 | | | |
| 120 | 제주 | 벨롱벨 롱 | 970.6 | 175.1 | 46.1 | 255.3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6 층 | 23.1 | 2층 | 제2종 근생(사무소) | 158.7 | 2 | |
| 121 | 제주 | 스카이 방방 | 1,416 .1 | 378.5 | 59.3 | 221.8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2종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4 층 | 19.6 | | | | | |
| 122 | 제주 | 네버랜 드 | 998.5 | 226.5 | 64.7 | 230.9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단독 주택 | 지하1 층/지 상4층 | 14.3 | | | | | |
| 123 | 충청 | 아이점 프 | 4,281 .2 | 755.5 | 56.3 | 251.6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교 육연구 시설 | 지하1 층/지 상5층 | 20.6 | | 학산빌 딩4층 | | 4 | |
| 124 | 충청 | 쁘디롱 드 | 1,509 .3 | 362.3 | 59.2 | 246.5 | 제2종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층 /지상5 층 | 21.0 | 5층 | 체력단 련장 | 313.6 | 5 | |
| 125 | 충청 | 아이나 라 | | | | | | | | | | | | | | |
| 126 | 충청 | 노리파 크 | 1,509 .3 | 323.3 | 63.0 | 236.7 | 준주거 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단독 주택 | 지하1 층/지 상4층 | 20.8 | 2층 | 사무소 | 청소년 개입제 공원의 시설 | 323.3 | 2 |
| 찜질방리스트(92) | | | | | | | | | | | | | | | | |
| 1 | 서울 | 스파인 가든파 이브 | 274.0 56.7 | 17,00 6.4 | 59.8 | 537.3 | 유통상 업지역 | 철골구 조 | 판매시 설 | 지하5 층/지 상10 층 | 52.3 | | | | | |
| 2 | 서울 | 황금스 파 | 125.7 80.4 | 8,139 .0 | | | 일반상 업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판 매시설 , 업무 시설, 운동시 설 | 지하4 층/지 상2층 | 10.6 | 베네치 아메가 몰지하 2층 | 운동시 설 | 제1종 근생(목욕장) | 583.8 | 지하1 층불법 층축(복층) |

| | | | | | | | | | | | | | | | | |
|----|----|-----------|----------|---------|------|-------|----------|-----------------|--------------------------|------------|------|------------------|----------------|-----------------|-------|----|
| 3 | 서울 | 강변스파랜드 | 17,833.5 | 1,848.4 | 49.9 | 205.3 | 2종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 지하4층/지상7층 | 33.5 | 지하2층 | 사우나 | 2,095.8 | 지2 | |
| 4 | 서울 | 실로암불가마 | 6,800.4 | 1,129.0 | 48.0 | 236.8 | 일반주거지역 |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지하1층/지상6층 | 24.0 | | | | | |
| 5 | 서울 | 스파레스 | 92,206.0 | 4,671.8 | 60.0 | 634.5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 지하7층/지상16층 | 76.8 | 굿모닝 시티소핑몰 | | | | |
| 6 | 서울 | 선릉힐링스파 | 34,526.1 | 3,433.1 | 58.2 | 299.6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지하4층/지상8층 | 29.3 | | | | | |
| 7 | 서울 | 유토피아스파 | 22,430.1 | 1,150.3 | 33.6 | 417.7 | |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 | 예성유토피아 202동 지하1층 | | | 지1 | |
| 8 | 서울 | 박계수찜질방 | 15,788.1 | 1,076.2 | 60.0 | 659.9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지하3층/지상15층 | 39.2 | | | | | |
| 9 | 서울 | 거평힐링사우나 | 20,821.2 | 1,424.6 | |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업무시설 | 지하5층/지상7층 | | 지하1층 | 대중목욕탕 | 1,068.6 | 지1 | |
| 10 | 서울 | 월드컵스파랜드 | | | | | | | | | | | | | | |
| 11 | 서울 | 국일찜질방 | 32,600.9 | 1,613.8 | 59.3 | 685.8 | 일반상업지역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판매시설, 위락시설 | 지하7층/지상15층 | 64.2 | 지하2층 | 판매시설 | 1,990.1 | 지2 | |
| 12 | 서울 | 천지연스파랜드 | 9,848.2 | 3,762.9 | 49.5 | 77.7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31.6 | | | | | |
| 13 | 서울 | 파크하비오찜질방 | 76,410.5 | 4,946.2 | | |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업무시설 | 지하층/지상18층 | 55.3 | | | | | |
| 14 | 서울 | 가야25시물한증막 | 6,858.9 | 539.5 | 59.8 | 550.8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하2층/지상10층 | 49.9 | 근호빌딩지하1층 |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 | 743.3 | 지1 |

| | | | | | | | | 설 | |) 장 | | | | | | |
|----|----|-------------|----------|---------|-------|---------|------------|-------------|---|------------|------|--------------|---------------------|-------------------|-------|----|
| 15 | 서울 | 스파닥 터스톤 | 13,088.4 | 1,115.7 | 39.0 | 242.6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공동주택, 근린생활 시설 | 지하3층/지상13층 | 37.3 | 광남캐스빌 지하1층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체육장) | 798.8 | 지1 |
| 16 | 서울 | 동아24시불가마 | 20,053.3 | 1,689.2 | 54.1 | 386.5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공동주택, 근린생활 시설 | 지하3층/지상16층 | 45.9 | | | | | |
| 17 | 서울 | 메트로스파케빈 | 54,608.2 | 4,418.7 | 128.6 | 1,472.0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무실, 기계실, 시장, 아파트, 은행 | 지하1층/지상17층 | | | | | | |
| 18 | 서울 | 오성건강랜드 | 26,526.3 | 1,818.7 | 59.8 | 583.8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 지하4층/지상19층 | 59.7 | | | | | |
| 19 | 서울 | 삼부건강랜드 | 21,416.8 | 1,967.0 | 59.4 | 391.2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공동주택, 근린생활 시설 | 지하3층/지상16층 | 45.7 | | | | | |
| 20 | 서울 | 인공목 표불가마 | | | | | | | | | | 동아그린프라자 지하2층 | | | 지2 | |
| 21 | 서울 | 도담한방향토 숯가마 | 3,292.8 | 632.5 | 50.0 | 185.9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 시설, 운동 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1.0 | 지하1층 | 일반목욕장 | 102.0 | 지1 | |
| 22 | 서울 | 태영보석불가마 | 21,813.1 | 2,127.7 | 55.2 | 422.4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 업무 시설, 운동 시설 | 지하2층/지상8층 | 35.3 | | | | | |
| 23 | 서울 | 드래곤 힐스파 | | | | | | | | | | | | | | |
| 24 | 서울 | 변동골 참나무 숯가마 | 2,520.3 | 446.3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근린생활 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 | | | | |
| 25 | 서울 | 다와불가마사우나 | 93,431.6 | 6,025.1 | 50.9 | 479.5 | 준공업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 공장,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 지하4층/지상15층 | 70.8 | | | | | |
| 26 | 서울 | 개화산 | 6,554 | 691.1 | 44.3 | 199.0 | 일반주거지역 | 철골철 | 운동시 | 지하3 | 18.0 | | | | | |

| | | | | | | | | | | | |
|----|----|-----------------|--------------|-------------|------|-------|------------|--------------------------------------|---|------------------------|------|
| | | 랜드 탈휘트 니스 | .5 | | | | 거지역 | 제1,2 중근 린생활 시설, 창고시 설 | 층/지 상5층 | | |
| 27 | 경기 | 수리산 랜드 | 11,82 3.9 | 1,168 .5 | 59.1 | 246.4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공동주 택,근 린생활 시설 | 지하4 층/지 상12 층 | |
| 28 | 경기 | 하피랜 드 | 11,96 9.2 | 2,913 .7 | 10.4 | 16.2 | 관리지 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운 동시설 노유 자시설 | 지하2 층/지 상2층 | 12.8 |
| 29 | 경기 | 센트하 임스파 | 40,53 0.5 | 3,564 .7 | 72.9 | 548.9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공동주 택 | 지하4 층/지 상15 층 | 51.3 |
| 30 | 경기 | 누리예 뜰 | 75,38 4.1 | 4,941 .1 | 59.0 | 530.7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공동주 택 | 지하4 층/지 상20 층 | 67.0 |
| 31 | 경기 | 보보스 스파랜 드 | 15,58 5.4 | 3,273 .2 | 59.4 | 198.9 | 관리지 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판매시 설,영 업시설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 지하1 층/지 상4층 | 24.1 |
| 32 | 경기 | 아미고 불한중 막 | 54,20 4.1 | 3,061 .9 | 59.1 | 440.9 | 중심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판매시 설,영 업시설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 지하7 층/지 상8층 | 37.7 |
| 33 | 경기 | 휘닉스 스파 | 27,25 4.4 | 3,465 .6 | 74.4 | 441.1 | 도시지 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자 동차관 련시설 | 지하2 층/지 상7층 | 33.3 |
| 34 | 경기 | 중앙스 파랜드 | 28,97 1.4 | 1,883 .7 | 76.8 | 825.1 | 일반상 업지역 | 철골철 근콘크 리트구 조 | 근린생 활시설 교육 연구시 설,문 화및집 회시설 | 지하4 층/지 상13 층 | 51.2 |
| 35 | 경기 | 에코사 우나 | 44,88 4.9 | 5,359 .7 | 68.8 | 348.1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판매시 설 | 지하4 층/지 상6층 | 26.1 |
| 36 | 경기 | 은행아 리스파 | 3,743 .8 | 1,050 .3 | 39.0 | 75.1 | 관리지 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중 근린생 활시설 | 지하1 층/지 상2층 | 7.0 |
| 37 | 경기 | 병점불 한중막 | 12,33 5.1 | 1,814 .7 | 59.5 | 249.8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중근린 생활시 설 | 지하2 층/지 상7층 | 3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운동시설, 연구및 복지시설 |
| 38 | 경기 | 노블레스스파 | 28,463.9 | 2,488.8 | 53.4 | 370.0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3층/지상10층 | 43.6 | 지하1층 | |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 2,162.2 | | | 지1 |
| 39 | 경기 | 도봉산불한증막 | 14,953.6 | 2,382.4 | 59.9 | 180.8 | 일반주거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 지하2층/지상6층 | 27.9 | D마트 지하층 | 운동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 3,547.5 | | | 지1 |
| 40 | 경기 | 천동산24시레저피아 | 34,826.0 | 6,541.8 | 70.0 | 209.6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하2층/지상3층 | 16.9 | 분봉프라자3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점점방) |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 3,651.6 | | | 3 |
| 41 | 경기 | 스파렉스(탄현) | 12,989.3 | 1,644.2 | 59.2 | 292.3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하2층/지상5층 | 23.1 | 이화프라자4,5층 |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 1,560.7 | | | 4.5 |
| 42 | 경기 | 탐라랜드 | 19,003.7 | 3,450.8 | |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하2층/지상3층 | 18.3 | 한양상가지하1층 | | 판매시설 | 5,699.4 | | | 지1 |
| 43 | 경기 | 골드스파 | 12,536.9 | 1,531.3 | 43.6 | 202.2 | 일반주거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운동시설 | 지하2층/지상5층 | 17.2 | | | | | | | |
| 44 | 경기 | 스파사우나 | 15,474.3 | 1,569.8 | 79.4 | 428.8 | 일반상업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 지하5층/지상8층 | 38.9 | 지하1,2층 | |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 3,275.8 | | 6층직통계단 설치기 준위반 | 지1,2 |
| 45 | 경기 | 유림24시불가마 | 18,548.7 | 1,511.4 | 58.4 | 391.8 | 준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지하5층/지상10층 | 39.4 | 지하1층 | | 일반목욕장(사우나) | 1,858.9 | 1층무단중축 | | 지1,2 |

| | | | | | | | | | | | | | | | | | |
|----|----|------------|----------|---------|------|-------|--------|----------------------|----------------------------------|------------|------|-------------------|------------------|------------------|---------|--------|------|
| 46 | 경기 | 설문스파 | 1,904.9 | 1,904.9 | | | 경량철골구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1층 | 9.0 | 1층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 1,904.9 | 무단증축 | 1 | |
| 47 | 경기 | 워터밸리 | 14,963.9 | 1,434.9 | 77.8 | 622.6 | 중심상업지역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하2층/지상9층 | 41.6 | 6~9층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 4,460.2 | | 6.9 | |
| 48 | 경기 | 힐링팜칠방 | 756.0 | 315.2 | 37.2 | 89.2 | 일반주거지역 | 철골구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3층 | 12.7 | | | 찜질방 | 756.0 | | |
| 49 | 경기 | 웰빙사우나 | 19,196.7 | 1,389.7 | 54.0 | 432.4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하4층/지상10층 | 41.5 | | | | | | |
| 50 | 경기 | 광장웰빙사우나 | 7,605.2 | 1,206.1 | 67.8 | 339.1 | 일반상업지역 | 철골구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17.9 | 3~5층 | | 일반목욕장 | 3,618.2 | 1층불법증축 | 3.5 |
| 51 | 경기 | 에버팜질사우나 | 3,852.4 | 747.1 | 20.0 | 78.5 | 자연녹지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16.9 | 1~3층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 2,203.4 | | 1.3 |
| 52 | 경기 | 위례파크24시사우나 | 34,120.0 | 2,128.3 | 70.0 | 699.8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5층/지상12층 | 50.0 | | | | | | |
| 53 | 경기 | 뉴신명사우나 | 11,890.2 | 1,539.6 | 59.9 | 295.1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5층 | 20.0 | 백상프라이저45층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한의원) | 1,537.1 | | 4.5 |
| 54 | 경기 | 백두산불가마사우나 | 6,117.5 | 772.4 | 60.0 | 297.4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5층 | 19.7 | | | | | | |
| 55 | 강원 | 속초스파랜드 | 10,420.0 | 2,064.3 | 59.4 | 169.6 | 일반주거지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4층 | 19.0 | 지하2층~1층 | | 일반목욕장 | 6,311.7 | | 지2 |
| 56 | 강원 | 화산스파랜드 | 4,093.0 | 944.3 | 59.9 | 224.3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4.5 | 지하1~5층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 3,387.2 | | 지1.5 |
| 57 | 강원 | 황실사우나 | 10,377.6 | 1,105.1 | 33.1 | 256.9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10층 | 33.3 | 사복선명오피스텔지하2층~지하1층 | | 일반목욕장 | 1,789.8 | | 지2 |

| | | | | | | | | | | | | | | | | |
|----|-----|-------------|----------|---------|------|-------|--------|-----------------|--------------------------------|------------|------|---------------|-------------------------|-----------------|-----------------|-----|
| 58 | 강원 | 금강산 건강랜드 | 27,247.3 | 2,141.4 | 70.4 | 708.0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지하3층/지상19층 | 60.3 | 썬사인파크층 | 일반목욕장 | 1,528.2 | 1 | |
| 59 | 강원 | 아쿠아랜드24시찜질방 | 4,977.7 | 1,624.1 | 58.8 | 180.2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 지하층/지상4층 | 17.7 | 3~4층 | 일반목욕장 | 2,998.3 | 기계실, 숙소, 참고무단증축 | 3.4 |
| 60 | 강원 | 공전보석사우나 | 1,585.4 | 350.1 | | | |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21.1 | | | | | |
| 61 | 강원 | 웰빙24시불가마사우나 | 3,711.6 | 1,291.8 | 56.3 | 118.5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5.8 | 1~3층 | 일반목욕장 | 2,641.3 | 1층창고및욕담우반 | 1.3 |
| 62 | 강원 | 강원주건강랜드 | 4,539.6 | 1,374.2 | 36.9 | 110.1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5.1 | 2층 | 일반목욕장 | 1,362.2 | 2 | |
| 63 | 강원 | 한솔사우나 | 5,719.6 | 653.8 | 69.6 | 544.9 | 일반상업지역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관광호텔, 은행, 제1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10층 | | 4~5층 | 위락시설 | 제1층 근린생활시설(목욕장) | 1,114.9 | 4.5 |
| 64 | 강원 | 춘천월드온천 | 3,672.2 | 1,157.7 | 29.2 | 84.2 | 자연녹지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5.6 | 춘천하와이온천 | 일반목욕장 | 3,672.2 | | |
| 65 | 강원 | 태백산보석사우나 | 2,984.7 | 1,156.4 | 37.4 | 89.1 |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일반목욕탕 | 지하1층/지상3층 | 20.2 | | 일반목욕장 | 2,631.4 | | |
| 66 | 경상도 | 옥포24시사우나 | 3,664.2 | 496.4 | 79.4 | 456.9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7층 | 25.9 | 옥포24사우나지하2~5층 | 제1층 근린생활시설(목욕장) | 3,218.6 | 2.5 | |
| 67 | 경상도 | 오아시스찜질방 | 13,509.1 | 1,616.4 | 54.7 | 297.8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지상10층 | 30.6 | 한빛프라자지하1층 | 볼링장, 노래연습장,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 일반목욕장 | 2,473.0 | 지1 |
| 68 | 경상도 | 패밀리존찜질방사우나 | 22,508.9 | 4,685.6 | 62.8 | 357.5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상가 | 지하3층/지상3층 | | 동성가든타워 | | | | |
| 69 | 경상도 | 도심속의찜질방 | 6,404.4 | 1,606.8 | 59.0 | 174.6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 창원종합상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 경상도 | 통영파 라스파 | 2,976 .0 | 531.2 | 35.5 | 198.8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 지하층 /지상6 층 | 28.3 | 통영파 라스파 | 일반목 육장 | 2,976 .0 | | | |
| 71 | 경상도 | 통영휘 트니스 | 6,875 .1 | 874.0 | 79.9 | 475.8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업무시 설 | 지하2 층/지 상10 층 | 35.2 | 통영휘 트니스 2-4층 | 일반목 육장 | 2,472 .4 | 목욕장 (직우 너휴게 실및창 고)불 법증축 | 2.4 | |
| 72 | 인천 | 광성해 수위터 피아 | 6,906 .9 | 1,296 .0 | |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관 매시설 | 지하2 층/지 상2층 | | 1.2중 근생 | 볼링장 ,스쿼 시장, 근린생 활시설 | 근린생 활시설 (목욕 장) | 2,122 .9 | | |
| 73 | 인천 | 블루오 션 | 205,3 08.5 | 34,35 5.9 | | | | 목구조 철근 콘크리 트구조 | 운동시 설, 근 린생활 시설, 문화및 집회시 설 | 지하4 층/지 상5층 | 60.0 | 삼산지 구복합 시설지 하1층 | 운동시 설 | 일반목 육장 | 2,801 .7 | | 지1 |
| 74 | 인천 | 스파레 스부평 점 | 11,75 4.9 | 948.2 | 69.6 | 687.8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오피스 텔 | 지하2 층/지 상10 층 | 39.2 | 동아월 빙타운 7층 | 일반목 육장 | 324.7 | | 7 | |
| 75 | 인천 | 누리자 스파 | 22,55 5.9 | 2,472 .2 | 87.5 | 776.6 |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자동차 관련시 설, 제1 .2종근 린생활 시설 | 지하1 층/지 상10 층 | 44.8 | 누리자 타운9 ~10층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목욕 장) | 2,840 .7 | | 9,10 | |
| 76 | 인천 | 웨일리 24시 불한중 막사우 나 | 9,713 .7 | 1,310 .0 | 60.0 | 293.3 | 일반주 거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문 화및집 회시설 | 지하2 층/지 상5층 | 24.4 | 3-5층 | 일반목 육장 | 3,930 .0 | | 3.5 | |
| 77 | 인천 | 선학스 파24 시불한 중막사 우나 | 4,855 .3 | 875.0 | 34.3 | 190.5 | 일반공 업지역 | 철골구 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 지하층 /지상7 층 | 28.5 | 3~7층 | 제1종 근린생 활시설 (목욕 장) | 3,391 .1 | | 3.7 | |
| 78 | 인천 | 더힐스 토리 | 16,89 2.2 | 1,243 .8 | 69.8 | 711.6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근린생 활시설 , 교육 연구시 설, 노 유자시 설, 운 동시설 | 지하3 층/지 상11 층 | 44.5 | | | | | | |
| 79 | 인천 | 신성2 4시불 가마사 우나 | 25,38 5.5 | 1,917 .3 | 75.2 | 739.4 | 일반상 업지역 | 철근콘 크리트 구조 | 제1.2 종근린 생활시 설, 교 육연구 | 지하3 층/지 상11 층 | 50.5 | 7-8층 | 일반목 육장 | 3,761 .0 | | 7.8 | |

| | | | | | | | | | | | | | | | |
|--------------|----|---------------|----------|---------|------|-------|--------|---------------------|---------------------|-----------|------|------|----------|---------|-----|
| 92 | 충청 | 크리스탈사우나 | 4,533.5 | 875.4 | 54.9 | 284.1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7층 | 26.4 | 4~6층 | 일반목욕장 | 2,134.7 | 4.6 |
| 공공도서관리스트(52) | | | | | | | | | | | | | | | |
| 1 | 서울 | 상계숲속작은도서관 | 325.5 | 325.5 | 20.0 | 20.0 | 자연녹지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층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1층 | 6.0 | | | | |
| 2 | 서울 | 봉봉도서관 | | | | | | | | | | | | | |
| 3 | 서울 | 삼청동숲속도서관 | 206.3 | 178.2 | 1.6 | 1.3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공도서관, 휴게음식점 | 지하1층/지상1층 | 5.6 | | 공공도서관 | 195.1 | |
| 4 | 서울 | 송파구평생학습센터도서관 | 13,405.7 | 1,616.8 | 59.4 | 333.3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 | 지하2층/지상6층 | 29.2 | 5층 | | | 5 |
| 5 | 서울 | 작은도서관 | | | | | | | | | | | | | |
| 6 | 서울 | 소나무연덕재2호작은도서관 | 591.3 | | | | | 철근콘크리트구조 | 동사무소 | 지하층/지상3층 | | | 잠실3동주민센터 | | |
| 7 | 서울 | 마포중앙도서관 | | | | | | | | | | | | | |
| 8 | 서울 | 서대문구이진아도서관 | 2,765.5 | 655.0 | 0.6 | 2.1 | 자연녹지지역 | 철골주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18.0 | | | | |
| 9 | 경기 | 산본도서관 | 3,586.7 | 1,635.9 | | |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2층 | 10.2 | | | | |
| 10 | 경기 | 주엽어린이도서관 | 2,049.8 | 748.3 | 49.9 | 116.6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8.4 | | | | |
| 11 | 경기 | 느티나무도서관 | | | | | | | | | | | | | |
| 12 | 경기 | 송의어린이도서관 | 1,065.5 | 444.1 | 37.1 | 71.3 | 일반상업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판벨, 벽돌조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 | | | |
| 13 | 경기 | 파주시립문산도서관 | | | | | | | | | | | | | |
| 14 | 경기 | 한빛도서관 | 1,653.6 | 834.9 | 35.0 | 60.9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 | 지하1층/지상2층 | 11.5 | | | | |

| | | | | | | | | | | | | |
|----|----|--------------|----------|---------|------|-------|--------|----------|--------------------|------------|------|-----------|
| 15 | 경기 | 남양주시진접도서관 | 4,426.2 | 815.1 | 5.8 | 21.1 |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19.1 | |
| 16 | 경기 | 청북도서관 | 999.2 | 540.5 | 0.7 | 1.3 |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층 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 지하층/지상2층 | 14.1 | 청북문화센터 2동 |
| 17 | 경기 | 죽산도서관 | 365.5 | 264.5 | | |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지상2층 | 8.1 | |
| 18 | 경기 | 여주산북도서관 | 1,049.4 | 338.0 | 39.3 | 119.0 |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공공시설(복지회관) | 지하1층/지상4층 | | |
| 19 | 경기 | 평택시립오성도서관 | 729.4 | 361.8 | 42.4 | 85.5 | 계획관리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도서관 | 지하층/지상2층 | 12.3 | |
| 20 | 경기 | 기쁜어린이도서관 | | | | | | | | | | |
| 21 | 경기 | 판교어린이도서관 | 6,273.1 | 2,768.3 | 0.7 | 1.5 | 도시지역 | 일반철골구조 | 도서관 | 지하층/지상3층 | 19.1 | |
| 22 | 경기 | 해솔도서관 | | | | | | | | | | |
| 23 | 경기 | 백사작은도서관 | | | | | | | | | | |
| 24 | 경기 | 가좌동푸른생어린이도서관 | | | | | | | | | | |
| 25 | 경기 | 인천길위의도서관 | 12,335.6 | 659.9 | 33.8 | 325.2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업무시설 | 지하4층/지상10층 | 44.0 | 1층 |
| 26 | 경기 | 화서다산도서관 | 3,611.0 | 1,040.1 | 19.0 | 45.6 | 자연녹지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 제1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3층 | 16.5 | |
| 27 | 경기 | 태장마루도서관 | | | | | | | | | | |
| 28 | 경기 | 운정한빛도서관 | | | | | | | | | | |
| 29 | 전라 | 대마초등학교도서관 | 31.0 | 31.0 | | | | 벽돌조 | 교육연구시설 | 지하층/지상1층 | 3.4 | |

| | | | | | | | | | | | |
|----|----------|-------------|---------|-------|------|-------|--------|---------------|-------------|-----------|------|
| 44 | 강원/경상/제주 | 대구동천역사작은도서관 | 166.5 | 168.3 | 6.7 | 6.6 | 자연녹지지역 | 일반목구조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지하층/지상1층 | 9.5 |
| 45 | 강원/경상/제주 | 꽃바위작은도서관 | | | | | | | | | |
| 46 | 강원/경상/제주 | 오시리가름작은도서관 | | | | | | | | | |
| 47 | 강원/경상/제주 | 울산북구기적의도서관 | 728.5 | 356.2 | 40.0 | 40.0 | 자연녹지지역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 지하1층/지상1층 | 6.1 |
| 48 | 강원/경상/제주 | 성산일출도서관 | | | | | | | | | |
| 49 | 강원/경상/제주 | 맨발동무도서관 | 1,489.6 | 514.4 | 50.1 | 129.9 | 일반주거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1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13.9 |
| 50 | 강원/경상/제주 | 대구동구안심도서관 | 2,469.2 | 805.1 | 20.0 | 49.6 | 자연녹지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지하1층/지상3층 | 16.8 |
| 51 | 강원/경상/제주 | 속초시립도서관 | | | | | | | | | |
| 52 | 강원/경상/제주 | 반야월역작은도서관 | 102.5 | 128.7 | 5.7 | 4.5 | 자연녹지지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 관광휴게시설 | 지하층/지상1층 | 8.9 |